

#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공급 방안

정 경 석



연구자

연구책임

- 정경석 /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보조

- 김보은 / 도시기반연구실 위촉연구원



# 연구요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대덕특구 출범 4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최고의 과학도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특구 내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연구개발특구의 1지구에 해당하는 대덕연구단지는 토지 수용력 대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너무 낮다는 일부 비판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면적이 67,809천㎡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약 61.3%(41,587천㎡)에 해당하는 면적이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업용지는 약 8.7%(5,970천㎡)에 불과하여 실제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내 토지자원에 대한 입주기관의 이용실태와 용지 수요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공급 가능한 가용지에 대한 공간분석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의 제시와 원활한 용지 공급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2. 주요 연구 결과

### 1) 토지이용의 유연성 확보 및 관련 제도의 정비

- 현재 특구지역은 국토계획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연구개발특구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토지이용 및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용도별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의 경직성을 탈피
- 최근 도입된 복합용지의 활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유연성 확보와 기능의 융복합화를 유도
- 준공된 특구 개발 사업지구의 개발행위 특례 조항을 신설
- 준공된 특구개발사업지구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특구법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필요
- 토지이용계획 용도변경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광주, 대구, 부산시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자치권에 대한 재량적 역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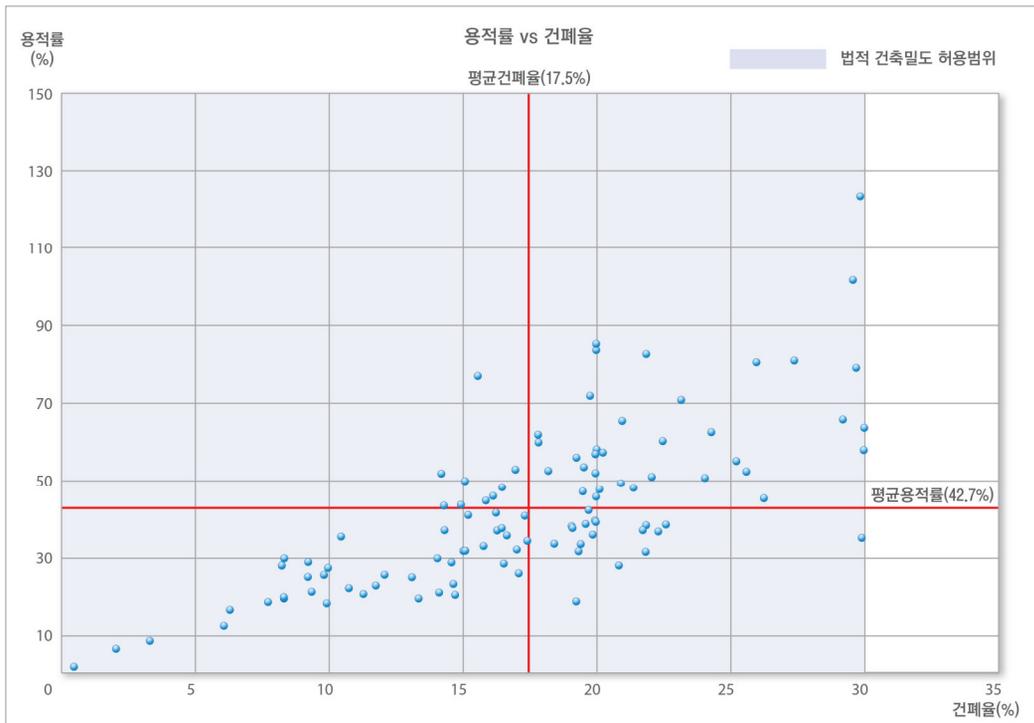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2) 복합용지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용을 통한 용도기능 융복합화

- 미개발된 사업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공급시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용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밀도 및 용도의 융복합화를 유도
- 특구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토지의 용도 구분 중 산업시설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한해 산업입지법 상의 복합용지 개발이 가능토록 특구법에 대한 일부 개정 필요
- 제3지구인 대덕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통해 IT 및 벤처,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의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산업구조를 재편
  - 지식기반산업지구로의 지정과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정부주도의 중기청, 산업인력공단의 사업이나 R&D보조 지원 우선권 등 정부지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복합용지 활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함이 바람직
- 대덕산업단지 등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단지는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및 유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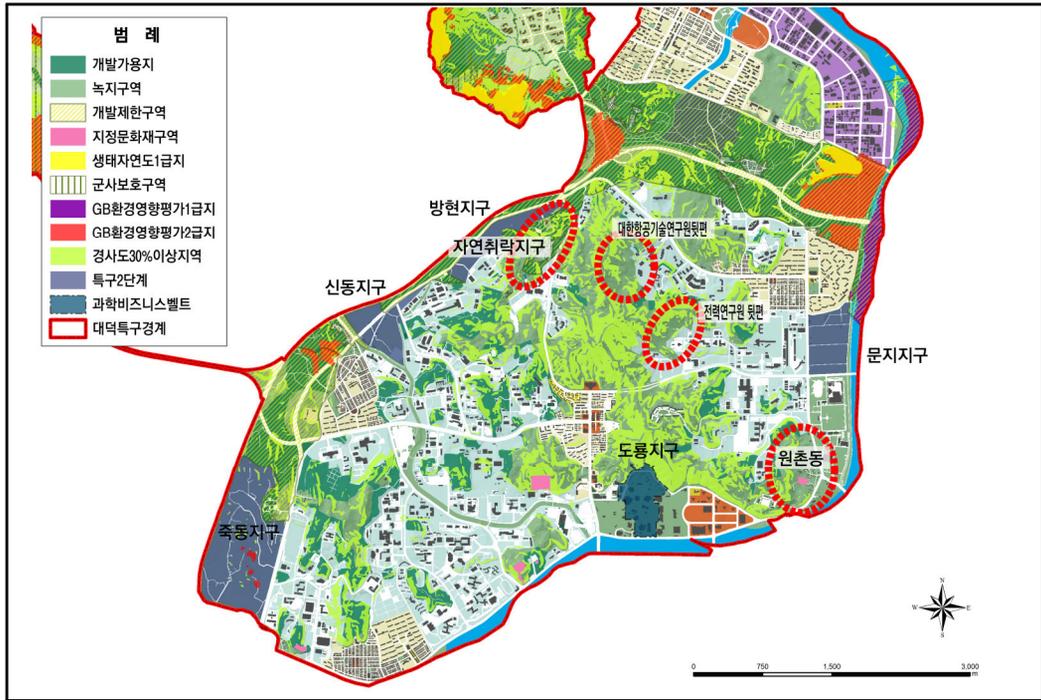
## 3) 개발밀도 증대 및 원형지 등을 활용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

-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미개발된 원형지 가운데 개발 가능한 부지에 복합용지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 용도상향(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효과 뿐 아니라 허용 가능한 건축 용도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



[그림 1] 대덕연구단지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 현황

- 대덕연구단지 내 부지난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한해 기존의 건폐율을 40%로, 용적률을 180%로 각각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건축밀도의 완화대상구역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현재의 허용가능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30%와 150%임
  - 대덕연구단지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지한 기관 및 기업 건축물의 평균 건폐율은 17.5%, 평균 용적률은 42.7%로 비교적 개발 밀도는 낮은편
- 정책적 측면에서는 용적률보다는 건폐율 완화가 보다 시급하면서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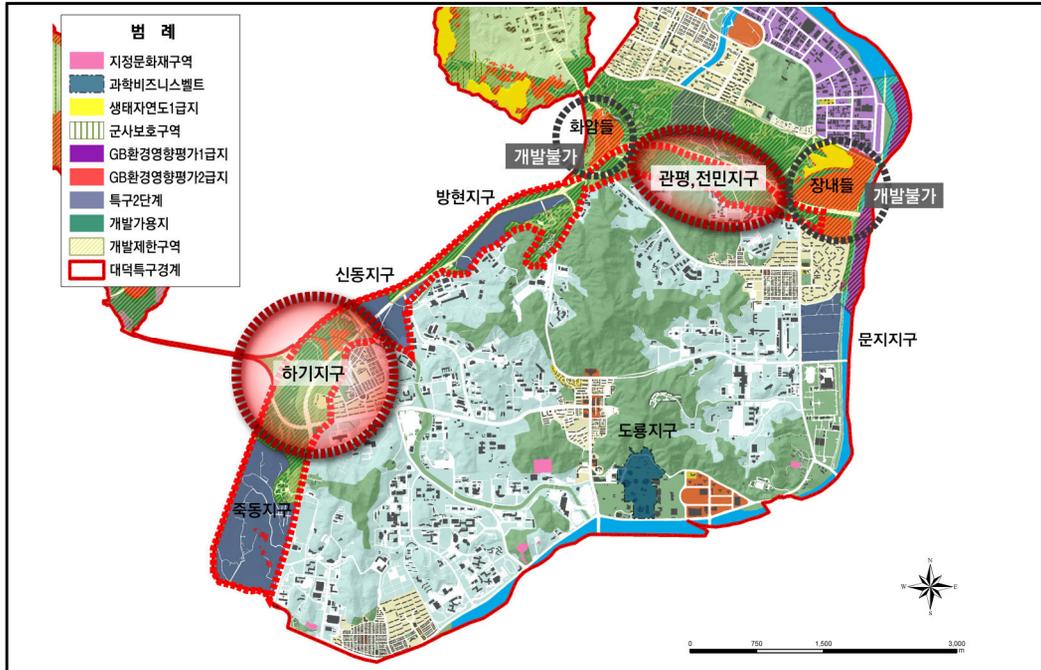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 해제를 통한 신규 공급 가능지역

- 보존가치가 낮은 일부 녹지구역을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로 공급함으로써 특구내 부족한 입지 수요를 충족토록 함

#### 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수요맞춤형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범위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 신규 산업 용지를 발굴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형태로 추가 조성
- 유성구 일대로 지나치게 편중됨과 동시에 과포화 상태에 있는 현재의 특구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용지 공급 필요
- 산업구조에 대한 공간네트워크의 외부효과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4지구 및 5지구 이외에 특구와 연결하면서 보존 가치가 낮은 대덕구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연축지구 등)을 해제하여 특구지역으로 추가 편입

-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 하는 규제완화 대책 방안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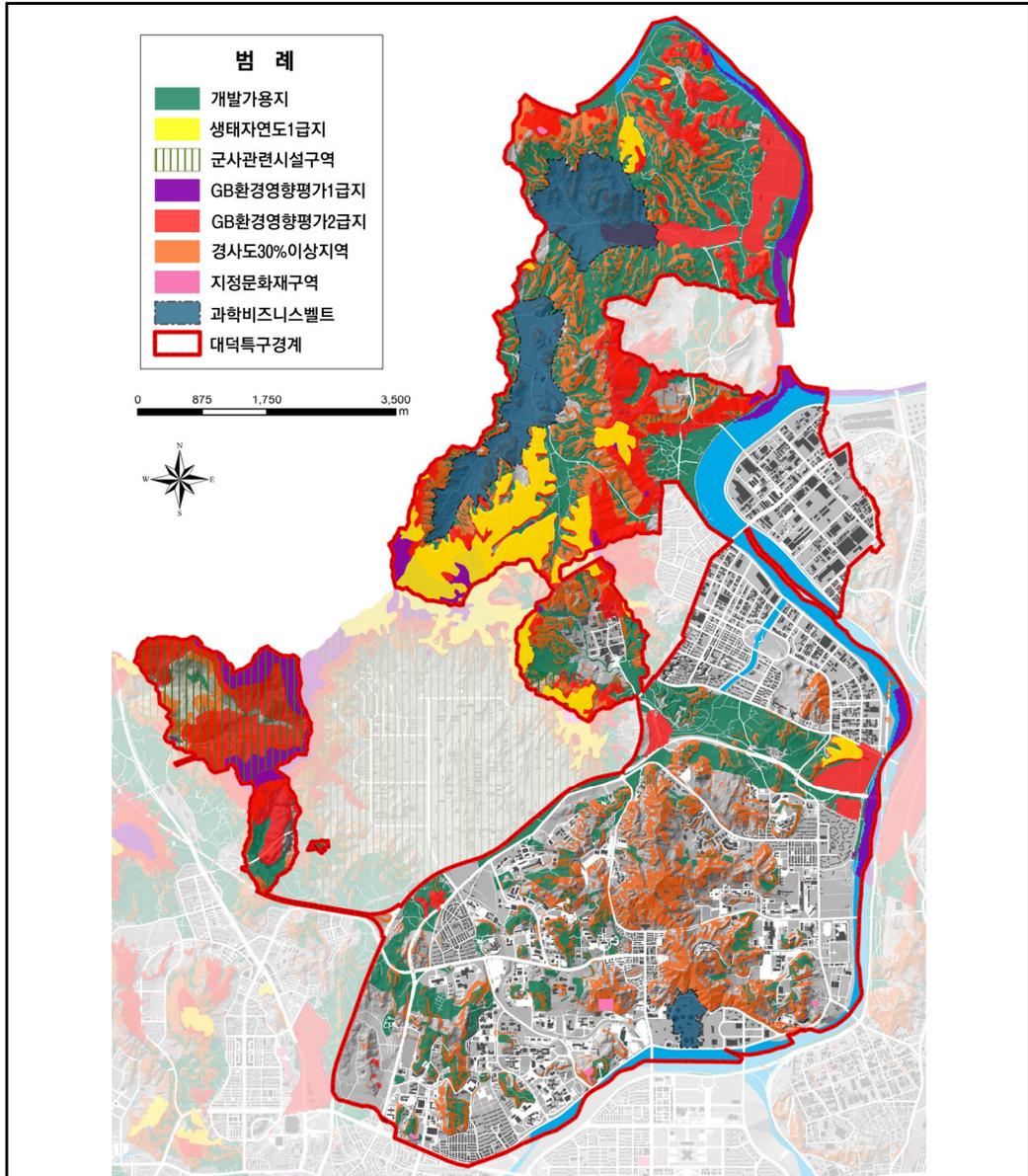


[그림 3] 연구단지 내 GB 해제를 통한 신규 공급 가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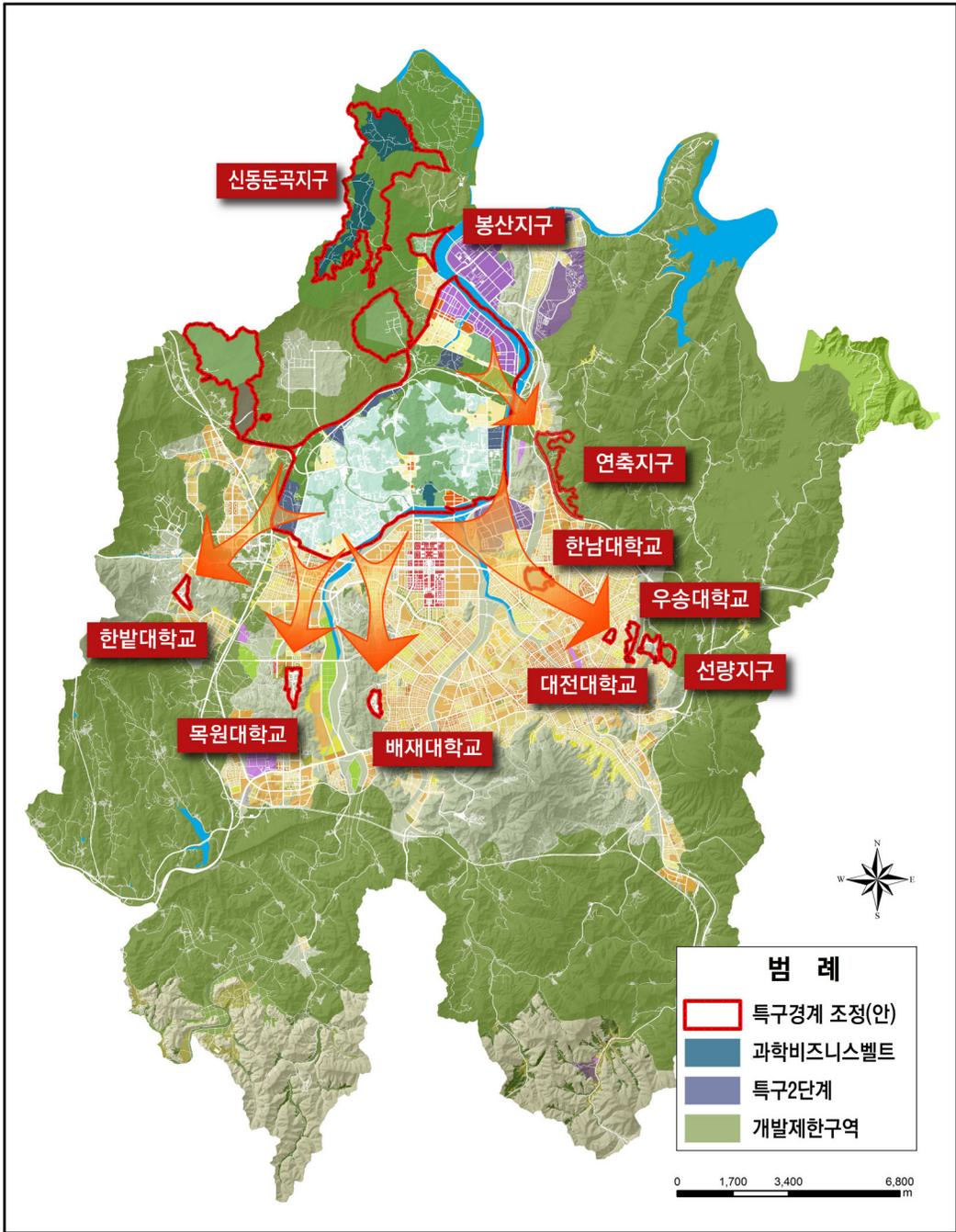
### 5)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구역 재조정 방안

- 대덕특구 구역을 ‘면’ 형태에서 ‘점’ 형태로 전환하여 새로 편입할 지역과 해제할 지역에 대한 선별적 조치가 필요
- 특히 대덕특구를 제외한 타 지역의 특구들에서는 공간적으로 이격된 대학캠퍼스 부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대전대학교 캠퍼스 및 인접한 용운동 11번지 일원과 한밭대학교 캠퍼스, 한남대학교 캠퍼스 및 대전 1, 2산단 일부 재생사업구역 등 혁신클러스터화가 가능한 그 주변 인접 권까지를 포함하여 특구지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광범위한 면형태의 특구지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기업 및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특구지역의 용지로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토지는 과감하게 특구해제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특구내 개발불능지역 및 개발가능지역



[그림 5] 대덕연구개발특구 구역 재조정 방안



#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4
제2장 일반 현황 분석 .....	9
제1절 연구개발특구 일반 현황 .....	9
1. 대덕연구단지의 태동 .....	9
2. 대덕연구개발특구로의 전환 .....	10
3.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반 현황 .....	11
4. 대구·광주·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15
제2절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 .....	22
1. 1단계 개발사업 현황 .....	22
2. 2단계 개발사업 현황 .....	30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현황 .....	35
4. 관련법령 검토 .....	43
제3장 설문조사 분석 .....	8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81

1. 조사대상 및 설계 .....	81
2. 조사내용 및 방법 .....	81
제2절 항목별 조사내용 분석 .....	82
1. 개발밀도 관련 .....	82
2. 용지확보 현황 관련 .....	83
3. 개발밀도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 .....	87
<b>제4장 입지수요 분석 .....</b>	<b>93</b>
제1절 산업입지 수요 사례 분석 .....	93
1. 특구내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 현황 .....	93
2.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변경) 상의 설문조사 결과 .....	96
제2절 대전시 산업용지 수요 예측 .....	100
1. 2030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 추정 .....	100
2.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변경) 상의 산업용지 수요추정 .....	103
<b>제5장 신규 개발 가용지 분석 .....</b>	<b>117</b>
제1절 개발가능지 설정기준 .....	117
제2절 개발가능지 분석 .....	119
1. 토지이용현황 .....	119
2. 특구 가용지 분석 .....	122
3. 연구단지내 가용지 분석 .....	126
4. 연구단지의 토지 이용 고도화 방안 .....	126

제6장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공급 방안 .....	137
제1절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137
제2절 토지의 효율적 공급 방안 .....	137
1. 토지이용의 유연성 확보 및 관련 제도의 정비 .....	137
2. 복합용지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용을 통한 융복합화 유도 .....	147
3. 개발밀도 증대 및 원형지 등을 활용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 .....	153
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수요맞춤형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157
5.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구역 재조정 .....	161
[부 록] .....	167

## - 표 목 차 -

<표 2-1> 대덕연구개발특구 각 지구별 현황 .....	12
<표 2-2>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	13
<표 2-3> 대구연구개발특구 각 지구별 현황 .....	15
<표 2-4> 대구연구개발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	17
<표 2-5> 광주연구개발특구 각 지구별 현황 .....	18
<표 2-6> 광주연구개발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	20
<표 2-7> 부산연구개발특구 각 지구별 현황 .....	21
<표 2-8> 1단계 토지공급 현황 .....	22
<표 2-9> 1단계 지정면적 변경 .....	22
<표 2-10>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	23
<표 2-10>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계속) .....	24
<표 2-11> 죽동지구 인구 및 주택계획 .....	28
<표 2-12>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 .....	28
<표 2-13> 방현지구 공원·녹지계획 변경 .....	29
<표 2-14> 신성지구 공원·녹지계획 변경 .....	29
<표 2-15> 죽동지구 공원·녹지계획 변경 .....	29
<표 2-16> 2단계 토지공급 계획현황 .....	30
<표 2-17> 2단계 지정면적 현황 .....	31
<표 2-18> 2단계 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31
<표 2-19> 2단계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	31
<표 2-20> 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기정) .....	35
<표 2-21> 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 .....	36
<표 2-22> 도룡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	41
<표 2-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43
<표 2-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51

<표 2-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54
<표 2-2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주요 내용 .....	62
<표 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65
<표 2-28>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주요 내용 .....	72
<표 3-1> 대전 산업용지 수요조사 설계표 .....	81
<표 4-1>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 현황 .....	94
<표 4-2> 대덕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입주 의향이 있는 제조업체 현황 .....	95
<표 4-3> 주요 업종별 필요면적 현황 .....	95
<표 4-4> 설문조사내용 .....	96
<표 4-5> 설문 응답 업체의 업종별 현황 .....	98
<표 4-6>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	98
<표 4-7> 필요한 산업용지 유형 .....	99
<표 4-8> 설문결과에 의한 추가 부지면적 수요량 .....	99
<표 4-9> 추가부지면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체의 이전 희망 시기 .....	99
<표 4-10> 산업체 업종별 생산액 전망 .....	100
<표 4-11> 산업체 업종별 공업용지 원단위 전망 .....	101
<표 4-12> 대덕연구개발특구 도입시설 규모 추정 .....	102
<표 4-13> 공업용지 소요면적 .....	102
<표 4-14>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 .....	102
<표 4-15> 산업용지 추정 .....	103
<표 4-16> 목표년도 2020년 산업입지 총수요 추정 .....	104
<표 4-17> 대전광역시 산업시설용지(계획입지) 연간 순수요면적 .....	104
<표 4-18> 시도별 생산액 추이 .....	105
<표 4-19> 시도별 생산액당 부지면적 원단위 변화 추이 .....	106
<표 4-20> 대전시 제조업 생산액당 부지면적 원단위 변화 추이 .....	107
<표 4-21> 생산액 예측 및 생산액당 원단위 예측결과 .....	109
<표 4-22> 시나리오별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예측치 및 증가율 .....	111
<표 4-23> 각 시나리오별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평균 예측치 및 증가율 .....	111

<표 4-24> 목표년도 2020년 산업시설용지 총수요 추정 .....	112
<표 5-1> 가용토지자원에 대한 분석 기준 .....	117
<표 5-2> 승현서원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129
<표 5-3>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원형지 현황 .....	130
<표 6-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에서의 개발밀도 관련 특례 및 제한 .....	139
<표 6-2> 특구지역내 지구별 입주 가능 업종 및 입주 제한업종 구분 .....	140
<표 6-3>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의 용도별 구역 개념 및 건축허용 범위 .....	142
<표 6-4>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재구분 기준 .....	143
<표 6-5> 연구개발특구법상의 용도구역 및 건축행위 가능 용도 .....	144
<표 6-6>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비교 .....	153
<표 6-7> 대덕연구단지 토지이용 현황 .....	154
<표 6-7> 대덕연구단지 토지이용 현황(계속) .....	155
<표 6-8>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현황(2006) .....	158
<표 6-9>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개발 해제 가능면적 현황 .....	159
<표 6-10> 각 특구별 토지용도구역 지정 현황 .....	161
<표 6-11>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조정(안) .....	162
<표 6-11>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조정(안) (계속) .....	163
<표 6-12> 대전 소재 주요 대학의 연구 역량 .....	165

[부 록]

<표 1> 대덕연구개발특구 원형지 현황(2013년 6월 기준) .....	169
<표 2> 대덕연구단지(1지구)내 입주기관 주소 현황(2014년 12월 기준) .....	191
<표 3> 대덕연구단지(1지구)내 입주기관 건축물 현황(2014년 12월 기준) .....	195
<표 3> 대덕연구단지(1지구)내 입주기관 건축물 현황(계속) .....	222
<표 4> 대덕연구단지(1지구)내 원형지 보유 기관 현황(2013년 6월 기준) .....	248

## - 그림 목 차 -

[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	5
[그림 2-1]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 용도구역 지정 현황 .....	14
[그림 2-2]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16
[그림 2-3]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19
[그림 2-4]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21
[그림 2-5] 방현지구 토지이용계획 .....	26
[그림 2-6] 신성지구 토지이용계획 .....	26
[그림 2-7] 죽동지구 토지이용계획 .....	27
[그림 2-8] 전민지구 토지이용계획 .....	33
[그림 2-9] 문지지구 토지이용계획 .....	34
[그림 2-10] 신동·둔곡지구 공간배치 개념도 .....	38
[그림 2-11] 신동·둔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39
[그림 2-12]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조감도 .....	40
[그림 2-13] 신동지구(중이온가속기) 조감도 .....	40
[그림 2-14] 기초과학연구원(도룡지구) 조감도 .....	42
[그림 5-1] 지목현황 .....	119
[그림 5-2] 지목별 소유현황 .....	120
[그림 5-3] 지가현황 .....	121
[그림 5-4] 기개발지역 .....	122
[그림 5-5] 개발억제지역 .....	123
[그림 5-6] 개발불능지역 .....	124
[그림 5-7] 개발가능지역 .....	125
[그림 5-8] 1지구(대덕연구단지)내 개발가능지역 .....	126
[그림 5-9]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안)(2006) .....	126
[그림 5-10] 연구단지 내 GB 해제를 통한 신규 공급 가능지역 .....	127

[그림 5-11]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 해제를 통한 신규 공급 가능지역 .....	128
[그림 5-12] 송현서원지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 지정 현황 .....	129
[그림 5-13] 특구 내 원형지 분포 현황 .....	131
[그림 5-14] 연구단지 내 원형지 개발가능용지 .....	132
[그림 5-15] 연구단지 주변부 개발 가능 후보지 .....	134
[그림 6-1] 대덕연구개발특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 현황 .....	138
[그림 6-2] 대덕연구단지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 현황 ...	157
[그림 6-3]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지정현황도(2006) .....	160
[그림 6-4] 대덕연구개발특구 구역 재조정 방안 .....	164

# 제 1 장

---

##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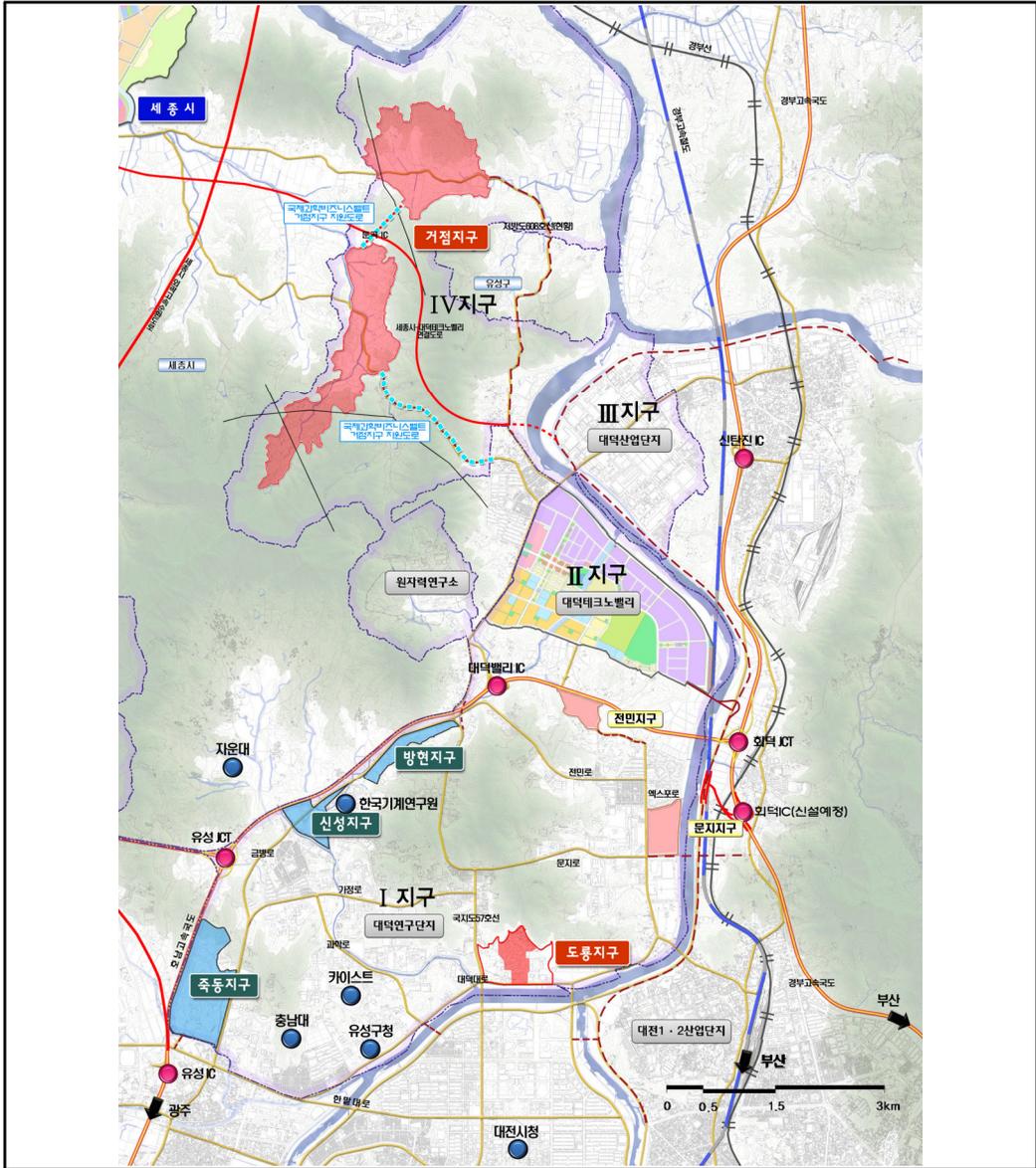
- 대덕특구 출범 4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최고의 과학도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특구 내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연구개발특구의 1지구에 해당하는 대덕연구단지는 토지 수용력 대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너무 낮다는 일부 비판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지정면적이 67,809천㎡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약 61.3%(41,587천㎡)에 해당하는 면적이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업용지는 약 8.7%(5,970천㎡)에 불과하여 실제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변경)」 수립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에 실시된바 있는 대전시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 면접방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효 표본 수 780부 가운데 237개 업체(약 30.1%)가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으로 산업단지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할 만큼, 산업용지부족 문제는 대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당면 과제이기도 함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생산액은 11조 1,221억원을, 수출액으로는 43억 4,878만불을 달성하며, 대전시 총생산액의 약 79%를, 수출액의 87%를 견인하는 중추적 성장 동력원이라 할 수 있음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로 보면 생산액은 약 1.07%를, 수출액은 1.01%수준에 그치고 있어 절대적인 외연적 성장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좀더 체계적으로 성장 및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정된 토지 자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내 토지자원에 대한 입주기관의 이용실태와 용지 수요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공급 가능한 가용지에 대한 공간분석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의 제시와 원활한 용지 공급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1차적으로 대덕연구단지(1지구)의 토지 이용 고도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전체의 토지 이용 효율화 및 특구 재조정 방안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특구지역의 현황 파악을 위한 관련 문헌 검토 및 현황 분석을 실시함
- 둘째, 타 지역의 특구개발 사례 등을 검토함
- 셋째, 대덕특구내 토지이용현황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함
- 넷째,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소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기업체의 입지 수요 정도를 사례 분석을 통해 예측함. 또한 대전시 산업용지의 적정 공급량 등을 수요 예측 모형을 통해 추정해 봄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토지 이용 고도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당위성 등을 확보코자 함
- 다섯째, 대덕연구단지 내 유희토지 및 원형지 등을 파악
- 여섯째,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하여 특구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공급 가능한 개발 가능지를 분석함
- 끝으로, 공간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대안별 용지공급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는 대덕특구 토지이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특구내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한 선별적인 토지 공급방안 및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다 면밀한 분석 결과의 도출과 산업입지 정책 변경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후속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 제 2 장

---

### 일반현황 분석

---

제1절 연구개발특구 일반 현황

제2절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

---



## 제2장 일반 현황 분석

### 제1절 연구개발특구 일반 현황

#### 1. 대덕연구단지의 태동

- 대덕연구단지는 1973년 건설이 시작된 이후, 1978년 표준과학연구소 입주를 시작으로 원자력연구소, 화학연구소, 지질연구소 등이 들어섰고, 91년 한국과학영재들의 요람인 과학기술원(KAIST)이 들어서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
- 대덕연구단지의 조성 배경에는 1960년대초 전형적인 농업국가의 형태였던 우리나라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집행을 통해 산업국가로의 변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부터임
- 중화학공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됨
-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공업의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수요가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기계공업을 위시하여 전자, 화학, 재료, 에너지산업에서 요구 되는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으로 긴급히 요청되는 선박, 해양, 기계, 석유화학, 전자통신 연구소 등이 KIST에서 분리독립함
- 독자적인 과학기술능력의 구비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당시 정책입안자들은 중화학공업 발전에 필요한 기계, 선박, 전자, 석유화학, 핵연료를 포함한 원자력 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산화를 목표로 70년대 중반이래 국가출연연구소의 설립 러시 시대를 맞이하게 됨
- 한국원자력연구소('73), 한국선박연구소('73.10), 해양개발연구소('73), 한국표준연구소('75.12), 자원개발연구소('76.5), 한국화학연구소('76.9), 한국핵연료개발공단('76.12),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76.12),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76.12), 한국전자기술연구소('76.12), 한국통신기술연구소('77.12), 고려인삼연구소('78.3), 한국연초연구소('78.3),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80.4) 등 14개 연구소가 이 때 설립됨
- 이들 연구기관들은 한 지역에 집적시켜 상호접촉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적교류 및 인적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기기 및 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시설투자의 상대적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홍능의 제1연구단지에 이어 제2의 연구단지의 건설이 구상됨

- 당시 과학기술처는 71년 초 제2연구단지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 연구단지보다는 10년 계획으로 인구 10만을 수용할 2백여만평의 면적을 가진 두뇌도시 건설을 제시함
- 연구와 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과학자들이 불편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녹지와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생활공간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연구소와 학원이 공존하는 지적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대덕연구학원도시가 계획됨
- 이후, 1973년 1월 17일 대통령의 연두순시보고서 제2연구단지 건설계획을 보고하고 1973년 5월 28일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대덕을 제2연구단지 입지로 확정함
- 대덕연구단지로 조성이 시작된 이래 1978년도에 표준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기계연구소, 화학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이 입주함
- 1979년에는 충남대학교, 쌍용중앙연구소 등 2개의 입주기관이 추가로 입주해 대덕연구단지의 기틀을 다졌으며, 1980년대에는 본격적인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입주가 본격화됨
- 원자력안전기술원('81), 대덕대학('82), 전자통신연구소('83), 과학재단('83), 인삼연초연구소('84), 생명공학연구소('85), 천문연구소('86), 조폐공사기술연구소('87), 지질자원연구소('89) 등 이들 연구소가 자리를 잡음에 따라 14개 출연연구소와 2개의 입주기관으로 대덕연구단지가 구성이 됨
-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연구단지에서 산업단지로의 기능 재편을 들 수 있음
- 2000년 9월에 대덕밸리로 선포된 이후, 2001년 5월에는 6개 지역에 벤처 협동화 단지가 지정됨
- 이후, 연구단지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벤처의 창업이 봇물을 이루고 벤처육성을 위한 벤처보육센터들이 연구단지에 입주하게 되면서 기술벤처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됨

## 2. 대덕연구개발특구로의 전환

-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그간 기술추격단계의 혁신체계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혁신역량과 혁신체제의 고도화 전략이 요구됨
- 한국국가혁신체제 고도화 필요성과 대덕단지 내 혁신패턴의 변화에 따라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의 새로운 혁신체제로의 재정립이 필요

- Academic Capitalism의 등장과 공공연구기관의 민영화 등 기초연구부문의 상업화 지향과 산업계의 기술능력이 향상되는 선진국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대덕연구단지의 미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 변화가 필요
- 이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념 정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혁신체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꾀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5년 제1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및 고시함
- 2012년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출범함
- 지난 2013년에는 대덕특구가 출범한지 40년이 되었으며, 2015년 3월 현재 정부출연기관,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 국공립기관 14개, 공공기관 11개, 그리고 약 1,336개의 입주기업이 집적화 되어 창조경제 성과 구현의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

### 3.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반 현황

#### 1) 일반 현황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범위는 대전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원으로 약 32개의 법정동을 포함하거나 법정구역에 걸쳐 있음
- 지정면적은 약 67.8km<sup>2</sup>에 이르며, 이 가운데 대덕연구단지 27.7km<sup>2</sup>, 대덕테크노밸리 4.2km<sup>2</sup>, 대덕산업단지 3.1km<sup>2</sup>, 기타 녹지구역 및 개발예정용지 32.8km<sup>2</sup>로 구성되어 있음
- 개발사업의 추진경과를 대략 살펴보면, 1단계 사업은 방현, 신성, 죽동지구 등 총 1.5km<sup>2</sup>로 개발계획이 수립 및 고시('06.8)되었으며, 실시계획 고시('08.8)후 현재 토지 분양이 완료됨
- 2단계 사업은 신동, 둔곡, 전민, 문지지구 등 총 3.9km<sup>2</sup>로 개발계획이 수립 및 고시('09.7)된바 있으며, 이 중 신동-둔곡지구(3.4km<sup>2</sup>)는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12.02)되어 현재 실시계획 승인 고시함('14.12)
- 엑스포 과학공원 및 과학벨트 거점(도룡)지구는 총 0.6km<sup>2</sup>로 개발계획을 고시('13.12)

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음

## 2) 토지용도별 면적 현황

- 대덕특구는 5개 지구와 5개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2-1〉 대덕연구개발특구 각 지구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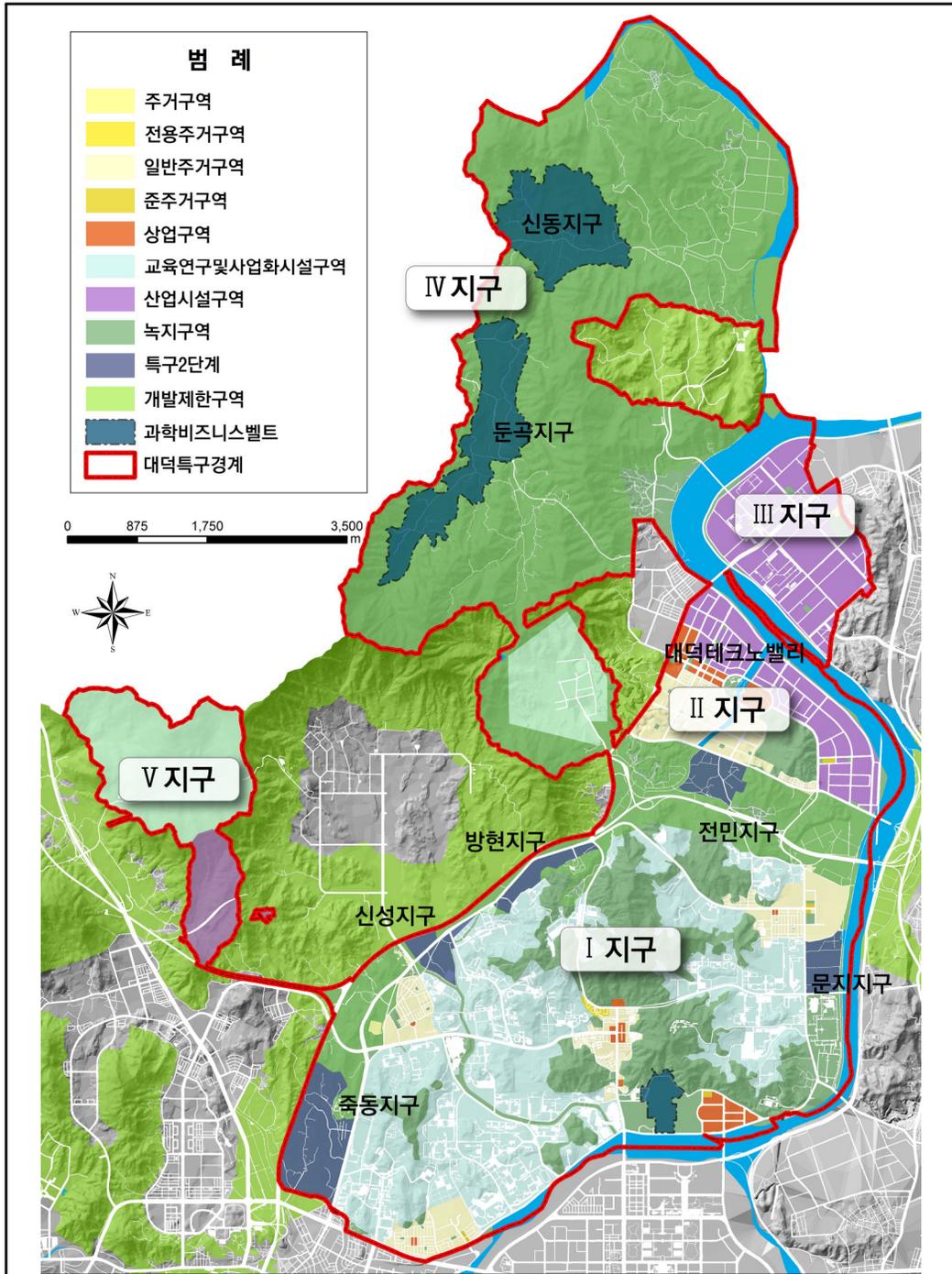
구분	지정면적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제 I 지구 (대덕연구단지)	27,781천㎡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주거, 복지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대학, 협동화단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제 II 지구 (대덕테크노밸리)	4,270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주거, 상업, 업무 등	벤처기업, 주거단지, 위락시설, 복지시설 등
제 III 지구 (대덕산업단지)	3,195천㎡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생산	벤처기업, 전통 제조업체 등
제 IV 지구 (미개발지역)	28,603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개발예정지), 녹지, 주거, 상업, 업무 등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주거단지,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제 V 지구 (국방과학연구소)	3,960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공공연구기관, 제조업체 등
계	67,809천㎡		

- 5개 구역으로는 주거구역(전용/일반/준주거구역), 상업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구분됨

〈표 2-2〉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단위 : 천㎡, %)

지구	구분	면적(천㎡)			구성비 (%)	비고(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제 I 지구	주거구역	2,081	2,194	증) 113	3.2	용도구역 재구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일부지역 용도구역 조정
	상업구역	335	326	감) 9	0.5	
	녹지구역	12,232	12,172	감) 60	17.9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3,133	13,089	감) 44	19.3	
	소계	27,781	27,781	-	40.9	
제 II 지구	주거구역	1,195	1,195	-	1.8	
	상업구역	373	373	-	0.6	
	녹지구역	716	716	-	1.1	
	산업시설구역	1,986	1,986	-	2.9	
	소계	4,270	4,270	-	6.4	
제 III 지구	주거구역	16	16	-	0.1	
	녹지구역	96	96	-	0.1	
	산업시설구역	3,083	3,083	-	4.5	
	소계	3,195	3,195	-	4.7	
제 IV 지구	녹지구역	31,211	28,603	감) 2,608	42.2	폐기물매립장 일원 일부해제
	소계	31,211	28,603	감) 2,608	42.2	
제 V 지구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3,059	3,059	-	4.5	
	산업시설구역	901	901	-	1.3	
	소계	3,960	3,960	-	5.8	
총계		70,417	67,809	감) 2,608	100.0	



[그림 2-1]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 용도구역 지정 현황

#### 4. 대구·광주·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1) 대구

- 지정목적 :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육성을 목표로 대경권의 산업 인프라와 전문 연구역량, 우수한 기술인력 등을 토대로 대구특구 4대 특화분야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첨단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와 선진화된 산업 생태계 구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 지정면적 : 약 22.25km<sup>2</sup>

〈표 2-3〉 대구연구개발특구 각 지구별 현황

지구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테크노폴리스지구 (7,912천 m <sup>2</sup> )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산업, 주거, 상업, 문화·의료·복지 등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 대학, 주거단지, 상업시설, 문화·의료·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성서첨단산업지구 (6,345천 m <sup>2</sup> )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주거, 지원, 업무 등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주거시설, 행정·관리시설, 지원시설, 제조업체, 벤처기업 등
융합R&D지구 (881천 m <sup>2</sup> )	교육, 연구,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	대학, 병원 및 연구시설, 벤처기업 등
의료R&D지구 (1,087천 m <sup>2</sup> )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산학연클러스터), 상업, 지원 등	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지식서비스R&D지구 (6,028천 m <sup>2</sup> )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산업, 주거, 상업, 문화·의료·복지 등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주거단지, 상업시설, 문화·의료·복지시설, 지원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계 (22,253천 m <sup>2</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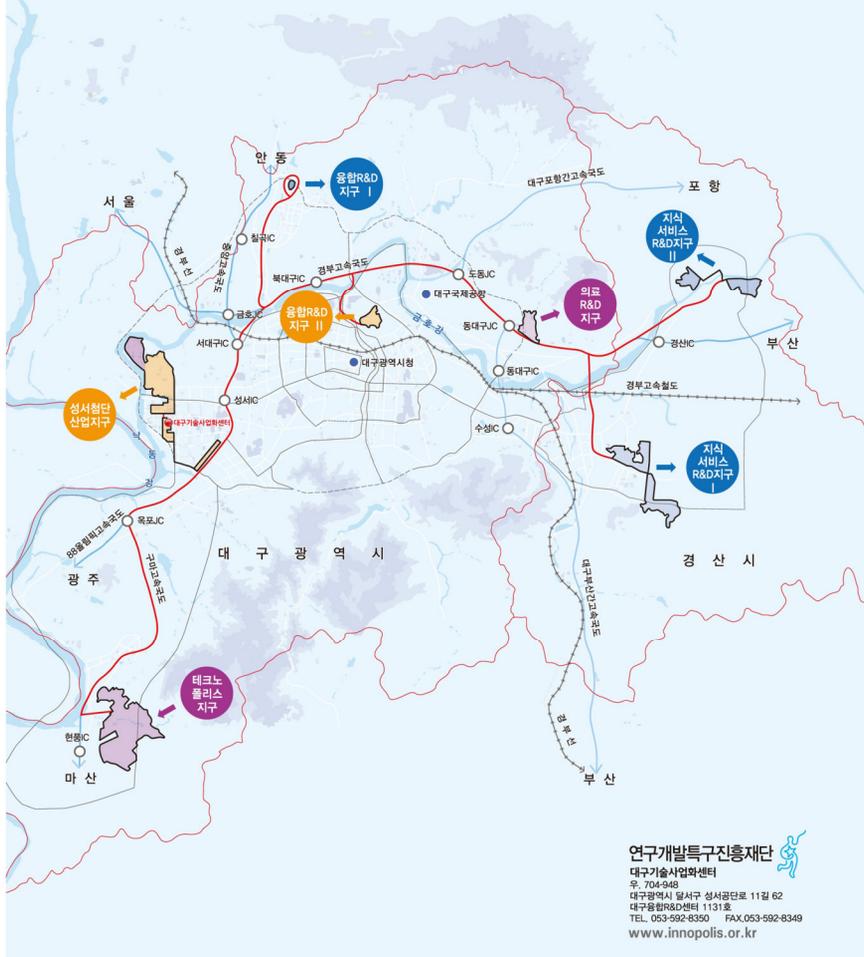


# 대구연구개발특구 배치도

SITUATION OF DAEGU INNOPOLIS

총면적 22.2 km<sup>2</sup> (673만평)

테크노폴리스 7.9 km <sup>2</sup>	융합R&D지구 I 0.8 km <sup>2</sup>
성서첨단산업지구 6.1 km <sup>2</sup>	융합R&D지구 II 1.0 km <sup>2</sup>
- 성서3,4차 1.8 km <sup>2</sup>	의료R&D지구 1.0 km <sup>2</sup>
- 성서5차 1.4 km <sup>2</sup>	지식서비스R&D지구 I 3.9 km <sup>2</sup>
- 개명대일몰 2.9 km <sup>2</sup>	지식서비스R&D지구 II 2.0 km <sup>2</sup>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기술사업화센터  
 우: 704-948  
 대구광역시 동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융합R&D센터 1131호  
 TEL. 053-592-8350 FAX. 053-592-8349  
 www.innopolis.or.kr

2012. 08.

[그림 2-2]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표 2-4〉 대구연구개발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지구	구분	면적(천 m <sup>2</sup> )			구성비 (%)
		I	II	소계	
융합R&D지구	녹지구역	112	-	112	0.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1	748	769	3.5
	소계	133	748	881	4.0
지식서비스 R&D지구	일반주거구역	22	-	22	0.1
	녹지구역	2,749	887	3,636	16.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170	1,200	2,370	10.7
	소계	3,941	2,087	6,028	27.1
테크노 폴리리지구	녹지구역	7,239			32.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673			3.0
	소계	7,912			35.5
성서첨단 산업지구	녹지구역	1,324			5.9
	일반주거구역	143			0.6
	준주거구역	244			1.1
	상업구역	56			0.3
	산업시설구역	2,751			12.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827			8.2
	소계	6,345			28.5
의료R&D지구	녹지구역	1,087			4.9
	소계	1,087			4.9
총계		22,253			100.0

## 2) 광주

- 지정목적 : 광기반 융복합, 문화콘텐츠 융복합 등 특화산업 중점육성으로 광역경제권(호남권) 및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창출의 토대 마련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지정면적 : 약 18.73km<sup>2</sup>

〈표 2-5〉 광주연구개발특구 각 지구별 현황

지구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첨단1지구 (3,528천 m <sup>2</sup> )	생산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연구개발지원 등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대학, 협동화단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첨단2지구 (1,244천 m <sup>2</sup> )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연구개발지원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주거단지, 복지시설 등
첨단3지구 (3,827천 m <sup>2</sup> )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개발예정지), 녹지, 주거, 상업, 업무 등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주거단지,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나노지구 (902천 m <sup>2</sup> )	생산,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주거, 복지 등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주거단지,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진곡지구 (1,911천 m <sup>2</sup> )		
신룡지구 (3,450천 m <sup>2</sup> )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개발예정지), 녹지, 주거, 상업, 업무 등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주거단지,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대학 및 기타지구 (3,872천 m <sup>2</sup> )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도로 및 기타
계 (18,734천 m <sup>2</sup> )		



〈표 2-6〉 광주연구개발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지구	구분	면적(천㎡)	구성비(%)
첨단1지구	녹지구역	130	0.7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185	6.3
	산업시설구역	2,213	11.8
	소계	3,528	18.8
첨단2지구	산업시설구역	1,111	6.0
	녹지구역	133	0.7
	소계	1,244	6.7
첨단3지구	녹지구역	3,827	20.4
	소계	3,827	20.4
나노지구	녹지구역	844	4.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58	0.3
	소계	902	4.8
진곡지구	녹지구역	1,604	8.6
	산업시설구역	307	1.6
	소계	1,911	10.2
신룡지구	일반주거구역	170	0.9
	녹지구역	3,280	17.5
	소계	3,450	18.4
대학 및 기타지구	녹지구역	1,388	7.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484	13.3
	소계	3,872	20.7
총계		18,7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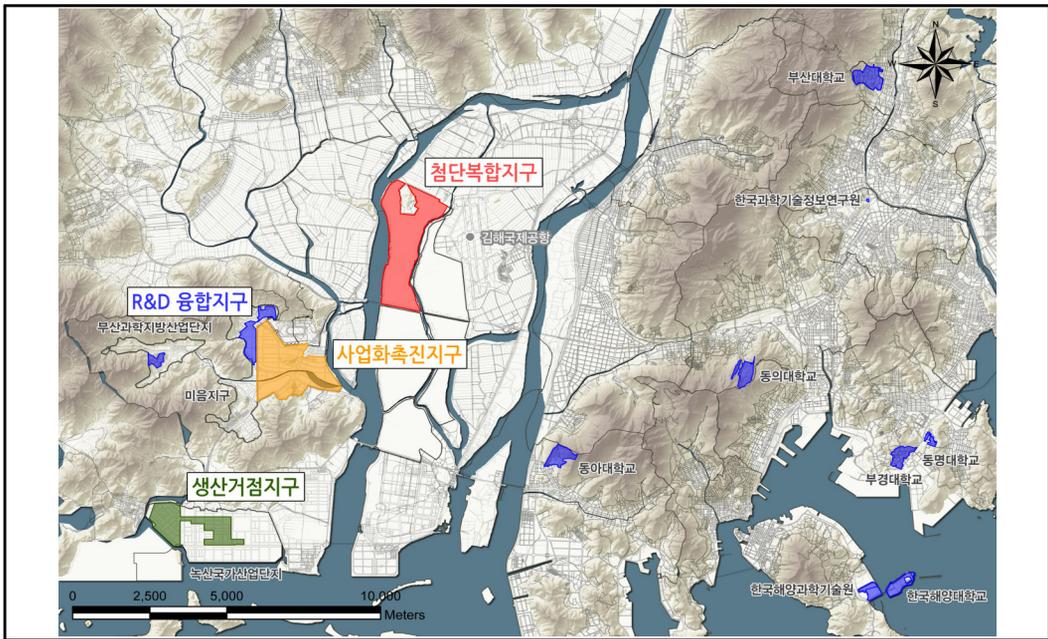
### 3) 부산

- 지정목적 : 부산의 대학 R&D 역량, 인력양성, 조선기자재 산업기반 등 강점을 활용하여 R&D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 지정면적 : 약 14.104km<sup>2</sup>)

〈표 2-7〉 부산연구개발특구 각 지구별 현황

지구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R&D융합지구 (3,205천 m <sup>2</sup> )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등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대학, 협동화단지,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생산거점지구 (2,062천 m <sup>2</sup> )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제조업체, 복지시설 등
사업화촉진지구 (4,202천 m <sup>2</sup> )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연구개발지원 등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첨단복합지구 (4,635천 m <sup>2</sup> )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제조업체, 주거단지, 복지시설 등
계 (14,104천 m <sup>2</sup> )		



[그림 2-4]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1)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각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은 현재 미고시된 상태로 관련자료가 부재하여 상세 내역은 생략함

## 제2절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

### 1. 1단계 개발사업 현황

#### 1) 1단계 개발계획

-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적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확보
- 개발위치 :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 개발면적 : 147만㎡(방현 24만㎡, 신성 26만㎡, 죽동 97만㎡)
- 개발기간 : 2008.8 ~ 2014.11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표 2-8〉 1단계 토지공급 현황

(단위 : m<sup>2</sup>, %)

구분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합계	비율
합계	236,647	265,364	972,349	1,474,360	100.0
산업시설	168,782	95,635	266,345	530,762	36.0
교육·연구	-	28,928	-	28,928	2.0
상업·업무	7,211	29,977	16,823	54,011	3.6
공원·녹지	35,021	44,390	251,464	330,875	22.4
주택용지	-	-	235,193	235,193	16.0
공공시설	25,633	66,434	202,524	294,591	20.0

#### 2) 1단계 개발계획 변경(9차)

- 개발위치 :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표 2-9〉 1단계 지정면적 변경

(단위 : m<sup>2</sup>)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계	1,468,376	1,468,371.7	감)4.3
방현지구	236,593	236,591.7	감)1.3
신성지구	264,624	264,621.2	감)2.8
죽동지구	967,159	967,158.8	감)0.2

○ 개발면적 : 1,468천㎡(방현 236.5천㎡, 신성 264.6천㎡, 죽동 967.1천㎡)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 시행기간 : 기정 : 2008.8.29. ~ 2014.11.30.

          변경 : 2008.8.29. ~ 2014.11.30.(1-1단계)

                  2008.8.29. ~ 2015.11.30.(1-2단계)

○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표 2-10〉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

(단위 : ㎡, %)

구분		1단계 개발계획 (기정)		1단계 개발계획 (변경)			증감	
		총면적	구성비	총면적	1-1단계	1-2단계		구성비
총계		1,468,376	100.0	1,468,371.7	1,240,688.0	227,683.7	100.0	-4.3
주거 · 용지	소계	235,193	16.0	235,122.0	235,122.0	-	16.0	-71.0
	단독주택	58,363	4.0	58,306.0	58,306.0	-	4.0	-57.0
	공동주택	176,830	12.0	176,816.0	176,816.0	-	12.0	-14.0
상업 · 업무 · 용지	소계	54,011	3.6	53,993.7	24,016.7	29,977.0	3.6	-17.3
	상업용지	16,823	1.1	16,780.1	16,780.1	-	1.1	-42.9
	지원시설	37,188	2.5	37,213.6	7,236.6	29,977.0	2.5	25.6
공원 · 녹지 · 용지	소계	324,912	22.2	324,657.6	200,781.8	123,875.8	22.2	-254.4
	공원	276,174	18.7	276,046.3	161,304.3	114,742.0	18.7	-127.7
	완충녹지	36,415	2.5	36,237.9	31,132.1	5,105.8	2.5	-177.1
	경관녹지	5,888	0.5	5,952.5	3,506.5	2,446.0	0.5	64.5
	공공공지	4,853	0.3	4,838.9	4,838.9	-	0.3	-14.1
하천	1,582	0.2	1,582.0	-	1,582.0	0.2	-	
교육· 연구 및 사업화 · 시설용지	소계	28,928	2.0	28,911.4	28,911.4	-	2.0	-16.6
	연구시설	28,928	2.0	28,911.4	28,911.4	-	2.0	-16.6
산업 · 용지	소계	531,055	36.2	530,655.1	492,535.2	38,119.9	36.1	-399.9
	커뮤니티지원	4,749	0.3	4,749.0	4,749.0	-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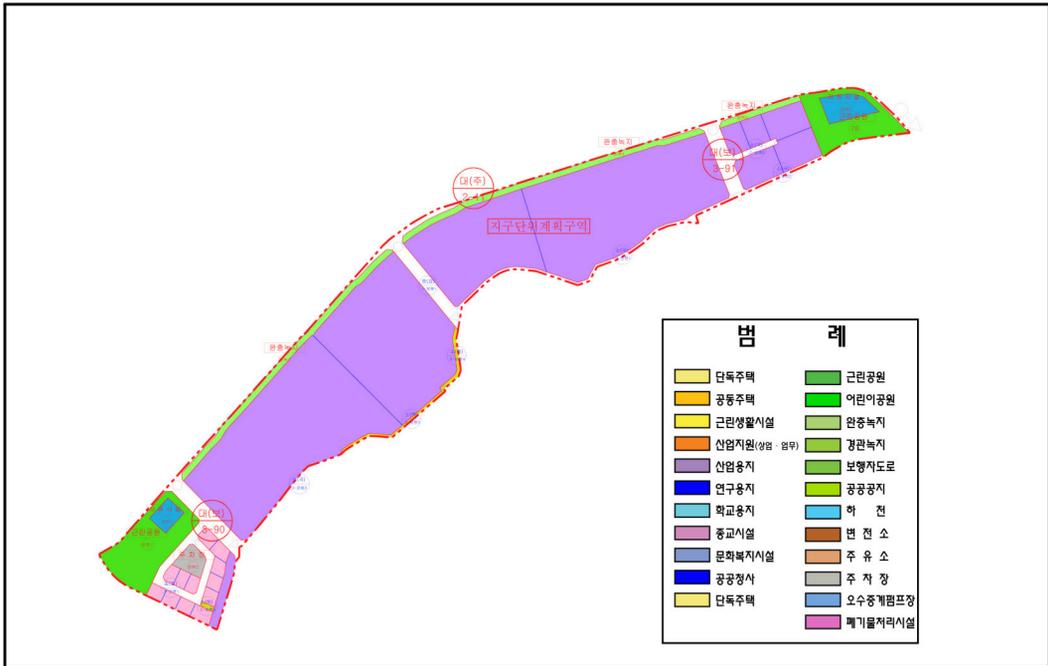
구분		1단계 개발계획 (기정)		1단계 개발계획 (변경)				증감
		총면적	구성비	총면적	1-1단계	1-2단계	구성비	
	생산용지	488,127	33.3	487,786.2	487,786.2	-	33.3	-340.8
	종합의료시설	38,179	2.6	38,119.9	-	38,119.9	2.6	-59.1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94,277	20.0	295,031.9	259,320.9	35,711.0	20.1	754.9
	문화여가 복지시설	660	0.1	660.0	660.0	-	0.1	-
	의료및사회 복지시설	7,700	0.5	7,700.0	7,700.0	-	0.5	-
	공공청사	2,451	0.2	2,396.1	2,396.1	-	0.2	-54.9
	종교용지	1,614	0.1	1,614.0	1,614.0	-	0.1	-
	주유소	2,522	0.2	2,522.1	1,000.1	1,522.0	0.2	0.1
	주차시설	9,884	0.7	9,873.9	8,253.9	1,620.0	0.7	-10.1
	유치원	2,000	0.1	2,000.0	2,000.0	-	0.1	-
	학교용지	12,320	0.8	12,291.5	12,291.5	-	0.8	-28.5
	보행자 전용도로	8,626	0.6	8,650.0	7,736.0	914.0	0.6	24.0
	도로	233,709	15.8	234,524.3	206,687.3	27,837.0	16.0	815.3
	배수지	3,818	0.3	3,818.0	-	3,818.0	0.3	-
	저류지	8,948	0.6	8,957.0	8,957.0	-	0.6	9.0
가스공급설비	25	-	25.0	25.0	-	0.0	-	

〈표 2-10〉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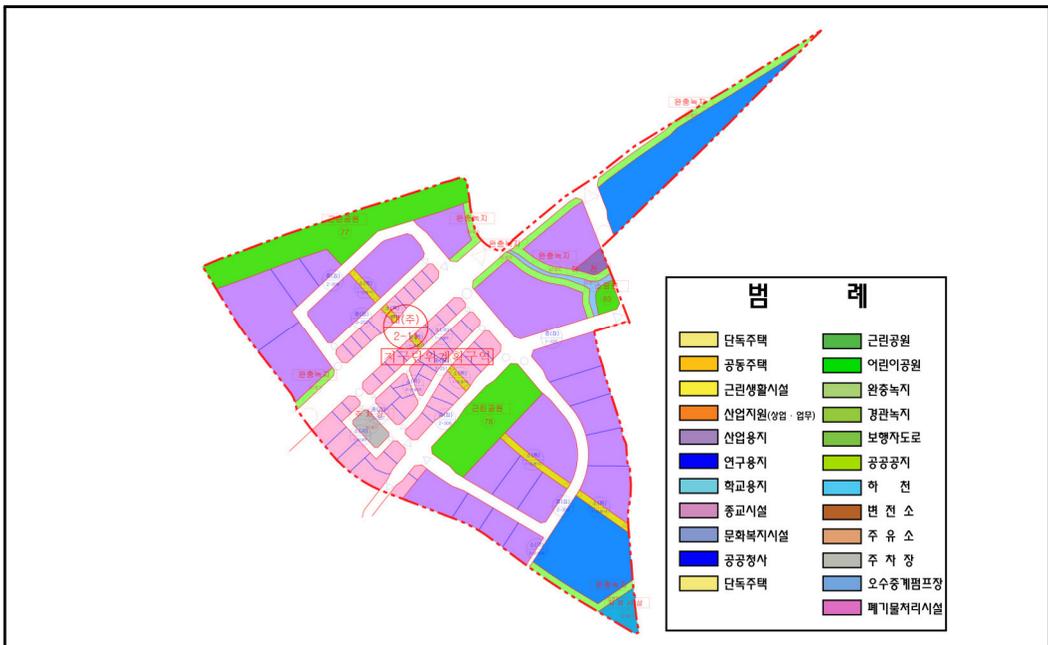
(단위 : m<sup>2</sup>, %)

구분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236,593	236,591.7	264,624	264,621.2	967,159	967,158.8
주거 용지	소계	-	-	-	-	235,193	235,122.0
	단독주택	-	-	-	-	58,363	58,306.0
	공동주택	-	-	-	-	176,830	176,816.0
상업 · 업무 용지	소계	7,211	7,236.6	29,977	29,977.0	16,823	16,780.1
	상업용지	-	-	-	-	16,823	16,780.1
	지원시설	7,211	7,236.6	29,977	29,977.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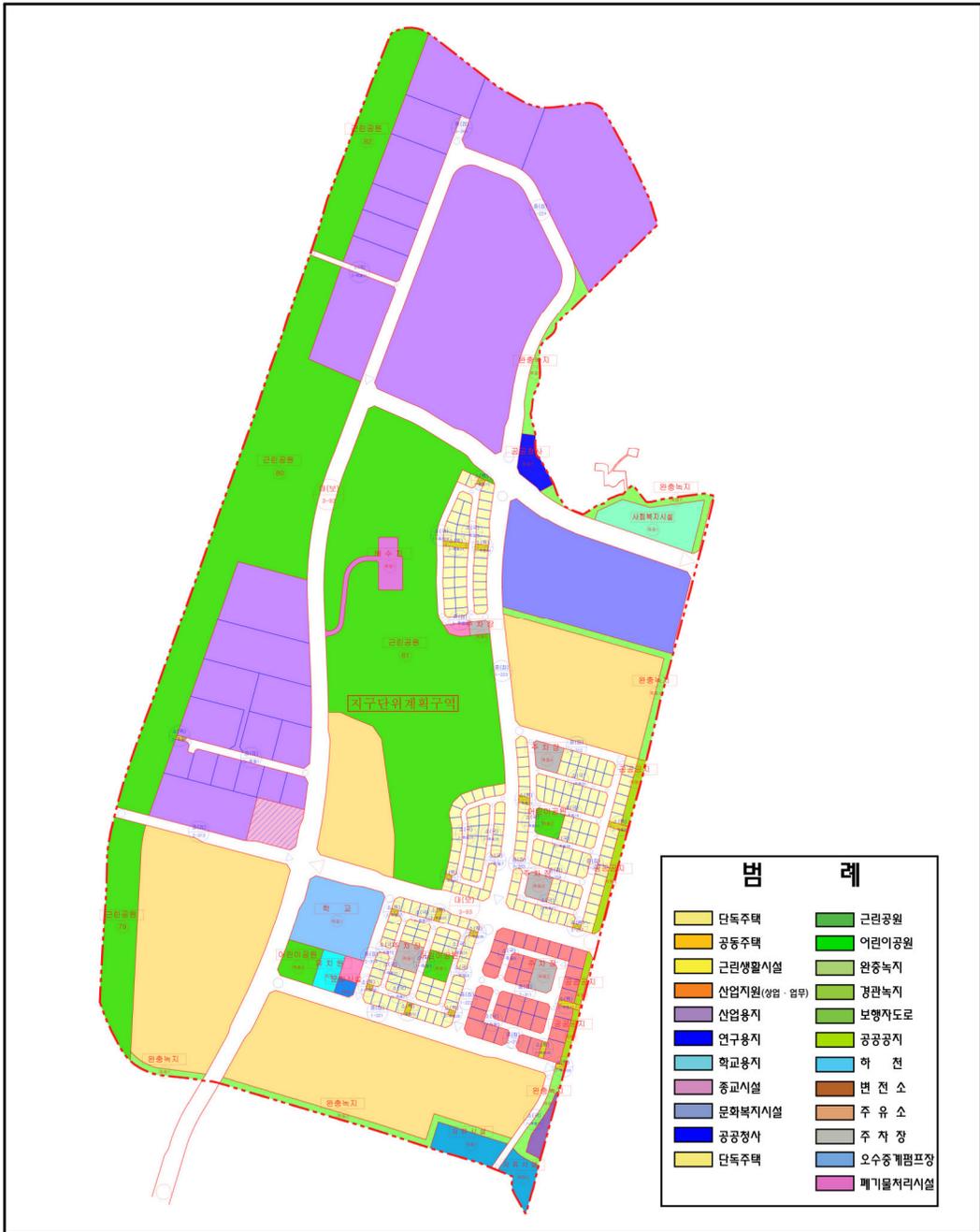
구분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원 · 녹지 용지	소계	35,528	35,337.4	43,452	43,369.1	245,932	245,951.1
	공원	23,401	23,399.1	29,594	29,492.3	223,179	223,154.9
	완충녹지	11,999	11,809.6	12,276	12,294.8	12,140	12,133.5
	경관녹지	-	-	-	-	5,888	5,952.5
	공공공지	128	128.7	-	-	4,725	4,710.2
	하천	-	-	1,582	1,582.0	-	-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용지	소계	-	-	28,928	28,911.4	-	-
	연구시설	-	-	28,928	28,911.4	-	-
산업 용지	소계	168,756	168,710.7	95,954	95,642.6	266,345	266,301.8
	커뮤니티지원	-	-	-	-	4,749	4,749.0
	생산용지	168,756	168,710.7	95,954	95,642.6	223,417	223,432.9
	종합의료시설	-	-	-	-	38,179	38,119.9
기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5,098	25,307.0	66,313	66,721.1	202,866	203,003.8
	문화여가복지시설	-	-	-	-	660	660.0
	의료및사회복지 시설	-	-	-	-	7,700	7,700.0
	공공청사	-	-	-	-	2,451	2,396.1
	종교용지	-	-	-	-	1,614	1,614.0
	주유소	-	-	1,000	1,000.1	1,522	1,522.0
	주차시설	1,740	1,740.2	1,620	1,620.0	6,524	6,513.7
	유치원	-	-	-	-	2,000	2,000.0
	학교용지	-	-	-	-	12,320	12,291.5
	보행자전용도로	2,348	2,366.1	3,681	3,681.9	2,597	2,602.0
	도로	21,010	21,200.7	57,987	58,398.4	154,712	154,925.2
	배수지	-	-	-	-	3,818	3,818.0
	저류지	-	-	2,000	1,995.7	6,948	6,961.3
	가스공급설비	-	-	25	25.0	-	-



[그림 2-5] 방현지구 토지이용계획



[그림 2-6] 신성지구 토지이용계획



[그림 2-7] 죽동지구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표 2-11〉 죽동지구 인구 및 주택계획

(단위 : m<sup>2</sup>, 세대, 인, 인/ha, 평, %)

구분		면적 (m <sup>2</sup>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인구 밀도 (인/ha)	평균 평형 (평)	용적율 (%)	인구 구성비 (%)	비고
합계	기정	235,193	3,536	9,548	406.0	-	-	100.0	
	변경	235,122	3,536	9,548	406.1	-	-	100.0	
단독 주택	기정	58,363	231	624	106.9	-	-	6.5	1-1단계
	변경	58,306	231	624	107.0	-	-	6.5	
획지형	기정	58,363	231	624	106.9	80	150%	6.5	
	변경	58,306	231	624	107.0	80	150%	6.5	
공동 주택	기정	176,830	3,305	8,924	504.7	-	-	93.5	1-1단계
	변경	176,816	3,305	8,924	504.7	-	-	93.5	
A1	변경 없음	85m <sup>2</sup> 초과	17,685	220	594	335.9	38	200%	6.2
		60m <sup>2</sup> -85m <sup>2</sup>	41,265	778	2,101	509.1	32	200%	22.0
A2	변경 없음	60m <sup>2</sup> -85m <sup>2</sup>	62,261	1,177	3,178	510.5	32	200%	26.5
A3	기정	60m <sup>2</sup> -85m <sup>2</sup>	34,571	638	1,723	498.3	32	200%	14.7
	변경		34,557	638	1,723	498.5	32	200%	18.0
A5	변경 없음	60m <sup>2</sup> 이하	21,048	492	1,328	631.1	20	200%	12.7/8.9

○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표 2-12〉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

(단위 : m<sup>2</sup>)

구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초등학교	죽동 102-1대	12,320	감) 28.5	12,291.5	1-1단계
유치원	죽동 102-22대	2,000	-	2,000	1-1단계
문화여가복지시설	죽동 107-1대	660	-	660	1-1단계
사회복지시설	죽동 59-18대	7,700	-	7,700	1-1단계

○ 공원·녹지계획(변경)

〈표 2-13〉 방현지구 공원·녹지계획 변경

(단위 : m<sup>2</sup>)

구분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528	감) 190.6	35,337.4	
공원	23,401	감) 1.9	23,399.1	저류지2개소, 가압장1개소 포함 1-1단계
완충녹지	11,999	감) 189.4	11,809.6	1-1단계
공공공지	128	증) 0.7	128.7	1-1단계

〈표 2-14〉 신성지구 공원·녹지계획 변경

(단위 : m<sup>2</sup>)

구분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3,452	감) 82.9	43,369.1	
공원	29,594	감) 101.7	29,492.3	1-1단계 1-2단계
완충녹지	12,276	증) 18.8	12,294.8	1-1단계 1-2단계
하천	1,582	-	1,582.0	1-2단계

〈표 2-15〉 죽동지구 공원·녹지계획 변경

(단위 : m<sup>2</sup>)

구분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5,932	증) 19.1	245,951.1	
공원	223,179	감) 24.1	223,154.9	배수지 단독결정,1-2단계
완충녹지	12,140	감) 6.5	12,133.5	1-1단계,1-2단계
경관녹지	5,888	증) 64.5	5,952.5	1-1단계,1-2단계
공공공지	4,725	감) 14.8	4,710.2	1-1단계

## 2. 2단계 개발사업 현황

### 1) 2단계 개발계획

- 특구 활성화 및 개발수요를 반영, 생산연구기업지원 기능 등 확충에 필요한 2차 거점 확보를 위해 추진
- 개발위치 :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전민동, 문지동 일원
- 개발면적 : 417만㎡(신동 169.9만㎡, 둔곡 200.0만㎡, 전민 17.6만㎡, 문지 29.9만㎡)
- 개발기간 : (거점지구)실시계획승인일 ~ 2017.12, (문지) 2011.12 ~ 2015.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거점지구, 전민지구), 조합(문지지구)

〈표 2-16〉 2단계 토지공급 계획현황

(단위 : m<sup>2</sup>, %)

구분	거점지구 (신동·둔곡)	전민지구	문지지구	합계	비율
합계	3,442,675	176,333	298,137	3,917,145	100.0
산업시설	298,790	—	55,812	354,602	9.0
교육·연구	1,927,217	94,462	—	2,021,679	51.6
상업·업무	82,755	—	14,315	97,070	2.5
공원·녹지	462,185	21,778	28,427	512,390	13.1
주택용지	195,045	22,787	105,728	323,560	8.3
공공시설	476,683	37,306	93,854	607,843	15.5

※ 용산지구(364천m<sup>2</sup>)는 2단계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분류된 지구이나 개발사업 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

### 2) 2단계 개발계획 변경(3차)

- 개발위치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문지동 일원
- 개발면적 : 474천㎡(전민 176.3천㎡, 전민 298.1천㎡)

〈표 2-17〉 2단계 지정면적 현황

구분	면적(㎡)	비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3,442,675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변경사항은 별도 정리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474,470	
전민지구	176,333	
문지지구	298,137	

- 사업시행자 : 전민(한국토지주택공사) / 문지(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표 2-18〉 2단계 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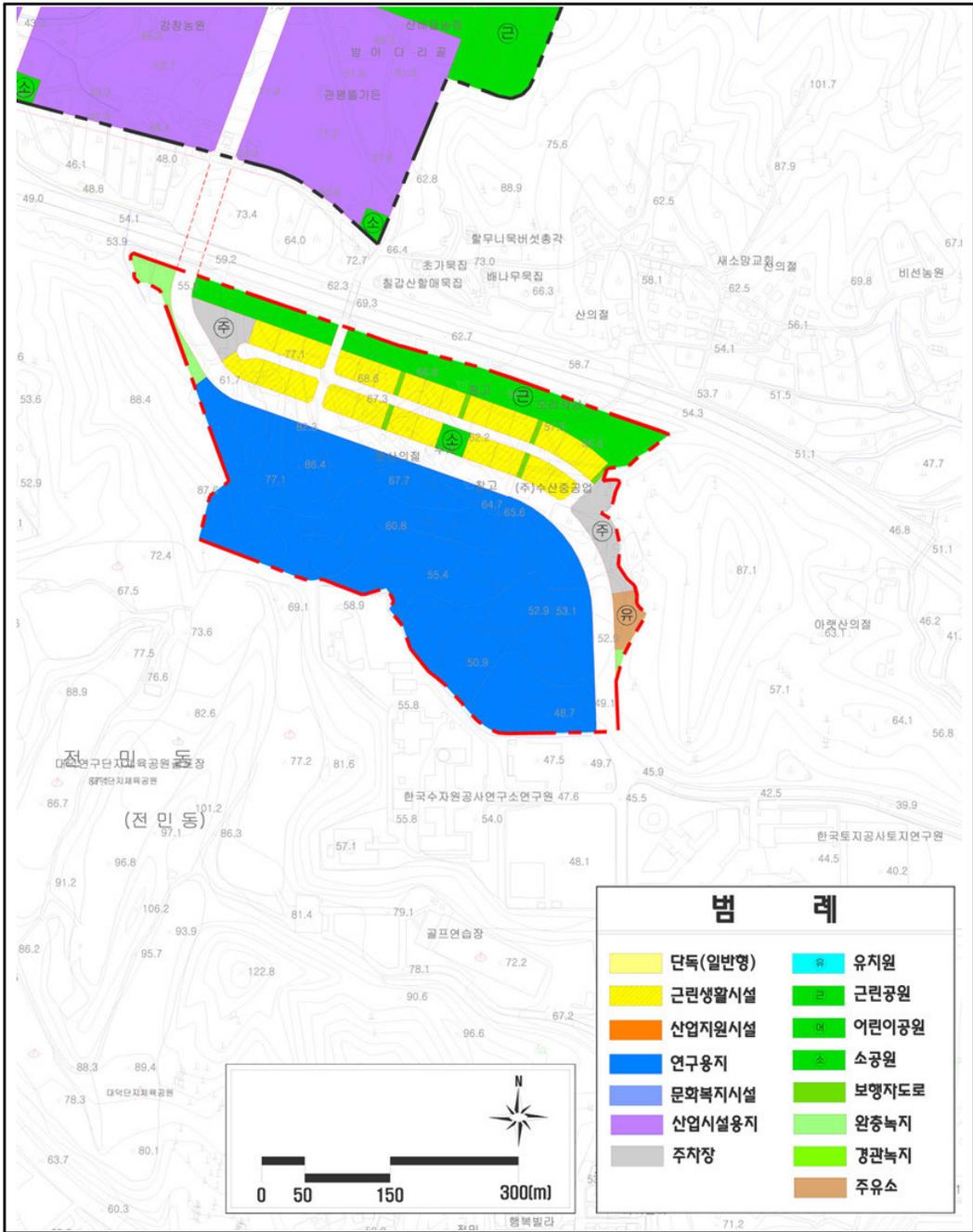
구분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시행방법	전민지구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문지지구	토지소유자에 의한 환지방식
시행기간	전민지구	실시계획승인일~2013.12.31.(기정) <b>실시계획승인일~2015.12.31.(변경)</b>
	문지지구	2011.12.30.~2013.12.31.(기정) <b>2011.12.30.~2015.12.31.(변경)</b>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표 2-19〉 2단계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구분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총면적 (㎡)	구성비 (%)	전민지구 (㎡)	문지지구 (㎡)	
총계	474,470	100.00	176,333	298,137.0	
주거용지	소계	128,515	27.09	22,787	105,728.4
	단독주택	52,296	11.02	—	52,295.6
	공동주택	53,433	11.26	—	53,432.8
	도시형생활주택	—	—	—	—
	근린생활시설	22,787	4.80	22,787	—

구분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총면적 (㎡)	구성비 (%)	전민지구 (㎡)	문지지구 (㎡)
상업업무 용지	소계	14,315	3.02	-	14,315.4
	산업지원	14,315	3.02	-	14,315.4
공원 녹지용지	소계	50,205	10.58	21,778	27,427.4
	근린공원	28,375	5.98	18,099	10,276.1
	수변공원	-	-	-	-
	어린이공원	4,763	1.00	-	4,763.4
	완충녹지	16,047	3.38	2,659	13,387.9
	경과녹지	-	-	-	-
	소공원	1,020	0.21	1,020	-
	하천	-	-	-	-
	공공공지	-	-	-	-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용지	소계	94,462	19.91	94,462	-
	연구용지 (중이온가속기)	-	-	-	-
	연구용지 (기초과학연구원)	-	-	-	-
	연구용지(R&D)	94,462	19.91	94,462	-
산업시설 용지	소계	55,812	11.76	-	55,812.1
	산업용지(첨단제조)	55,812	11.76	-	55,812.1
기타공공 시설용지	소계	131,160	27.64	37,306	93,853.7
	도로	113,207	23.86	27,683	85,523.6
	보행자도로	1,641	0.35	997	644.0
	문화복지시설	-	-	-	-
	공공청사	1,903	0.40	-	1,903.1
	주차장	8,583	1.81	6,813	1,770.1
	저류시설	4,013	0.85	-	4,012.9
	유치원	-	-	-	-
	학교용지	-	-	-	-
	종교시설	-	-	-	-
	주유소	1,813	0.38	1,813	-
	전기공급설비	-	-	-	-
	오수중계펌프장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유보지	소계	-	-	-	-
	유보지	-	-	-	-



[그림 2-8] 전민지구 토지이용계획

# 제 1 종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종합도



[그림 2-9] 문지지구 토지이용계획

###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현황

####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 개발위치 :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 개발면적 : 344만㎡
- 개발기간 : (거점지구)실시계획승인일 ~ 2017.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이용계획

〈표 2-20〉 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기정)

구분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총면적(㎡)	구성비(%)
총계		3,442,675	100.00
주거용지	소계	195,045	5.67
	단독주택	76,243	2.21
	공동주택	86,900	2.52
	도시형생활주택	23,110	0.67
	근린생활시설	8,792	0.26
상업업무용지	소계	82,755	2.40
	산업지원	82,755	2.40
공원녹지용지	소계	462,185	13.43
	근린공원	144,815	4.21
	수변공원	164,078	4.77
	어린이공원	1,575	0.05
	완충녹지	4,336	0.13
	경과녹지	22,679	0.66
	소공원	-	-
	하천	122,969	3.57
공공공지	1,733	0.0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용지	소계	1,927,217	55.98
	연구용지(중이온가속기)	1,037,796	30.15
	연구용지(기초과학연구원)	525,250	15.26
	연구용지(R&D)	364,171	10.58
산업시설용지	소계	298,790	8.68
	산업용지(첨단제조)	298,790	8.68
기타공공시설용지	소계	405,104	11.77

구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총면적(㎡)	구성비(%)
	도로	339,226	9.85
	보행자도로	5,329	0.15
	문화복지시설	2,372	0.07
	공공청사	6,471	0.19
	주차장	20,675	0.60
	저류시설	-	-
	유치원	-	-
	학교용지	9,329	0.27
	종교시설	3,556	0.10
	주유소	2,594	0.08
	전기공급설비	6,449	0.19
	오수중계펌프장	9,103	0.26
	폐기물처리시설	-	-
	유보지	소계	71,579
유보지		71,579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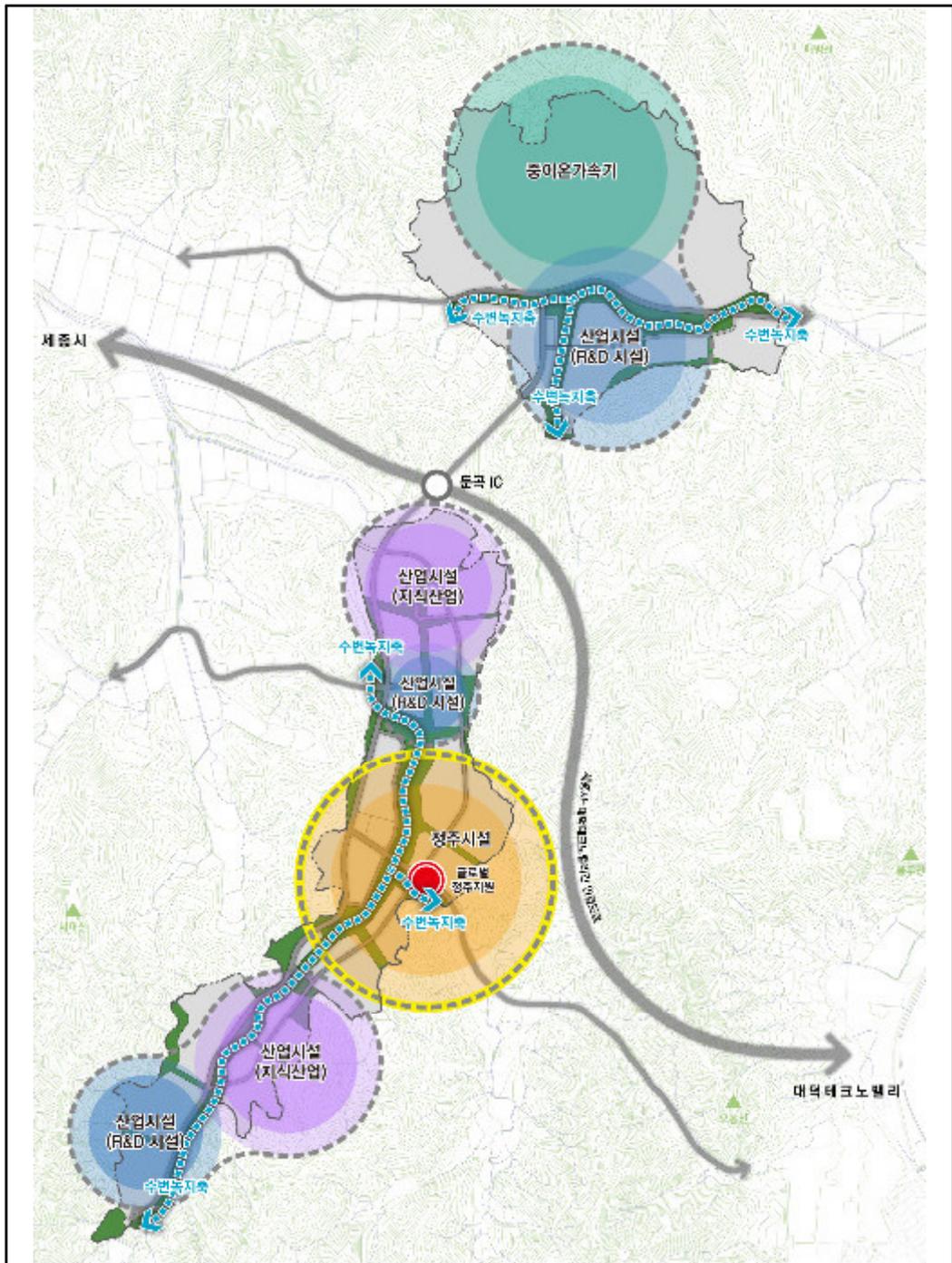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 변경

- 개발위치 :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 개발면적(변경) : 3,445.1천㎡
- 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 (거점지구)실시계획승인일 ~ 2019.12.31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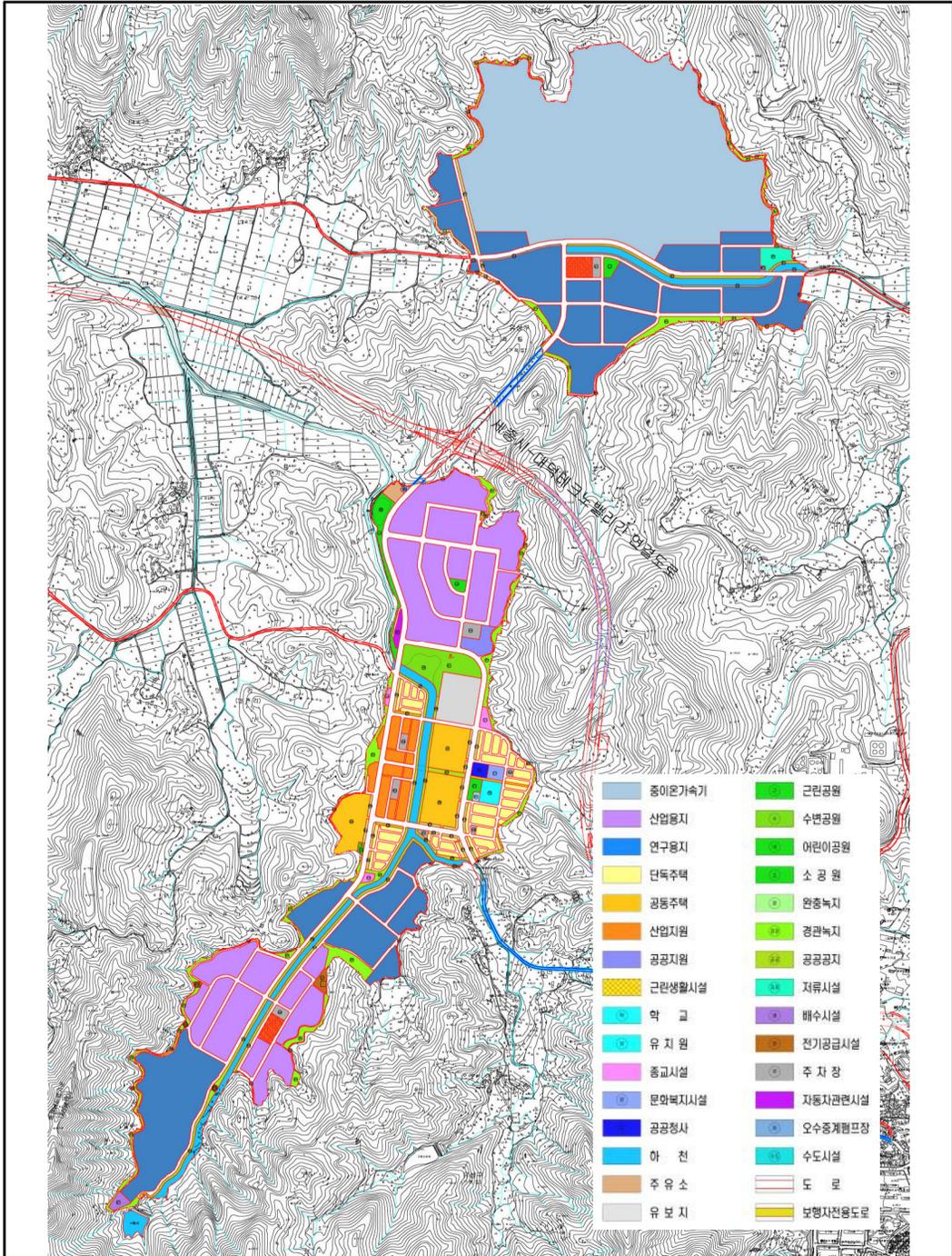
〈표 2-21〉 거점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비고
		총면적(㎡)	구성비(%)	
총계		3,445,118	100.00	
주거 용지	소계	212,230	6.16	
	단독주택	88,954	2.58	
	공동주택	103,912	3.02	
	도시형생활주택	-	-	

구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비고	
	총면적(m <sup>2</sup> )	구성비(%)		
상업·업무 용지	근린생활시설	19,364	0.56	
	소계	64,728	1.88	
	산업지원	52,080	1.51	
	공공지원	12,648	0.37	
공원·녹지 용지	소계	447,507	12.99	
	근린공원	19,193	0.56	저류지 6,300m <sup>2</sup> 포함
	수변공원	40,465	1.17	저류지 12,000m <sup>2</sup> 포함
	어린이공원	4,445	0.13	
	소공원	9,568	0.28	
	완충녹지	26,956	0.78	
	경관녹지	184,941	5.37	
	하천	117,292	3.40	
	공공공지	28,263	0.82	
	저류시설	11,000	0.32	
	보행자전용도로	5,384	0.16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용지	소계	952,066	27.64	
	중이온가속기	952,066	27.64	
산업시설 용지	소계	1,242,254	36.05	
	산업용지	494,985	14.36	
	연구용지	747,269	21.69	
기타공공시설 용지	소계	487,812	14.16	
	도로	405,961	11.78	
	문화복지시설	4,557	0.13	
	공공청사	4,557	0.13	
	주차장	20,953	0.61	
	학교	9,329	0.27	
	유치원	1,230	0.04	
	종교시설	7,376	0.21	
	자동차관련시설	4,187	0.12	
	주유소	5,348	0.16	
	전기공급시설	6,388	0.19	
	오수중계펌프장	1,442	0.04	
	배수시설	4,500	0.13	
	수도시설	11,984	0.35	
유보지	소계	38,521	1.12	
	유보지	38,521	1.12	



[그림 2-10] 신동·둔곡지구 공간배치 개념도



[그림 2-11] 신동·둔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그림 2-12]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조감도



[그림 2-13] 신동지구(중이온가속기) 조감도

### 3) 엑스포 과학공원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지구 개발사업

-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 내 기초과학연구원(IBS) 입지가 결정됨(' 13.7)에 따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거점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 추진
- 개발위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과학공원 일원
- 개발면적 : 592천㎡(IBS 244.8천㎡, 사이언스센터 54천㎡, HD드라마타운 65.4천㎡, 엑스포 주제공원 107.9천㎡)
- 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 실시계획승인일 ~ 2021.12.
- 사업시행자 : 대전마케팅공사
- 토지이용계획

〈표 2-22〉 도룡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구분		총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총계		592,494.4	100.0	332,494.4	100.0	260,000.0	100.0
상업업무 용지	소계	88,036.0	14.9	88,036.0	26.5	-	-
	사이언스센터	54,048.3	9.2	54,048.3	16.3	-	-
	국제전시컨벤션센터	27,972.9	4.7	27,972.9	8.4	-	-
	누리관	6,014.8	1.0	6,014.8	1.8	-	-
산업시설 용지	소계	347,788.8	58.6	102,949.8	31.0	244,839.0	94.2
	기초과학연구원	244,839.0	41.2	0.0	0.0	244,839.0	94.2
	CT센터	37,472.8	6.3	37,472.8	11.3	-	-
	HD드라마	65,477.0	11.1	65,477.0	19.7	-	-
공원녹지 용지	소계	108,965.2	18.4	108,965.2	32.7	-	-
	엑스포주제공원	107,909.9	18.2	107,909.9	32.4	-	-
	경관녹지	1,055.3	0.2	1,055.3	0.3	-	-
기타공공 시설용지	소계	47,704.4	8.1	32,543.4	9.8	15,161.0	5.8
	도로	41,704.4	7.1	26,543.4	8.0	15,161.0	5.8
	주차장	6,000.0	1.0	6,000.0	1.8	-	-



[그림 2-14] 기초과학연구원(도룡지구) 조감도

※상기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건립은 설계공모를 거쳐 추진예정

## 4. 관련법령 검토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표 2-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목적	•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정의	•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임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 다만,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군사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	제3조
특구의 지정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3.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4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p>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함</p>	
<p>특구의 지정해제</p>	<p>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li> <li>-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p>2.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함</p>	<p>제5조</p>
<p>특구육성 종합계획</p>	<p>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p> <p>2.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li> <li>-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li> <li>-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li> <li>-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li> <li>-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li> <li>-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li> <li>-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li> <li>-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li> <li>-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li> <li>-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p>제6조</p>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함	
특구개발계획	<p>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함)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p> <p>2.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의 명칭·위치</li> <li>-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li> <li>- 특구의 개발 필요성</li> <li>-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함)</li> <li>-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li> <li>-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li> <li>- 재원조달방법</li> <li>-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li> <li>-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li> <li>- 교통처리계획</li> <li>-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li> <li>-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li> <li>- 환경보전계획</li> <li>-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li> <li>-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p>3.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함</p> <p>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제6조의2
특구육성 사업의 추진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함)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음	제12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p>2.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함</p> <p>3.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투자조합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함)은 특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li>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li> <li>-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li> <li>-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기술기업</li> <li>-연구소기업</li> </ul> </li> <li>-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li> </ul> </li> </ul>	제17조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	<p>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p> <p>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p>	제22조 제23조
특구개발 사업의 시행자	<p>1.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li> <li>-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재단</li> </ul> </li> <li>-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li> </ul> </p>	제26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p>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p> <p>-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p> <p>-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p>	
실시계획의 승인	<p>1.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자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2. 시·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말함.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음)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봄</p> <p>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p> <p>4.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함</p>	제27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p>•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야 함.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p>	제28조
특구개발 사업의 착수	<p>1.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p> <p>2.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p>	제30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p>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음</p>	
<p>준공검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를 거쳐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li> <li>2.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li> <li>3.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li>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li> </ol>	<p>제32조</p>
<p>개발이익의 재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특구의 산업·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li> <li>-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li> </ul> </li> <li>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li> <li>3.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li> </ol>	<p>제32조의2</p>
<p>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li> <li>2. 제1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li> <li>- 특구의 위치 및 면적</li> <li>-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li> <li>-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li> <li>-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li> </ul> </li> </ol>	<p>제34조</p>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입주승인	<p>1.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함. 입주승인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p> <p>2.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p>	제37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	<p>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li> <li>-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li> <li>-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li> </ul> <p>2.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p> <p>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p>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p>•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p>	제44조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설립 등	<p>1.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p> <p>2.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함</p> <p>3.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p> <p>4.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제46조
진흥재단의 사업	<p>1.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li> </ul> <p>가.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p>	제48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p>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p> <p>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치·설치 및 관리·운영</p> <p>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p> <p>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p> <p>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p> <p>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p> <p>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p> <p>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p> <p>-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p> <p>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p> <p>나.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p> <p>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p> <p>라.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p> <p>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p> <p>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p> <p>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p> <p>아. 제17조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의 참여</p> <p>-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p> <p>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p> <p>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p> <p>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p> <p>-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p> <p>2.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함</p>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p>•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p>	제48조의2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표 2-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정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6장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 다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4조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함)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목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면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 및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	제8조

	<p>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p>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입지 관련 고려사항</p>	<p>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산업인프라 집적도 또는 향후 집적가능성</li> <li>-국내외 접근 용이성</li> <li>-부지확보 용이성</li> <li>-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정도 또는 향후 조성가능성</li> <li>-지반·지질 및 재해 안정성</li> </ul> <p>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능지구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인프라 또는 첨단산업인프라의 구축정도</li> <li>-거점지구와 기능적 연계성</li> <li>-거점지구와 지리적 근접성</li> </ul>	<p>제9조</p>
<p>거점지구의 개발</p>	<p>1.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함</p> <p>2. 거점지구가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함</p> <p>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할 수 있음</p>	<p>제12조</p>
<p>기초과학 연구원의 설립 등</p>	<p>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함</p> <p>2. 연구원은 법인으로 함</p> <p>3.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p> <p>4.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p> <p>5.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p>	<p>제14조</p>
<p>연구원의 사업</p>	<p>1.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과학연구</li> <li>-기초연구</li> </ul>	<p>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과학과 인문학·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li> <li>-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 포함) 및 장비의 활용에 관한 사업</li> <li>- 연구성과의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li> <li>-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li> <li>-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p>2.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p>	
<p>연구원의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원</p>	<p>1.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li> <li>- 향후 5년간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li> <li>-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li> <li>-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li> </ul> <p>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p>	<p>제21조</p>
<p>대형기초 연구시설의 설치 등</p>	<p>1.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p> <p>2. 국가는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p> <p>3.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함</p> <p>4.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함</p>	<p>제27조</p>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표 2-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li> </ul>	제1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시설용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 시설, 물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li> <li>•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li> <li>②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li> <li>③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li> <li>④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li> </ol> </li> <li>•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li> <li>②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li> <li>③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li> <li>④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li> <li>⑤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li> <li>⑥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저수지 건설사업</li> <li>⑦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li> <li>⑧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li> <li>⑨그 밖에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li> </ol> </li> <li>•준산업단지: 도시/도시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li> </ul>	제2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장들의 밀집도가 높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둠</li> <li>•심의회 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li> <li>•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음</li> <li>•지방산업입지심의회 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li> </ul>	제3조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조 관련</li> <li>•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 심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li> <li>②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변경</li> <li>③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li> <li>④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li> <li>⑤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li> <li>⑥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지정·개발</li> <li>⑦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승인</li> <li>⑧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li> </ol> </li> </ul>	영 제2조의2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li> <li>②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li> <li>③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li> </ol> </li> <li>•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정부출연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li> <li>•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li> </ul>	제4조
	산업입지개발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다만, 농공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li> <li>•산업입지개발지침 포함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li> <li>②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li> <li>③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li> </ol> </li> </ul>	제5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p>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심의회 심의, 변경 시에도 같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제외</li> <li>•산업입지개발지침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li> </ul>	
산업입지 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	<p>●법 제5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li>①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li> <li>②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li> <li>③토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li>④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li> <li>⑤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영 제4조
산업입지 수급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li> <li>•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포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li> <li>②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li> <li>③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li> <li>④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지원</li> <li>⑤그 밖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li> </ul> </li> <li>•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li>•시·도지사는 산업입지수립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li> <li>•산업입지수급계획 포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li> <li>②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li> <li>③산업단지 종류별 공급</li> <li>④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li> <li>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li> <li>•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li> </ul>	제5조의2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수립 등	<p>●법 제5조의2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 관련 계획을 고려</li> <li>•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계획기간은 10년,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 가능</li> </ul>	영 제6조의2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5조의2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산업단지지정계획</li> <li>②산업용지 수요</li> <li>③산업단지 재생계획</li> <li>④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사항</li> </ul> </li> <li>•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나 관계기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 있을 때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송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li> <li>•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같음.</li> </ul>	제7조의2
산업 단 지 의 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li> <li>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li> <li>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li> <li>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li> <li>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보금자리주택지구</li> <li>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li> <li>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li> <li>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li> <li>•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2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 할수 있음</li> <li>•도시첨단산업단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음</li> </ul>	제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 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공보에 고시, 산</li> </ul>	제7조의4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고시 등	<p>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내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 다만, 산업단지 지정 후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고시</li> <li>•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li> </ul>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 등	<p>●법 제7조의4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단지 지정/지정변경 후 고시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산업단지의 명칭·위치·면적</li> <li>②산업단지의 지정목적</li> <li>③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li> <li>④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li> <li>⑤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li> <li>⑥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li> <li>⑦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li> <li>⑧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li> </ul> </li> <li>•다만, ③ 및 ⑧은 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내용이 확정된 후 고시 가능</li> </ul>	영 제9조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미분양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미분양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산업단지 지정 제외</li> <li>•산업단지 지정 제한이 제외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li> <li>②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li> </ul> </li> <li>•지정면적/미분양비율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함</li> </ul>	제8조의2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p>●법 제8조의2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8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미분양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가산업단지: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미분양비율 15%이상</li> <li>②일반산업단지: 시·도별로 미분양비율 30%이상</li> <li>③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별로 면적 330만㎡ 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이상</li> <li>④농공단지: 시·군·구별로 100만㎡~200만㎡ 범위 내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비율 30%이상</li> </ul> </li> </ul>	영 제10조의2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li> </ul>	
주민 등의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함. 다만, 국방상 기밀이 있는 경우 의견 청취 생략 가능</li> <li>•산업단지지정권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li> <li>•그 밖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li> </ul>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p>◎법 제10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지정권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지정계획안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함</li> <li>•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 송부 받은 시장·군수는 지정계획안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함</li> <li>•공고된 지정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서 제출 가능</li> <li>•지정계획안 내용 송부 받은 시장·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출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와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제출</li> </ul>	영 제11조
행위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산업단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에도 같음</li> <li>•허가가 불필요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li> <li>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li> </ul> </li> <li>•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서, 공고/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 가능</li> <li>•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항(행위제</li> </ul>	제12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p>한)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명령 받은 자가 의무 불이행 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대집행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60조, 제62조를 준용</li> <li>•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li> </ul>	
행위허가의 대상 등	<p>●법 제12조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2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허가가 필요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 건축, 대수선/용도변경</li> <li>②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li> <li>③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공유수면의 매립</li> <li>④토석채취: 토석 채취하는 행위</li> <li>⑤토지분할</li> <li>⑥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li> <li>⑦죽목 벌채 및 식재</li> </ul> </li> <li>•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의견 송부</li> <li>•법 제12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설치</li> <li>②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li> <li>③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석채취</li> <li>④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li> <li>⑤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li> </ul> </li> <li>•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공고일/산업단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신고</li> </ul>	영 제14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단지 일부/전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미신청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li> <li>•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일부 해제 가능한</li> </ul>	제13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p>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산업단지 일부/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어진 경우</li> <li>②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li> <li>-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 주변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li> </ul> </li> <li>•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고시하고,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li> <li>•산업단지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에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 다만, 개발 완료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li> <li>•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 즉시 고시</li> </ul>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3조 관련</li> <li>•법 제1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가산업단지: 5년</li> <li>②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년</li> <li>③농공단지: 2년</li> </ul> </li> <li>•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제사유·내역·용도지역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li> <li>•산업단지 지정해제 시 고시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산업단지 명칭</li> <li>②해제되는 산업단지 위치 및 면적</li> <li>③산업단지 해제사유</li> <li>④용도지역 환원여부</li> <li>⑤관계도서의 열람방법</li> </ul> </li> </ul>	영 제15조

####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표 2-2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주요 내용

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목적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	제1조
정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관 •산업단지계획 : 개발계획 + 실시계획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2.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며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름	제4조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함	제5조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투자의향서	1.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투자자 소개서, 사업규모 및 기간, 사업예정부지,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입지수요 자료, 자원조달계획 2.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 등에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등 3.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제7조
산업단지 계획	1.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업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봄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8조

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주요 유치업종,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li> <li>-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li> <li>-자원조달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등</li> </ul> <p>2.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p>	
주민 등의 의견청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권자는 공고 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li> <li>2. 열람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li> </ol>	제9조
관계 기관 협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li> <li>2.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li> <li>3.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이견 없이 협의한 것으로 봄</li> </ol>	제10조
통합조정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 통합조정회의를 개최</li> </ul>	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li> </ul>	제12조
기술검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권자는 행정절차를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함</li> </ul>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li> <li>2.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함</li> <li>3.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li> </ul> </li> </ol>	제14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는 산업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봄</li> </ul>	제15조

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li> <li>2. 지정권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li> </ol>	제16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li> <li>2.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함</li> <li>3.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됨</li> <li>4.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li> </ol>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li> <li>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하는 시·군·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함</li> </ol>	제21조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표 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목적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공장의 범위	1.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등	제2조 (영 제2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 이라 함)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와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제2조 (영 제5조)
입주기업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제2조 (영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의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해야 함 2.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성장유망산업의 입지수요,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연계방안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설립 승인 업무</li> <li>-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li> <li>-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li> <li>-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ul> </li> </ul>	제6조의2
산업입지 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산업입지현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조사·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공단에 산업입지 연구센터를 둠</li> </ul>	제7조
공장설립 지원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둠</li> <li>2.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li> <li>3.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li> </ol>	제7조의2
공장설립 등의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li> <li>2.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li> </ol>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li> <li>-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li> <li>-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li> </ul> </li> </ul>	제13조의5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설치 승인	1. 아래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등록된 공장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 2.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거나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조의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함	제15조
공장의 등록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을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함.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제16조
공장의 등록취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공장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17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지식산업센터 포함)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	제20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p>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p> <p>2.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p>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p>•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li> <li>-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li> <li>-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li> <li>-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li> <li>-사업추진체계 및 자원조달방안</li> <li>-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제22조의3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p>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등 공장설립 관련 조항을 준용함</p> <p>2.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함</p>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p>•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li> <li>-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li> <li>-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li> </ul>	제28조의5
산업단지 관리권자 등	<p>1. 관리권자는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li> <li>-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li> <li>-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li> </ul> <p>2. 관리기관은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li> </ul>	제30조
산업단지 관리지침 등	<p>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기준</li> <li>-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li> <li>-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li> </ul>	제32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p>2.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li> <li>-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p>1.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2.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포함)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p> <p>3. 관리기본계획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li> <li>-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li> <li>-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li> <li>-업종별 공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li> <li>-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p>4. 용도별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화 할 수 있음</p>	제33조
산업단지안의 국공유지 매각 및 임대	<p>1.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음</p> <p>2.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가격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가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음</p>	제34조
입주계약 등	<p>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p> <p>2.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입주계약 또</p>	제38조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p>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p>	<p>1.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li> <li>-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li> </ul> <p>2. 관리기관이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p> <p>3.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p>	<p>제39조</p>
<p>산업용지의 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li> </ul>	<p>제41조</p>
<p>입주계약의 해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li> <li>- 입주계약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li> <li>-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li> <li>- 공자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li> <li>-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li> <li>-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li> <li>- 분할된 산업용지(또는 산업용지 공유지분)를 처분한 경우</li> </ul>	<p>제42조</p>
<p>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 계획의 수립</p>	<p>1. 관리권자는 산업단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li> <li>-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li> </ul>	<p>제45조의2</p>

구분	주요내용	관련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입주기업체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2.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경쟁력분석, 발전전략과제</li> <li>- 사업의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법</li> <li>- 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면적, 현황, 경쟁력 분석</li> <li>-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li> <li>-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li> <li>- 자원조달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li> </ul> </li> </ul>	
구조고도화사업 비용부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li> <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li> </ol>	제45조의5
개발이익의 재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li> <li>2. 개발이익은 해당 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함</li> <li>3.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함</li> <li>4.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야 하고, 준공인가일 전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함</li> </ol>	제45조의6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함</li> </ul>	제45조의9

## 6)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표 2-28〉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주요 내용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목적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2.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
적용범위		1.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2.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름	제2조
산업단지개발의 기본방향		1.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3.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4.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	제4조
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건 ①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④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⑤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이나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 ①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제6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p>필요한 경우</p> <p>3.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요건</p> <p>①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③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p>	
검토기준	<p>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 선정</p> <p>①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p> <p>②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p> <p>③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p> <p>④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p> <p>⑤관련계획 및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p> <p>⑥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p> <p>⑦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p> <p>⑧산업 대상지역 내의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호 적용하지 않음. 다만, 개발/실시계획 수립 시 해당 개별공장의 일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계획을 포함함</p> <p>2. 「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 ‘일단의 토지’의 범위 판단 시 고려사항</p> <p>①산업시설과 지원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입주 산업시설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p> <p>②주거시설 계획에 있어 환경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p> <p>③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 및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능보완이 가능할 것</p>	제7조
수요조사 기준	<p>1. 산업단지 개발 시 수요를 고려하여 개발 후 미분양이 최소화 되도록 함</p> <p>2. 수요조사 항목</p> <p>①지역입지 여건</p> <p>②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p> <p>③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p>	제7조의 2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p>④단계별 개발 수요 조사</p> <p>3.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전망 및 입지여건  -경제전망에 기초한 발전목표의 설정  -미래의 총 부지수요 산정  -공급가능 면적의 산정 및 신규수요의 결정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동 내용이 검토된 경우 검토를 대체할 수 있음</p> <p>4. 제3항의 사회·경제적 전망기간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연계를 위해 20년으로 설정, 산업입지 수요전망은 원단위법 적용 가능, 보완하기 위한 직접조사 등의 방법 사용 가능</p>	
토지거래 규제 등	<p>1.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지정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음</p> <p>2. 산업단지 지정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행위허가 제한을 할 수 있음</p>	제10조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p>• 「산업입지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른 지정면적/미분양비율 산정 방식</p> <p>①지정면적: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p> <p>②미분양비율: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  -분양대상면적: 지정면적 중 분양/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  -미분양면적: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임대계약 미체결 면적</p> <p>③미분양비율 산정 대상은 최근 20년 내에 지정된 산업단지(해당년도 포함). 분양공고 후 3개월 미만의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는 해당 부분)는 제외</p>	제11조
산업단지의 개발	<p>1. 주요내용과 작성요령</p> <p>①토지이용계획에는 배치구상과 그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을 포함, 친환경적 단지로 계획</p> <p>③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반시설계획 사항  -교통시설계획  -용수공급계획  -공원녹지계획  -폐기물처리시설계획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p> <p>④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시설계획 사항  -공공지원시설</p>	제13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지원시설</li> <li>-후생복지시설계획(여성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계획 반드시 검토하여 공급)</li> <li>-물류시설설치계획</li> <li>⑤주거시설용지에는 주택·생활편의·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li> <li>⑥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li> <li>⑦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연계하여 시설규모 결정</li> <li>⑨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음</li> </ul> <p>2.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부적인 개발지표와 기준 등에 관한 산업단지개발편람을 작성하여 배포</p> <p>3. 산업단지 위치는 축척 1:25000 지형도에 표시,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 좌표 명기. 다만, 지정면적인 25km<sup>2</sup>인 경우 축척 1:50000 지형도 사용 가능</p> <p>4.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토지이용계획 중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10이상의 면적 변경.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li> <li>-공공시설용지에서 각 용도별 면적 변경</li> <li>-공공시설용지 전체면적 대비 1/10미만의 면적 변경</li> </ul> </li> <li>②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제5호 시설의 규모가 1/2이상 변경되는 경우</li> </ul>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p>1.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p> <p>①규모별 녹지비율</p> <table border="1" data-bbox="444 1223 1086 141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산업단지 규모</th> <th style="width: 50%;">단지면적</th> </tr> </thead> <tbody> <tr> <td>3km<sup>2</sup>이상</td> <td>10/100이상 13/100미만</td> </tr> <tr> <td>1km<sup>2</sup>이상 3km<sup>2</sup>미만</td> <td>7.5/100이상 10/100미만</td> </tr> <tr> <td>1km<sup>2</sup>미만</td> <td>5/100이상 7.5/100미만</td> </tr> </tbody> </table> <p>②공공녹지 최소규모는 500m<sup>2</sup>이상, 단지주변 200m 안에 공공녹지가 있거나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100 범위에서 하향조정 가능. 다음의 경우 2/100 범위에서 추가 하향조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km<sup>2</sup>이상의 산업단지로 특성 및 입지정책상의 필요로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경우</li> <li>-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00m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li> </ul>	산업단지 규모	단지면적	3km <sup>2</sup> 이상	10/100이상 13/100미만	1km <sup>2</sup> 이상 3km <sup>2</sup> 미만	7.5/100이상 10/100미만	1km <sup>2</sup> 미만	5/100이상 7.5/100미만	제14조
산업단지 규모	단지면적									
3km <sup>2</sup> 이상	10/100이상 13/100미만									
1km <sup>2</sup> 이상 3km <sup>2</sup> 미만	7.5/100이상 10/100미만									
1km <sup>2</sup> 미만	5/100이상 7.5/100미만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p>로 확보하는 경우. 단, 추가 하향조정 가능, 녹지면적은 5000㎡ 초과 불가</p> <p>③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규모별 녹지비율의 상향조정이 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과학산업단지 유치 목적으로 단지 지정하는 경우</li> <li>-지형여건상 우량산림 및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경우</li> </ul> <p>④폐기물처리시설부지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籍)으로 보존될 경우 등 지역은 녹지비율에 포함</p> <p>⑤단지 내 공원/녹지로 지정된 부지 내 녹지기능이 아닌 시설이 포함되거나 설치될 경우 기존 녹지비율에서 2/100까지 상향조정 가능</p> <p>⑥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규모별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함. 다만, 협의기관장은 규모별 녹지비율 이상의 녹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 구성 후 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 합동실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동실사단장: 협의기관에서의 산업단지 협의업무 총괄부서장</li> <li>-구성원: (1)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의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관할 시·도, 시·군·구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환경보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직원, (4)관계 전문가 등</li> </ul> <p>⑦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li> <li>-녹지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검토 후 조성</li> </ul> <p>⑧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은 완충녹지를 제외/축소 설치 가능</p> <p>2. 도로확보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44 1309 1093 1458"> <thead> <tr> <th>산업단지 규모</th> <th>단지면적</th> </tr> </thead> <tbody> <tr> <td>1km<sup>2</sup>이상</td> <td>10/100</td> </tr> <tr> <td>1km<sup>2</sup>미만</td> <td>8/100이상</td> </tr> </tbody> </table> <p>①도로면적비율 상향조정이 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부지가 평균 1만㎡이하로 획지 분할된 경우 2/100범위에서 조정 가능</li> </ul> <p>②도로면적비율 하향조정이 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li> <li>-평균 10만㎡ 이상의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계획</li> </ul>	산업단지 규모	단지면적	1km <sup>2</sup> 이상	10/100	1km <sup>2</sup> 미만	8/100이상	
산업단지 규모	단지면적							
1km <sup>2</sup> 이상	10/100							
1km <sup>2</sup> 미만	8/100이상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p>이 불필요한 경우</p> <p>③단지 내 간선도로 폭은 15m이상 확보. 다만, 3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제외</p> <p>④단지 내 도로·보도·자전거도로는 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가능</p> <p>3.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정비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을 수립, 지정권자는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규모별 녹지비율 및 도로면적비율을 각각 2/100범위에서 조정 가능</p> <p>4. 연결도로 확보기준: 지역 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p> <p>5.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p> <p>6.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p> <p>7.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 의무화</p>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p>1. 다수의 기업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표기업을 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음. 대표기업은 신청기업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 신청기업 변경 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함</p> <p>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p> <p>3.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p> <p>4. 개발계획변경 범위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지정변경 시 관보/공보에 고시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p>	제12조
유치업종에 따른 고려사항	<p>•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을 유치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고려</p>	제16조
임대용지의 확보	<p>1. 계획서 작성 시 산업시설용지면적 중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비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전체면적 100만㎡이상인 경우 5/100</li> <li>-수도권 외: 전체면적 100만㎡이상인 경우 2/100</li> </ul> <p>2.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비율 기준 미적용</p> <p>3. 임대용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 경과한 입주기업에게 분양전환 가능</p>	제17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관련조항
	①분양전환 가격범위 -분양전환 시기 사업준공 후 10년 미만: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이하 -분양전환 시기 사업준공 후 10년 이상: 감정평가금액 이하 4.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다만,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 이후 입주기업이 분양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해당 비용 부담 5. 최초 임대공고 후 2년 경과할 때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도 분양전환 가능	
경관보전을 위한 조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제18조
영향평가 등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2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평가서를 작성 가능.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도 같음 3.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제19조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등	1.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는 경우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 「국토계획법」 제8조에 따라 협의/승인을 얻은 경우 동법 제9조에 따른 심의는 생략 3.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20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등	1.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전 해당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 2. 사업시행자는 사전협의/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	제21조

## 제 3 장

---

### 설문조사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



# 제3장 설문조사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및 설계

- 조사대상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연구단지(1지구) 내 76개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함
- 본 설문조사는 지난 2014년 1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덕연구단지내 입주한 기관 협조를 요청한 뒤 전문화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직접면접 형태로 이루어짐
- 76부의 설문지 전부가 회수되어 최종 분석에 활용함

〈표 3-1〉 대전 산업용지 수요조사 설계표

구분	내용
조사명	연구단지 토지수급 현황 및 수요조사
조사대상	연구단지 내 76개 입주기관
유효표본수	76부
조사방법	조사원 방문 면접 설문
조사기준년도	2014.12.
조사기간	2014.12.17. ~ 2014.12.31.

### 2. 조사내용 및 방법

- 본 조사는 연구단지내 토지수급 현황 및 수요 파악을 통한 정책 대안의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향후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공급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조사방법으로는 대덕연구단지내 입지기관을 대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밀도, 개발밀도의 현황 수준에 대한 만족도, 용지확보 현황, 향후 추가적인 용지확보 계획 유무, 추가적으로 용지를 확보하려는 이유, 추가 공급 규모, 추가 용지 확보 방안, 개발밀도 상향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형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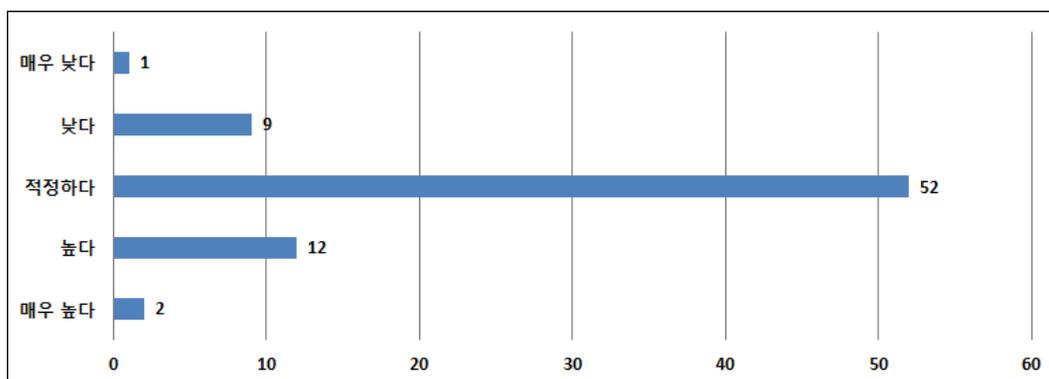
## 제2절 항목별 조사내용 분석

### 1. 개발밀도 관련

#### 1) 대덕연구단지내 개발(토지이용)밀도 수준

-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8.4%를 차지, 이에 반해 높은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8.4%,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답변 비율은 약 13.1%로 나타남

구분	매우 낮다	낮다	적정하다	높다	매우 높다	합계
빈도	1	9	52	12	2	76
(비율%)	(1.3)	(11.8)	(68.4)	(15.8)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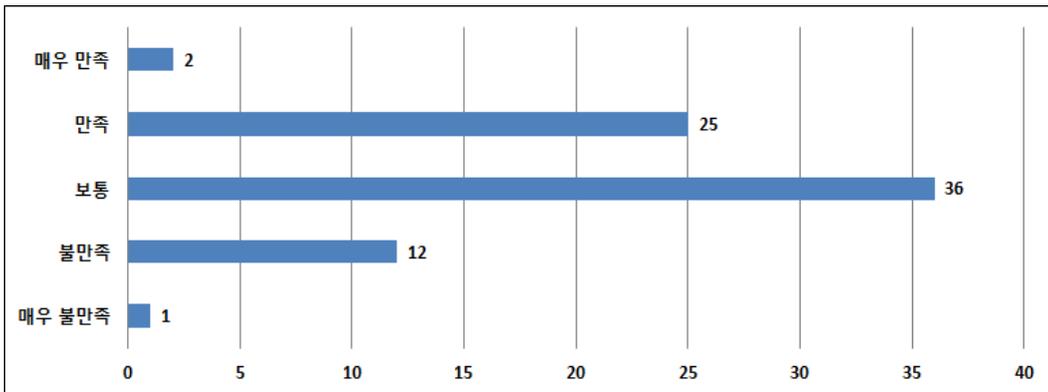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연구소 등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구분		매우 낮다	낮다	적정하다	높다	매우 높다	합계
빈도	정부출연연구기관	—	4	23	4	—	31
	국·공립기관	—	1	4	2	—	7
	공공기관	—	2	10	1	—	13
	민간기업	—	2	—	1	—	3
	민간기업연구소	1	—	14	4	2	21
	대학	—	—	1	—	1	1
	합계	1	9	52	12	2	76

## 2) 개발(토지이용)밀도 현황 수준에 대한 만족도

- 현재 대덕연구단지내 개발밀도의 현황 수준에 대한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7.4%, 불만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1%,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5.5%를 차지함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빈도 (비율%)	2 (2.6)	25 (32.9)	36 (47.4)	12 (15.8)	1 (1.3)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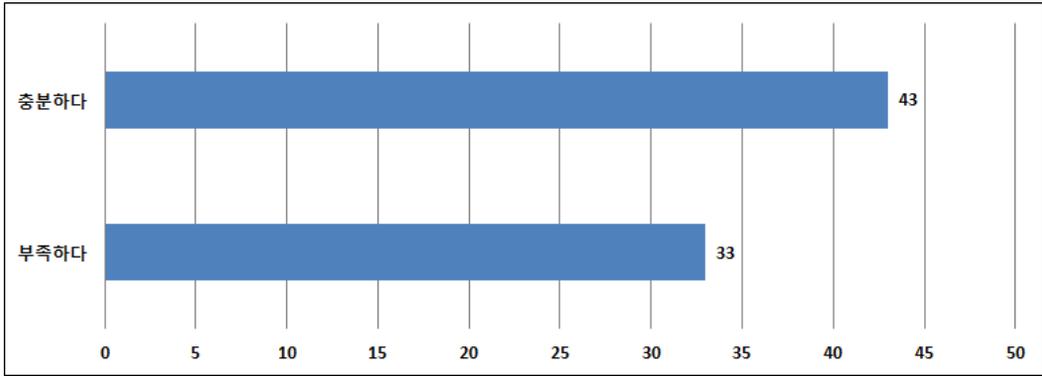


## 2. 용지확보 현황 관련

### 1) 시설물 내지 공간 활용을 위한 용지확보 현황

- 현재의 시설 내지 공간 활용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6.6%,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3.4%로 나타남

구분	충분하다	부족하다	합계
빈도 (비율%)	43 (56.6)	33 (43.4)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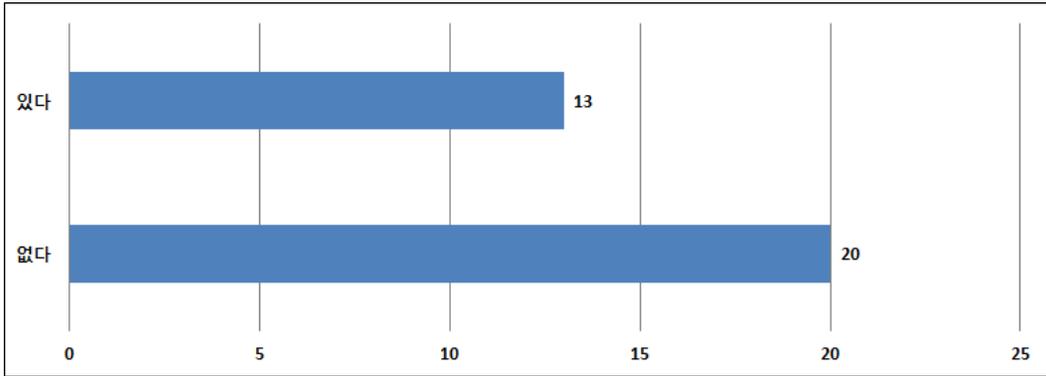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기관은 부족하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연구소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옴

구분		충분하다	부족하다	합계
빈도	정부출연연구기관	14	17	31
	국·공립기관	3	4	7
	공공기관	8	5	13
	민간기업	1	2	3
	민간기업연구소	16	5	21
	대학	1	-	1
	합계	43	33	76

## 2) 추가적인 용지확보 계획 유무

- 추가적 용지확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4%,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약 60.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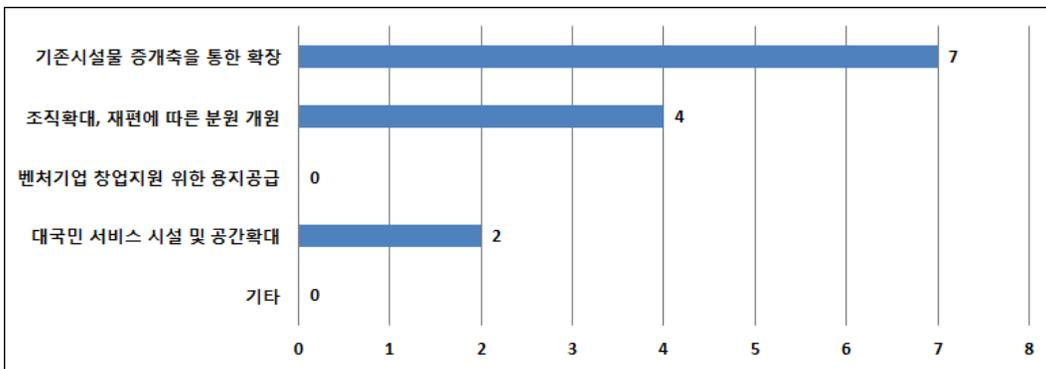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13	20	33 (100.0)
(비율%)	(39.4)	(60.6)	
이동	문 5, 6, 7번으로 이동	문 8번으로 이동	



### 3) 추가적인 용지확보의 주된 이유

- 기존시설물 증개축을 통한 확장이 약 53.8%, 조직확대 및 재편에 따른 분원 개원의 이유가 30.8%, 대국민 서비스 시설 및 공간확대 이유가 15.4%로 나타남

구분	기존시설물 증개축을 통한 확장	조직확대, 재편에 따른 분원 개원	벤처기업 창업지원 위한 용지공급	대국민 서비스 시설 및 공간확대	기타	합계
빈도 (비율%)	7 (53.8)	4 (30.8)	0 (0.0)	2 (15.4)	0 (0.0)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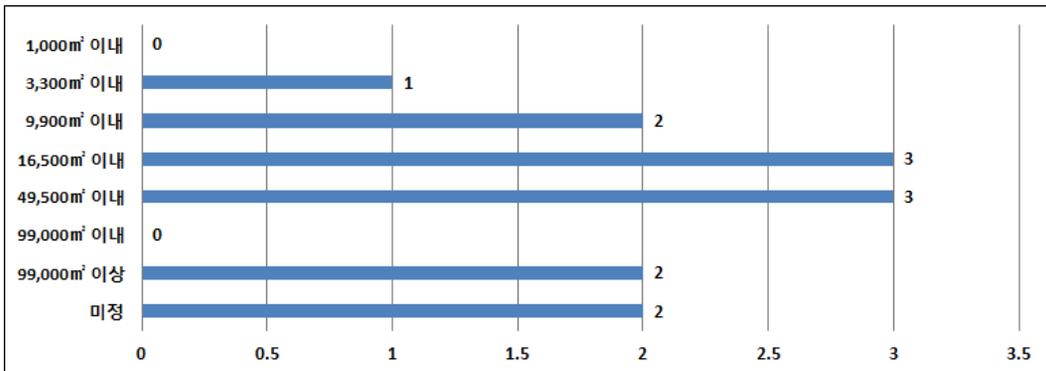
- 창업인큐베이터 역할을 위한 공간 확보 내지 대국민 서비스 시설 및 공간의 확대 필요성 보다는 주로 입주기관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공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분		기존시설물 증개축을 통한 확장	조직확대, 재편에 따른 분원 개원	벤처기업 창업지원 위한 용지공급	대국민 서비스 시설 및 공간확대	기타	합계
빈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3	2	-	1	-	6
	국·공립기관	-	1	-	1	-	2
	공공기관	2	1	-	-	-	3
	민간기업	-	-	-	-	-	0
	민간기업 연구소	2	-	-	-	-	2
	대학	-	-	-	-	-	0
	합계	7	4	-	2	-	13

#### 4) 추가적으로 확보코자 하는 용지의 공급규모

- 5천평~1만5천평 이내로 답변한 기관이 6개소로 가장 빈도가 높고, 3천평 이내는 3곳, 3만평 이상으로 답변한 기관도 2개소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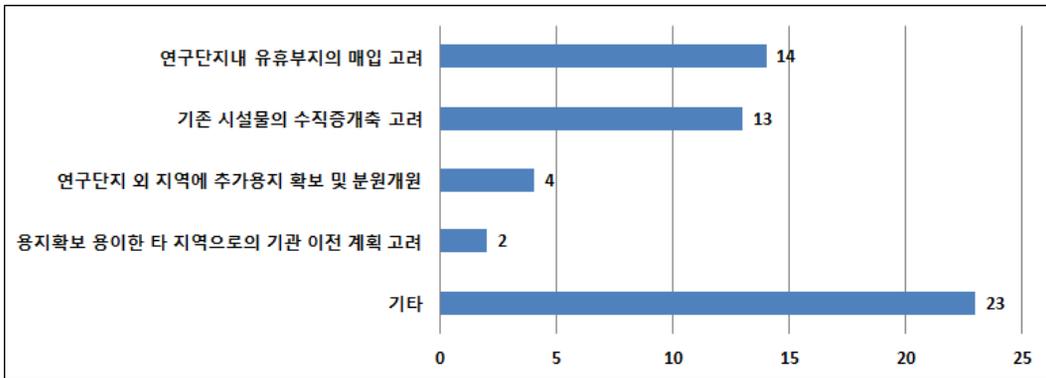
구분	1,000㎡ 이내	3,300㎡ 이내	9,900㎡ 이내	16,500 ㎡이내	49,500 ㎡이내	99,000 ㎡이내	99,000 ㎡이상	미정	합계
빈도 (비율%)	0 (0.0)	1 (7.7)	2 (15.4)	3 (23.1)	3 (23.1)	0 (0.0)	2 (15.4)	2 (15.4)	13 (100.0)



### 5) 추가적 용지확보 방안

- 연구단지내 유희부지의 매입 내지 기존 시설물의 수직증개축 등을 통한 용지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이 약 48.2%를 차지, 그 외 연구단지 외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한다는 답변은 약 10.7%로 나타남

구분	연구단지내 유희부지의 매입 고려	기존 시설물의 수직증개축 고려	연구단지 외 지역에 추가용지 확보 및 분원개원	용지확보 용이한 타 지역으로의 기관 이전 계획 고려	기타	합계
빈도 (비율%)	14 (25.0)	13 (23.2)	4 (7.1)	2 (3.6)	23 (41.1)	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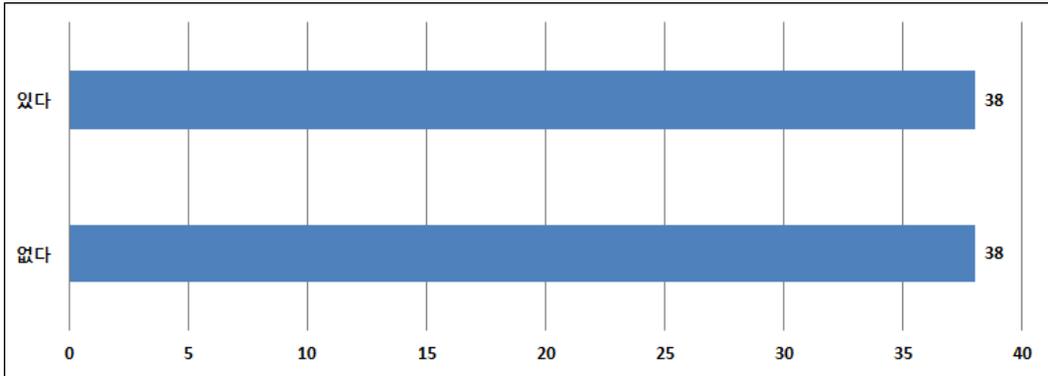


### 3. 개발밀도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

#### 1) 개발밀도의 상향조정 찬반유무

- 대덕연구단지내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및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모두 50.0%로 의견이 분분함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비율%)	38 (50.0)	38 (50.0)	76 (100.0)
이동	문 9번으로 이동	문 10번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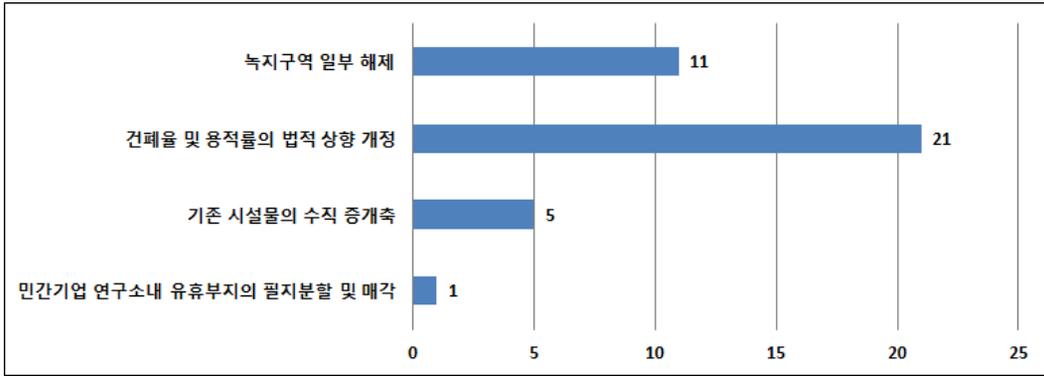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체로 개발밀도 상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그 외 기관들은 상향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빈도	정부출연연구기관	18	13	31
	국·공립기관	3	4	7
	공공기관	6	7	13
	민간기업	2	1	3
	민간기업연구소	8	13	21
	대학	1	-	1
	합계	38	38	76

## 2) 개발밀도 상향 조정 방안

- 개발밀도를 높인다면,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법적 상향 개정 응답이 5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녹지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추가용지 확보 방안이 28.9%, 기존 시설물의 수직 증개축이 13.2%, 민간기업연구소내 유휴부지의 필지분할 및 매각을 통한 방법이 2.6%의 순으로 나타남

구분	녹지구역 일부 해제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법적 상향 개정	기존 시설물의 수직 증개축	민간기업 연구소내 유휴부지의 필지분할 및 매각	합계
빈도 (비율%)	11 (28.9)	21 (55.3)	5 (13.2)	1 (2.6)	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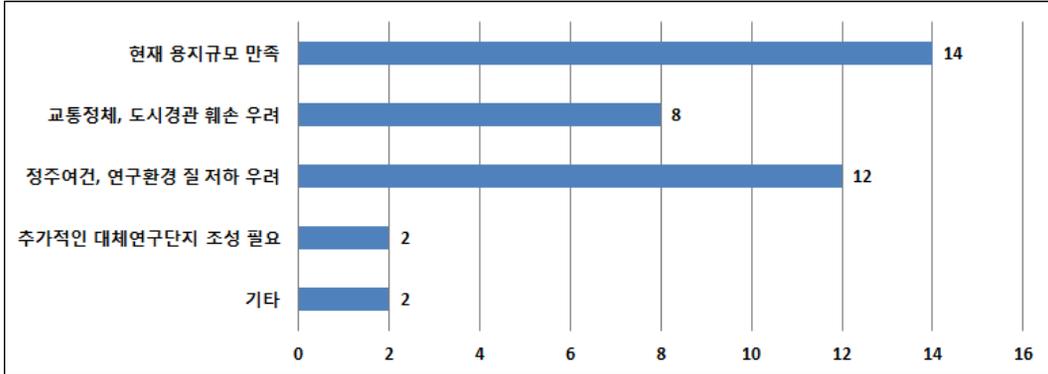
- 민간기업연구소는 건축물 및 용적률의 법적 상향 개정에 절대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은 건축물 및 용적률의 법적 상향 개정 내지 녹지구역 일부해제에, 그리고 민간기업은 기존 시설물의 수직 증개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녹지구역 일부 해제	건축물 및 용적률의 법적 상향 개정	기존 시설물의 수직 증개축	민간기업 연구소내 유휴부지의 필지분할 및 매각	합계
빈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6	9	2	1	18
	국·공립기관	2	-	1	-	3
	공공기관	2	4			6
	민간기업	-	-	2	-	2
	민간기업 연구소	-	8	-	-	8
	대학	1	-	-	-	1
	합계	11	21	5	1	38

## 2) 개발밀도 상향 조정이 불필요한 이유

- 현재 용지구모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8%, 정주여건 및 연구환경의 질 저하 우려 응답이 31.6%, 교통정체 및 도시경관 훼손우려 등이 21.1%를 차지함

구분	현재 용지규모 만족	교통정체, 도시경관 훼손 우려	정주여건, 연구환경 질 저하 우려	추가적인 대체연구단지 조성 필요	기타	합계
빈도 (비율%)	14 (36.8)	8 (21.1)	12 (31.6)	2 (5.3)	2 (5.3)	38 (100.0)



- 개발밀도 상향 조정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는 민간기업연구소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에서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

구분	현재 용지규모 만족	교통정체, 도시경관 훼손 우려	정주여건, 연구환경 질 저하 우려	추가적인 대체연구단지 조성 필요	기타	합계	
빈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5	3	4	1	-	13
	국·공립기관	-	2	2	-	-	4
	공공기관	2	1	2	1	1	7
	민간기업	1	-	-	-	-	1
	민간기업 연구소	6	2	4	-	1	13
	대학	-	-	-	-	-	0
	합계	14	8	12	2	2	38

## 제 4 장

---

### 입지수요 분석

---

제1절 산업입지 수요 사례 분석

제2절 대전시 산업용지 수요 예측

---



## 제4장 입지수요 분석

### 제1절 산업입지 수요 사례 분석

#### 1. 특구내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 현황

- 대덕특구에 대한 수요 및 과학벨트의 수요 예측을 위해 그 동안 4차례의 설문조사가 실시됨
- 연구진흥재단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을 500개 기업으로 한정하여 응답자 특성과 사업장이전 및 신증설 계획, 특구지역 수용도, 특구 입지 여건 및 기업체 일반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500개 기업 중 26개 기업이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난 '13년 9월에 대전지역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과학벨트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체로 약 322개 업체가 이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전시의 조사에서는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종까지를 포괄하여 조사됨
- 비슷한 시기에 LH에서 전국 2,61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결과에서는 약 49개 업체가 과학벨트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미래부와 LH 공동으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총 12,898개 업체 중 약 34개 업체가 과학벨트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 추진된 이들 수요조사의 입주희망기업 및 연구소를 중점대상으로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약 325개의 업체가 대덕특구 내지 과학벨트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들 입주 의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제조업이 79.1%, 도매 및 소매업이 5.5%, 건설업이 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4.9%의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 국한하여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재분류 해보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이 3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20.2%를,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8.2%를, 그리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4.3%의 비율을 보임

〈표 4-1〉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 현황

연번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기업 (회수)	대상기업 선정 방법	입주 희망 기업	설문항목	비고
1	진흥재단 ( ' 12.5)	500 (500)	제조업 중분류별 층화추출 Sample 확보	26	-응답자 특성(직위, 기업위치, 기업규모, 연간매출액, 운영기 간, 산업분야) -사업장이전 및 신증설(신증설 계획여부, 신증설검토이유, 신 증설검토지역, 예상부지면적, 중요고려요인, 중요도) -특구지역수용도(입주의향, 입 주의향이유, 입주예정시기, 필 요부지면적/가격, 입주형태, 기 반시설, 입주비의향이유, 혜택 및시설지원, 주변지역입주의향) -특구입지여건(입지여건번호, 평가사유, 건의사항) -기업체 일반현황(부지건물규 모, 업종)	대덕특구 입주의향
2	대전시 ( ' 13.9)	8,285 (322)	대전지역 소재 기업 (중기청 자료 활용)	322	과학벨트 입주의향	과학벨트 입주의향
3	LH ( ' 13.8)	2,610 (806)	업종별, 지역별 할당에 의한 할당표본 추출	49	-기업일반현황(소재지, 업종, 규모, 입지형태, 연구소보유, 이전계획) -입주의향(입주의향, 입주형태, 희망시기, 규모, 희망가격) -지원사항(지원희망항목, 시설, 희망업종) -주거시설(주거시설 매입의향, 주거규모 등)	“
4	미래부·LH ( ' 14.2)	12,898 (94)	“	34	과학벨트 입주의향	“

〈표 4-2〉 대덕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입주 의향이 있는 제조업체 현황

제조업 분류	업체수	비율(%)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7	37.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2	2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1	8.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	4.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	3.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	3.9
전기장비 제조업	10	3.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	3.5
식료품 제조업	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1.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1.9
1차 금속 제조업	5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0.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0.8
기타 제품 제조업	2	0.8
음료 제조업	1	0.4
섬유제품 제조업	1	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0.4
<b>합계</b>	<b>257</b>	<b>100.0</b>

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지식경제부, 2012)에서는 특히 과학벨트 내 주요유치업종을 의료용물질(KSIC 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KSIC 2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KSIC 26), 전기장비(KSIC 28), 의료정밀광학기기(KSIC 27), 기계 및 장비제조업(KSIC 29), 기타 과학기술연구소, 연구개발전문기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으로 선정

- 이전 희망기업이 필요로 하는 총 면적은 약 37만평으로 추산됨
- 이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약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제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총 면적은 약 28만평으로 추정되었으며, 업체당 평균 면적은 약 1,094평인 것으로 집계됨

〈표 4-3〉 주요 업종별 필요면적 현황

업종	업체수	필요면적 (평)	평균희망면적 (평)
건설업	17	38,767	2,280
농업, 임업 및 어업	1	2,000	2,000
도매 및 소매업	18	19,196	1,066
운수업	1	5,009	5,00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	10,897	681
제조업	257	287,405	1,1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10,157	7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	200	200
<b>합계</b>	<b>325</b>	<b>373,631</b>	<b>1,150</b>

## 2.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변경) 상의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은 2013년 11월 기준으로 대전시 공장등록 된 2,313개 업체 중 5인 이상 기업체 1,2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2014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대전광역시 공장등록 기업의 대표자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뒤 전문화된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실시하는 직접면접 조사 형태를 취함
- 일부 기업연구소와 공장, 기업본사가 중복되거나 원거리로 공장접근이 어려운 원격지 기업을 제외하고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78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최종 분석에 활용됨
- 분석하고자 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4〉 설문조사내용

대상	영역	세부내용
공장 등록 기업	기업분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명, 주소, 경영자 연령, 설립년도, 사업개시년도</li> <li>○ 설립지역, 주 생산품, 소재지</li> <li>○ 업종</li> <li>-산업표준분류에 따라 제조업 중분류로 구분</li> </ul>

대상	영역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4년간의 매출액 및 종업원 수, 공급·판매처별 매출액 비중</li> <li>○현소재지 공장의 종업원 출신지</li> </ul>
	입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부지 및 건축면적</li> <li>○공장용지 지가</li> <li>○임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지, 건물 소유, 임차 여부</li> </ul> </li> <li>○입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입지와 개별입지</li> </ul> </li> <li>○개별입지 선택 이유</li> <li>○산업용지 수요, 수요의 감소의 이유, 수요 증가의 이유</li> <li>○대전 입지결정시 가장 중요했던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잠재력, 관련 국내기업 소재지와 근접성, 항만, 공항, 도로 등 SOC시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안정된 노사환경 및 인력 수급 용이성, 낮은 생산비용, 기술확보 용이성, 부지매매에 따른 자본이득, 창업자의 고향, 기타 등으로 구분</li> </ul> </li> </ul>
	입지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 계획, 이전희망시기, 이전희망장소, 이전 희망지역, 이전 희망이유</li> <li>○공단입지희망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지가격, 회사의 땅 소유, 공장설립 등 각 중 절차 용이, 관련 기업과의 연계, 개별입지 부족, 종업원 충원, 교통여건, 입주시기, 기업지원혜택, 기타</li> </ul> </li> <li>○개별입지희망 이유</li> <li>○이전시 부담가능 비용</li> <li>○부지면적 확장 및 축소 계획</li> <li>○확장시 규모</li> <li>○축소시 규모</li> <li>○축소/확장 이유</li> </ul>
	정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한 정책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용지구입비의 용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에 있어서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보다 개별공장이 공장용지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입지 조건이 좋으며, 값싼 산업단지의 공급 확대, 해외산단 또는 해외공장용지 개발, 기타로 구분</li> </ul> </li> <li>○대전시에 산업용지가 필요한 이유</li> <li>○필요 산업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소규모 전용산업단지, 도시형 산업단지, 기타로 구분</li> </ul> </li> <li>○적정용지가격</li> </ul>

○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은 전자부품이 16.3%로 가장 많고, 기타제품이 15.9%, 기계업종이 15.1%를 차지함

〈표 4-5〉 설문 응답 업체의 업종별 현황

구분	업체수	%	구분	업체수	%
식료품	30	3.9	고무제품	27	3.5
음료	4	0.5	비금속광물	21	2.7
담배	1	0.1	1차 금속	23	3.0
섬유제품	13	1.7	금속가공	68	8.9
의복	9	1.2	전자부품	125	16.3
가죽	2	0.3	의료정밀	38	5.0
목재	10	1.3	전기장비	52	6.8
펄프	18	2.3	기계	116	15.1
인쇄	6	0.8	자동차	8	1.0
코크스	2	0.3	운송장비	9	1.2
화학물질	51	6.6	가구	1	0.1
의료용물질	11	1.4	기타제품	122	15.9

- 평균 공장부지면적은 12,481㎡, 건축면적은 3,352㎡로 나타났으며, 평균지가는 ㎡당 71.8만원(평당 237만원)으로 나타남
-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3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부의 용자지원이 28.4%를, 그리고 절차간소화가 21.1%의 순으로 나타남

〈표 4-6〉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구분	업체수	%
①기반시설 정부지원	78	9.9
②용자 정부지원	224	28.4
③절차 간소화	166	21.1
④규제완화	73	9.3
⑤산업단지 공급 확대	237	30.1
⑥해외 신단 및 용지 개발	7	0.9
⑦기타	3	0.4

- 5인 이상 종사자 780개 응답 제조업체 중 136개 업체가 향후 이전 및 확장을 통한 추가 부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 2020년까지 추가소요 필요 부지 면적은 최소 199㎡에서 최대 56,728㎡까지 평균 약

7,529㎡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 136개 업체가 이전계획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지면적의 합계는 약 545,362㎡(165,261 평)인 것으로 집계됨
- 필요한 산업용지는 도시형 산업단지(7.1%)보다는 대규모 일반산업단지(46.2%)내지 소규모 전용산업단지(44.8%)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용지 가격은 ㎡당 55.4만원(평당 183만원)으로 나타남

〈표 4-7〉 필요한 산업용지 유형

구분	업체수	%
①대규모 일반산업단지	364	46.2
②소규모 전용산업단지	353	44.8
③도시형 산업단지	56	7.1
④기타	15	1.9

-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 면적은 최소 이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체 설문에 의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수요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참고 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표 4-8〉 설문결과에 의한 추가 부지면적 수요량

구분	샘플수	최저	최고	합계	평균
합계 (㎡)	136	199.173554	56,728.0992	545,361.934	7,529

〈표 4-9〉 추가부지면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체의 이전 희망 시기

이전 희망 시기	개수
1년 이내	32
1~3년 이내	77
3~5년 이내	39
5~7년 이내	12
7~9년 이내	1
9년 이후	2
합계	163

## 제2절 대전시 산업용지 수요 예측

### 1. 2030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 추정

-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 소요면적은 일반산업의 공업용지와 첨단산업용지로 구분하여 산정함
- 일반산업의 공업용지 수요는 지난 10년간 대전의 산업체 생산액변화 추세를 바탕으로 2030년 생산액 추정 후 대전 산업부문별 공업용지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함
- 첨단산업용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의 산업용지 수요를 반영함

#### 1) 일반산업의 공업용지 수요추정

##### (1) 산업체 생산액 전망

- 2030년 대전시의 산업체 생산액은 65조 2,002억원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2009년 11조 6,423억원에 비해 약 5.6배 증가한 추정치임

〈표 4-10〉 산업체 업종별 생산액 전망

(단위: 백만원 <2009년 불변가격>)

구분	2009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 증감율(%)
음식·담배	1,893,760	3,699,139	6,462,699	11,290,864	19,726,065	11.81
섬유·가죽·신발	175,780	83,468	44,873	24,123	12,969	-11.67
목재·나무	22,642	20,712	19,230	17,855	16,578	-1.47
종이·인쇄	1,150,478	1,379,480	1,604,771	1,866,856	2,171,744	3.07
석유화학	3,307,099	4,886,071	6,764,262	9,364,423	12,964,078	6.72
비금속	208,356	326,119	473,715	688,111	999,542	7.75
제1차 금속	345,834	584,174	904,210	1,399,577	2,166,329	9.13
조립금속·기계	2,416,142	4,123,080	6,436,324	10,047,405	15,684,475	9.32
기타전자및재생	2,122,171	3,435,755	5,133,225	7,669,348	11,458,468	8.36
계	11,642,262	18,537,998	27,843,309	42,368,562	65,200,248	6.96

자료: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p.103 표 재인용

## (2) 산업체 공업용지 원단위 전망

- 2030년 대전시의 공업용지 수요를 전망하기 위한 산업 총생산액과 업종별 용지 원단위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1〉 산업체 업종별 공업용지 원단위 전망

(단위:m<sup>2</sup>/백만원 <2009년 불변가격>, %)

구분	2009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증감율
음식·담배	0.50	0.24	0.14	0.08	0.04	-10.78
섬유·가죽·신발	5.39	2.32	3.38	4.94	7.22	7.87
목재·나무	2.30	2.09	2.05	2.02	1.98	-0.36
종이·인쇄	0.63	0.56	0.52	0.48	0.44	-1.59
석유화학	0.71	0.52	0.40	0.31	0.24	-5.09
비금속	1.57	0.71	0.41	0.23	0.13	-10.59
제1차 금속	0.54	0.32	0.17	0.09	0.05	-10.01
조립금속·기계	0.33	0.24	0.19	0.15	0.12	-4.90
기타전자및재생	0.63	0.71	0.70	0.69	0.67	-0.30
계	0.66	0.45	0.35	0.28	0.23	-5.76

자료: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p.103 표 재인용

## (3) 일반산업의 공업용지 수요추정 결과

- 생산액에 의한 일반산업의 공업용지 소요면적 추정결과 약 20.92km<sup>2</sup>로 예측됨

$$I = \frac{P_1 d_1 r}{1 - e} = \frac{65,200,248 \times 0.2268 \times 0.665}{1 - 0.53} = 20,922,621 \approx 20.92 \text{ km}^2$$

P1 : 목표연도 생산액    d1 : 목표연도 부지원단위  
 r : 공업입지율 (제조업체 공업지역 입지율 : 대전시 제조업체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e : 산업시설 비율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평균 적용)

## 2) 첨단산업용지 수요추정

- 국가정책사업인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의 산업용지 수요 반영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의 도입시설 규모에서 주택용지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 첨단산업용지 수요는 5.71km<sup>2</sup>로 예측됨

〈표 4-12〉 대덕연구개발특구 도입시설 규모 추정

구분	계	산업용지	산업지원시설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면적 (km <sup>2</sup> )	7.63	4.36	0.49	1.92	0.86

자료: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p.104 표 재인용

출처 :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4호)

### 3) 공업용지 소요면적

- 공업용지 소요면적은 일반산업의 공업용지 소요면적(20.92km<sup>2</sup>)과 첨단산업용지 소요면적(5.71km<sup>2</sup>)을 합산한 26.63km<sup>2</sup>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표 4-13〉 공업용지 소요면적

구분	계	일반공업용지	첨단산업용지
면적 (km <sup>2</sup> )	26.63	20.92	5.71

자료: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p.104 표 재인용

### 4)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결과

- 토지수요 예측결과, 주거용지 94.97km<sup>2</sup>, 상업용지 11.11km<sup>2</sup>, 공업용지 26.63km<sup>2</sup>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현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현황과 2030년 소요면적을 비교해 보면, 공업용지의 경우, 14.08km<sup>2</sup>에서 26.63km<sup>2</sup>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년까지 12.55km<sup>2</sup>의 추가 용지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됨

〈표 4-14〉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

(단위 : km<sup>2</sup>, %)

구분	2010년 현재 용도지역 현황		2030년 소요면적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시가화구역	93.20	100.0	132.71	100.0	증) 39.51
주거	70.30	75.4	94.97	71.5	증) 24.67
상업	8.82	9.5	11.11	8.4	증) 2.29
공업	14.08	15.1	26.63	20.1	증) 12.55

자료: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p.104 표 재인용

## 2.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변경) 상의 산업용지 수요추정

### 1) 기존 수요 추정방식을 활용한 예측

- 지난 2009년에 원단위법으로 수립한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보고서 상의 수요 추정량 자료를 토대로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비율을 조정하는 안으로 목표년도 2020년 까지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표 4-15〉 산업용지 추정

(단위 : 십억원, m<sup>2</sup>)

구분	생산액		산업용지		
	2015년	2020년	2015년	2020년	2009년 (기준년)
①업종별 10년 원단위에 의한 생산액 및 산업용지 전망	17,821	25,472	11,024,497	14,250,001	7,659,293 (C)
②제조업 전체 20년 장기 원단위에 의한 생산액 및 산업용지 전망	18,524	27,486	12,040,400	15,392,250	
산업용지 추정 (①+②)/2	18,172.5	26,479	11,532,448.5 (A)	14,821,125.5 (B)	
			3,873,155.5 (A-C)	7,161,832.5 (B-C)	

자료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2009

- 2009년 기준으로 목표연도 2020년까지 필요한 산업시설용지의 총 공급면적은 약 7,161,832.5m<sup>2</sup>임
- 여기에 대전 1, 2산단 재생사업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한 면적 880,000m<sup>2</sup>을 연간 계획입지의 추가 수요면적으로 포함해 보면, 매년 88천m<sup>2</sup>의 추가 공급면적이 필요
- 참고로 대전광역시의 1차 산업시설용지 공급 총량은 2009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추정된 연간 순수요 면적 391천m<sup>2</sup>(7,161,832.5m<sup>2</sup> ÷ 11년(2020년-2009년) × 0.6(계획입지비율) = 390,645m<sup>2</sup>)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추가 연간 계획공급면적 88천m<sup>2</sup>를 합산한 479천m<sup>2</sup>로 지난 2012년에 승인받은 바 있음
- 연간 수요면적은 미래의 산업생산액을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산업용지 면적을 구하는 방식의 원단위법을 적용한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1차 보고서(2009년) 상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함

- 1차 보고서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업종별 10년 원단위에 의한 생산액 기반의 산업용지 전망치와 제조업 전체 20년 장기 원단위에 의한 생산액 기반의 산업용지 전망치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추정함
- 대전시는 기존에 입지유형별 구성비(계획입지 : 개별입지)로 60:40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미 2013년 기준으로 계획입지 비율이 73.3%를 초과한 만큼, 계획입지 대 개별입지 구성비를 90:10으로 조정하여 산정토록 함
- 따라서 2020년까지 필요한 산업시설용지의 총 공급면적은 7,161.8천㎡로 이를 연간 계획입지 순수요 면적으로 환산하면, 586천㎡(7,161,832.5㎡ ÷ 11년(2020년-2009년) × 0.9(계획입지비율) = 585,968.1㎡)임<sup>2)</sup>

〈표 4-16〉 목표년도 2020년 산업입지 총수요 추정

(단위 : 천㎡)

구분	연간 계획입지 총 수요면적(2020년)			연간개별 입지수요	합계 (산업입지 총수요)
	순수요	추가수요 (대전1·2산단 재생)	소계		
대전광역시	586	88	674	65	739

〈표 4-17〉 대전광역시 산업시설용지(계획입지) 연간 순수요면적

(단위 : 천㎡)

구분	연간 산업입지 총수요(2020년)	입지유형별 구성비		입지유형별 순수요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획입지	개별입지
대전광역시	739	90%	10%	674	65

- 여기에 대전 1, 2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추가 연간 계획공급면적 88천㎡를 합산하면, 연간 계획입지 총 수요는 674천㎡(586천㎡+88천㎡)로 추정됨
- 대전시의 현재 산업입지 여건 및 산업입지정책을 고려했을 때, 목표년도 2020년까지 계획입지 비율을 90%로까지 상향시킨다고 가정해 보면, 대전시 소재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연간 순수요면적은 674천㎡가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sup>3)</sup>

2) 2030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에서의 공업용지 추정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뿐 아니라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전부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면적과 개별입지한 공장용지 면적을 전부 포함해서 추정한 면적인데 반해, 대전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변경)상의 산업용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획입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한해 산업용지에 대한 연간 순수요면적을 추정한 결과치 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2) 시나리오 분석에 의한 수요예측

### (1) 원단위의 재추정

- 대전시는 타 지역에 비해 산업기반 인프라 및 규모가 작아 단순히 과거 추세치의 자료만을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4-18〉 시도별 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시도별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
	2006	2008	2010	2012	
전국	859,665,838	1,122,986,011	1,334,833,343	1,511,495,086	9.86
서울	27,004,382	29,705,082	35,822,538	33,121,455	3.46
부산	27,469,962	38,507,452	41,129,258	42,104,517	7.38
대구	18,608,728	20,870,235	24,219,567	27,630,898	6.81
인천	47,523,376	56,989,030	59,652,725	66,385,950	5.73
광주	17,345,637	20,256,660	27,430,976	-	-
<b>대전</b>	<b>8,547,384</b>	<b>11,674,980</b>	<b>13,815,188</b>	<b>15,908,910</b>	<b>10.91</b>
울산	116,433,485	167,155,204	175,413,013	230,270,655	12.04
세종	-	-	-	-	-
경기	199,281,286	229,439,538	291,449,902	320,614,413	8.25
강원	7,204,340	9,073,901	9,822,927	10,863,650	7.09
충북	33,925,153	40,917,037	54,544,634	59,598,951	9.85
충남	83,350,116	113,665,130	158,553,523	183,440,381	14.05
전북	22,596,492	29,077,102	36,552,015	43,145,836	11.38
전남	59,293,631	96,376,223	102,492,715	128,231,158	13.72
경북	101,502,456	129,711,477	158,279,707	162,119,758	8.12
경남	88,980,491	128,771,509	144,645,886	151,274,180	9.25
제주	598,919	795,451	1,008,769	1,184,935	12.04

자료: kosis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013

- 또한 최근에 산업시설용지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대전시를 대상으로 과거추세 연장법이나 시계열 분석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다 잘 반영토록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의 생산액에 근거한
- 3) 이는 대전시의 적정 산업용지 면적으로 2020년까지 4,718천㎡(약 143만평)가 추가적으로 더 공급되어야 함을 의미함

추가적인 산업입지 수요 추정 방식이 필요

- 미래의 제조업 분야 생산액을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산업용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의 원단위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모형 설정을 통해 수정 보완토록 함
- 다음 표는 대전시의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연간 제조업 생산액, 그리고 생산액 십억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m<sup>2</sup>) 원단위를 정리한 것임

〈표 4-19〉 시도별 생산액당 부지면적 원단위 변화 추이

시도별	생산액당(m <sup>2</sup> /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0.66	0.62	0.55	0.57	0.50	0.46	0.46	-5.75
서울	0.16	0.15	0.13	0.12	0.10	0.11	0.11	-6.10
부산	0.64	0.61	0.50	0.55	0.50	0.49	0.52	-3.41
대구	0.72	0.66	0.65	0.69	0.60	0.57	0.57	-3.78
인천	0.43	0.37	0.35	0.39	0.34	0.31	0.31	-5.26
광주	0.71	0.66	0.56	0.55	0.44	0.41	-	-
<b>대전</b>	<b>0.80</b>	<b>0.75</b>	<b>0.64</b>	<b>0.65</b>	<b>0.56</b>	<b>0.52</b>	<b>0.52</b>	<b>-6.86</b>
울산	0.36	0.33	0.26	0.30	0.26	0.21	0.21	-8.95
세종	-	-	-	-	-	-	-	-
경기	0.56	0.57	0.54	0.55	0.45	0.44	0.43	-4.51
강원	2.55	2.10	1.89	1.93	1.86	1.72	1.77	-5.91
충북	1.25	1.18	1.12	1.13	0.94	0.88	0.87	-5.75
충남	0.72	0.67	0.60	0.57	0.51	0.45	0.44	-7.77
전북	1.38	1.30	1.20	1.22	1.05	0.93	0.92	-6.52
전남	0.86	0.76	0.58	0.71	0.61	0.54	0.53	-7.74
경북	0.69	0.66	0.57	0.57	0.50	0.49	0.50	-5.01
경남	0.71	0.65	0.54	0.55	0.53	0.51	0.54	-4.68
제주	3.93	3.46	3.16	2.58	2.62	2.23	2.34	-8.29

자료: 생산액은 kosis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013

부지면적은 팩토리온 자료를 토대로 생산액 1백만원당 부지면적을 m<sup>2</sup>로 표기

- 대전시 부지면적의 평균 증가율은 1.06%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 생산액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7.76%의 증가율을 보임
- 전국 제조업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2006~2012)이 9.86%인 점을 감안하면, 대전시의

최근 제조업 생산액은 전국 평균을 상회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생산액당 부지면적 증가율은 전국 평균(-5.75%)보다 큰 -6.8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산업용지의 생산성 제고와 토지활용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후장대형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대전시 산업구조가 점차 변화해 가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원단위 하향추세는 향후 대전시뿐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생산요소로서 산업용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표 4-20〉 대전시 제조업 생산액당 부지면적 원단위 변화 추이

(단위 : m<sup>2</sup>, 십억원, m<sup>2</sup>/십억원)

구분	부지면적(m <sup>2</sup> )	생산액(십억원)	생산액당(m <sup>2</sup> /십억원)
1992	6,700,221	3,568	1,878
1993	7,692,721	3,771	2,040
1994	7,149,393	4,121	1,735
1995	8,289,680	4,646	1,784
1996	7,955,225	5,181	1,535
1997	7,982,284	5,866	1,361
1998	8,122,324	6,031	1,347
1999	8,165,755	6,207	1,316
2000	8,188,134	7,269	1,126
2001	8,157,385	7,502	1,087
2002	7,356,881	7,675	959
2003	7,820,039	7,928	986
2004	7,702,833	8,921	863
2005	7,572,480	8,654	875
2006	6,807,484	8,547	796
2007	7,120,521	9,511	749
2008	7,508,316	11,675	643

구분		부지면적(m <sup>2</sup> )	생산액(십억원)	생산액당(m <sup>2</sup> /십억원)
2009		7,551,468	11,629	649
2010		7,750,483	13,815	561
2011		7,895,318	15,162	521
2012		8,271,619	15,909	520
증가율	전체	1.06	7.76	-6.22
	06~12 연평균증가율	3.09	10.91	-6.86

자료: 생산액은 kosis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013

부지면적은 2003년이전 자료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자료를, 2004년 이후 자료는 팩토리온 자료를 토대로 생산액 1십억원당 부지면적을 m<sup>2</sup>로 표기

- 그러나 원단위 하향추세가 지속되더라도 생산액당 부지면적은 0값으로 수렴하거나, 음수 값이 도출될 수 없기에 생산액당 전망치는 일종의 지수 내지 로그 곡선, 다항 곡선의 추세곡선을 그리며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3~2020년까지의 생산액당 원단위 값을 예측하기 위해 이들 모형을 적용해 본 결과, 다항모형식이 대전시의 생산액당 원단위 예측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생산액 전망을 위해 1992~2012년까지의 과거 제조업 생산액 자료를 토대로 생산액을 추정해 본 결과, 지수모형이 현재까지의 생산액 증가율 7%대에 가장 근접한 결과치가 도출되었으며, 지수평활법으로는 현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6%대의 예측치가, 그리고 3차다항모형에서는 현재의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9%의 예측치가 도출됨
- 그러므로 생산액당 원단위 예측에서는 현 대전시 산업구조의 틀(첨단업종과 전통업종의 병행 육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 가정 하에 2차다항모형을, 산업구조를 첨단업종 위주의 지식기반산업구조로 재편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3차다항모형식의 적용을 통해 생산액당 부지면적을 추정토록 함
- 또한 생산액 전망은 현 성장률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본성장(7%)과 현재의 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구조(6%)에서의 생산액 전망, 그리고 현재의 성장률보다 높은 고성장구조(9%)를 가정했을 때의 생산액 전망을 도출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추정토록 함

〈표 4-21〉 생산액 예측 및 생산액당 원단위 예측결과

(단위 : m<sup>2</sup>, 십억원, m<sup>2</sup>/십억원)

구분	부지면적 (m <sup>2</sup> )	생산액 (십억원)	생산액당 (m <sup>2</sup> /십억원)	생산액 예측			생산액당 원단위 예측	
				기본성장 (지수모형)	고성장 (3차다항)	저성장 (지수평활)	시나리오1 현산업구조 (2차다항)	시나리오2 첨단산업 위주재편 (3차다항)
1992	6,700,221	3,568	1,878	3,760	3,117	4,120	2,003	2,011
1993	7,692,721	3,771	2,040	4,032	3,833	3,886	1,884	1,887
1994	7,149,393	4,121	1,735	4,323	4,442	3,966	1,769	1,769
1995	8,289,680	4,646	1,784	4,636	4,959	4,309	1,660	1,657
1996	7,955,225	5,181	1,535	4,971	5,402	4,900	1,555	1,551
1997	7,982,284	5,866	1,361	5,330	5,787	5,531	1,455	1,450
1998	8,122,324	6,031	1,347	5,715	6,132	6,307	1,359	1,355
1999	8,165,755	6,207	1,316	6,129	6,454	6,511	1,268	1,264
2000	8,188,134	7,269	1,126	6,572	6,769	6,601	1,182	1,179
2001	8,157,385	7,502	1,087	7,047	7,095	7,670	1,101	1,099
2002	7,356,881	7,675	959	7,556	7,448	8,020	1,024	1,024
2003	7,820,039	7,928	986	8,102	7,847	8,124	952	954
2004	7,702,833	8,921	863	8,688	8,306	8,287	885	888
2005	7,572,480	8,654	875	9,316	8,845	9,306	823	827
2006	6,807,484	8,547	796	9,990	9,479	9,100	765	770
2007	7,120,521	9,511	749	10,712	10,225	8,805	712	717
2008	7,508,316	11,675	643	11,486	11,101	9,730	664	668
2009	7,551,468	11,629	649	12,317	12,124	12,235	621	623
2010	7,750,483	13,815	561	13,207	13,310	12,519	582	582
2011	7,895,318	15,162	521	14,162	14,677	14,716	548	545
2012	8,271,619	15,912	520	15,186	16,241	16,369	519	511
2013	-	-	-	16,284	18,020	17,162	494	480
2014	-	-	-	17,461	20,031	18,321	474	453
2015	-	-	-	18,723	22,290	19,479	459	429
2016	-	-	-	20,077	24,814	20,637	449	408
2017	-	-	-	21,528	27,622	21,796	443	390
2018	-	-	-	23,084	30,728	22,954	442	375
2019	-	-	-	24,753	34,151	24,112	446	362
2020	-	-	-	26,543	37,908	25,271	455	352
증 전체	1.06	7.76	-6.22	7.23	9.33	6.69	-5.16	-6.03

구분	부지면적 (㎡)	생산액 (십억원)	생산액당 (㎡/십억원)	생산액 예측			생산액당 원단위 예측		
				기본성장 (지수모형)	고성장 (3차다항)	저성장 (지수평활)	시나리오1 현산업구조 (2차다항)	시나리오2 첨단산업 위주재편 (3차다항)	
가 을	06~ 12	3.09	10.91	-6.86	-				
	12~ 20	-		7.23	11.18	5.58	-1.63	-4.55	

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각 모형식을 통해 도출된 예측치임

## (2) 시나리오별 가정 및 예측 결과

- 시나리오1은 신규 산단이 원활히 공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전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통산업 업종과 첨단산업 업종이 고르게 상생발전하는 상황을 전제
- 시나리오2는 신규 산단의 공급이 최소한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의 대전시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및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업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을 가정
- 이때 제조업 분야 생산액 성장률 전망은 현재의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하는 안과 저성장 및 고성장을 가정했을 때의 상황을 각각 고려
- 과거 생산액 자료(1992~2012)를 토대로 추세연장기법의 통계적 분석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전체 연평균 증가율(7.76%)을 현재의 성장률로 보고, 최근 6년간의 증가율 추세를 고성장율(10.91%)로 보는 한편, 앞서 수리적 모형을 통해 예측한 산업시설용지의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최저 생산액 증가율(6%대)을 저성장 상황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1 상황에서 생산액에 대한 기본성장률을 가정시 2020년까지 필요한 대전시 산업시설용지는 12,077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
- 한편, 고성장을 가정했을 시에는 17,248천㎡가, 저성장 기조에서는 11,498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이 때 부지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기본성장시 1.7%, 고성장시 3.7%, 저성장시 1.1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시나리오1 상황 하에서 기본성장 및 고성장, 그리고 저성장시 필요 산업시설용지면적에 대한 평균치는 13,608천㎡로 연평균 증가율은 2.2%가 될 것으로 예측됨

〈표 4-22〉 시나리오별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예측치 및 증가율

(단위 : 천㎡)

구분		2012 (기준년도)	2015	2020 (목표년도)	부지면적 증가율	
					'92~2020	'12~2020
시나리오1 (전통=첨단)	기본성장	8,272	8,594	12,077	1.70	5.48
	고성장	8,272	10,231	17,248	3.70	9.36
	저성장	8,272	8,941	11,498	1.19	3.86
	평균	8,272	9,255	13,608	2.20	6.23
시나리오2 (전통<첨단)	기본성장	8,272	8,032	9,343	0.76	2.35
	고성장	8,272	9,562	13,344	2.74	6.12
	저성장	8,272	8,356	8,895	0.25	0.77
	평균	8,272	8,650	10,527	1.25	3.08

- 시나리오2 상황에서 생산액에 대한 기본성장률을 가정시에 2020년까지 필요한 산업시설 용지는 9,343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고성장을 가정시 13,344천㎡, 저성장 시에는 8,895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시나리오2 상황에서 부지면적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기본성장시 0.76%, 고성장시 2.74%, 저성장시 0.2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각 성장률을 고려한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평균치는 10,527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전체 부지면적 증가율은 1.25%가 될 것으로 예측됨

〈표 4-23〉 각 시나리오별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평균 예측치 및 증가율

(단위 : km<sup>2</sup>)

구분	기준년 (2012)	2020년 추정치	순수요 (8년간)	연평균 증가율	연간수요		
					합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시나리오1	8.27	13.61	5.34	6.43	0.67	0.47	0.20
시나리오2	8.27	10.53	2.26	3.07	0.28	0.20	0.08
평균	8.27	12.07	3.80	4.84	0.48	0.34	0.14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나리오1 및 시나리오2 상황에 대한 평균 산업시설용지 예측치는 12.07km<sup>2</sup>인 것으로 예측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4.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12년을 기준으로 향후 8년간 대전시가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순수요 면적은 시나리오1을 가정시 5.34km<sup>2</sup>(13.61 - 8.2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수요면적으로 환산하면, 0.668km<sup>2</su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 중 대전시의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비율이 90 : 10 으로 가정해 보면, 연평균 산업 시설용지에 대한 계획입지 면적은 약 0.601km<sup>2</sup> 가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됨
- 여기에 대전 1, 2산단의 재생면적에 대한 연간공급면적 0.088km<sup>2</sup>를 더하면, 목표년도까지 연간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0.689km<sup>2</sup>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반해, 대규모 산단 조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및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업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2 상황에서는 2.26 km<sup>2</sup> (10.53 - 8.2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수요면적으로 환산하면, 0.283km<sup>2</sup>가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연평균 계획입지 면적은 약 0.255km<sup>2</sup>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 1, 2산단의 연간공급면적 0.088km<sup>2</sup>를 더하면, 목표년도까지 연간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0.342km<sup>2</sup>에 불과하여 지난 2012년 국토부에서 고시한 대전시 연간 공급면적 0.479km<sup>2</sup>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표 4-24〉 목표년도 2020년 산업시설용지 총수요 추정

(단위 : km<sup>2</sup>)

구분	연간 계획입지 총 수요면적(2020년)			연간개별 입지수요	합계 (산업시설용지 총수요)
	순수요	추가수요 (대전1·2산단 재생)	소계		
시나리오1	5.34	0.088	0.689	0.067	0.756
시나리오2	2.26	0.088	0.342	0.028	0.370
평균	3.80	0.088	0.516	0.048	0.564

주: 2012년을 기준년도로 연간 계획입지 비율 산정을 위해 순수요면적/8년×0.9(계획입지 정책목표치) + 추가수요(대전 1, 2산단 연간 재생 공급면적) 산식으로 연간 계획입지 총 수요면적을 추정함

-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로는 약 3.8km<sup>2</sup>(12.07 - 8.27)의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간 수요면적으로는 0.475km<sup>2</sup>의 면적이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여기에 대전시의 산업입지 정책목표치로서 계획입지 비율 90%를 가정해 보면, 연평균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계획입지 면적은 약 0.428km<sup>2</sup>가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며, 대전 1, 2산단의 재생면적 0.088km<sup>2</sup>를 더하면 목표년도까지 연간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0.516km<sup>2</sup>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즉 대전시의 향후 경제여건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에 의한 수요 예측에서는 대전시의 적정 산업시설용지로서 2020년까지 4,512천m<sup>2</sup>(약 136만7천평)의 산업용지가 추가적으로 더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됨



## 제 5 장

---

### 신규 개발 가용지 분석

---

제1절 개발가능지 설정기준

제2절 개발가능지 분석

---



## 제5장 신규 개발 가용지 분석

### 제1절 개발가능지 설정기준

- 개발가능지 분석은 크게 대덕연구개발특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지분석과 연구기관들이 주로 집적되어 있는 1지구(대덕연구단지)에서 추가적으로 용지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목 및 소유 현황과 지가현황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개발입지 제한사항 검토를 통해 추가로 개발 가능한 후보지 등을 검토
- 분석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 토지적성평가(보전대상), 기타 개별법상의 법적 개발 제한 기준 등을 검토
-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여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 기타(그외 협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입지를 분석함
- 가용토지자원에 대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5-1〉 가용토지자원에 대한 분석 기준

구분	항목	비고
기개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li> <li>■ 지구단위계획구역</li> <li>■ 도로구역</li> <li>■ 취락지구 및 기타 기개발지역(주택밀집지역 및 공장용지 등)</li> <li>■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li> </ul>	기개발되어 신규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
개발 억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의한 제한지역</li> <li>■ 자연환경보전지역</li> <li>■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li> <li>■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li> <li>■ 개발제한구역</li> </ul>	관련법령 및 지침의 기준, 관련부서와의 협의 전제

구분	항목	비고
개발 불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고, 경사(경사도 30%이상 지역), 하천(100m내 집수구역)</li> <li>■ 군사시설보호구역</li> <li>■ 생태자연도1등급 및 별도관리지역</li> <li>■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영향평가 1등급 및 2등급 지역</li> <li>■ 상수원보호구역(공장설립제한지역)</li> <li>■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송전탑 및 송전선로(60m 이격) 등</li> </ul>	개발함에 있어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지역 등
개발 가능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개발지역, 개발불능지역 제외 지역</li> <li>■ 협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개발억제지역 및 기타지역</li> </ul>	개발가능한 지역
기타 (그외 협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II 권역:오폐수배출기준 적합시 가능)</li> <li>■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li> <li>■ 개발제한구역(해제총량범위내 3~5등급지역)</li> <li>■ 사방지(국가, 지자체사업시 해제가능)</li> <li>■ 보안림(산림보호구역 : 산단조성시 해제가능)</li> <li>■ 자연휴양림(공공사업으로 해제 가능)</li> <li>■ 접도구역(산단조성시 행위가능)</li> <li>■ 특구내 원형지 등</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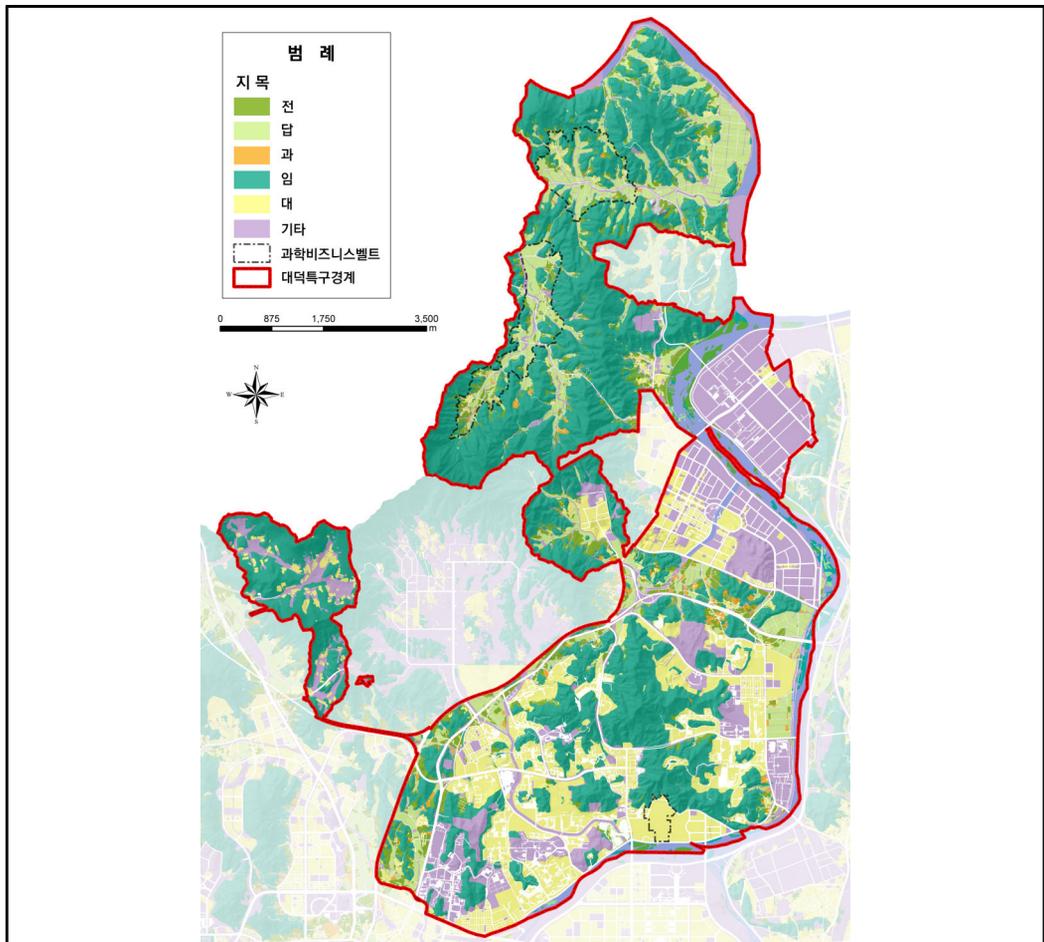
## 제2절 개발가능지 분석

### 1. 토지이용현황

#### 1) 지목 현황

구분	지목현황						
	전	답	과	임	대	기타	합계
면적(m <sup>2</sup> )	3,774,310	5,861,249	410,593	27,547,277	10,676,967	19,287,319	67,557,715
비율(%)	5.6	8.7	0.6	40.8	15.8	28.5	100.0

※지목 및 소유 현황은 지적도 자료를 정리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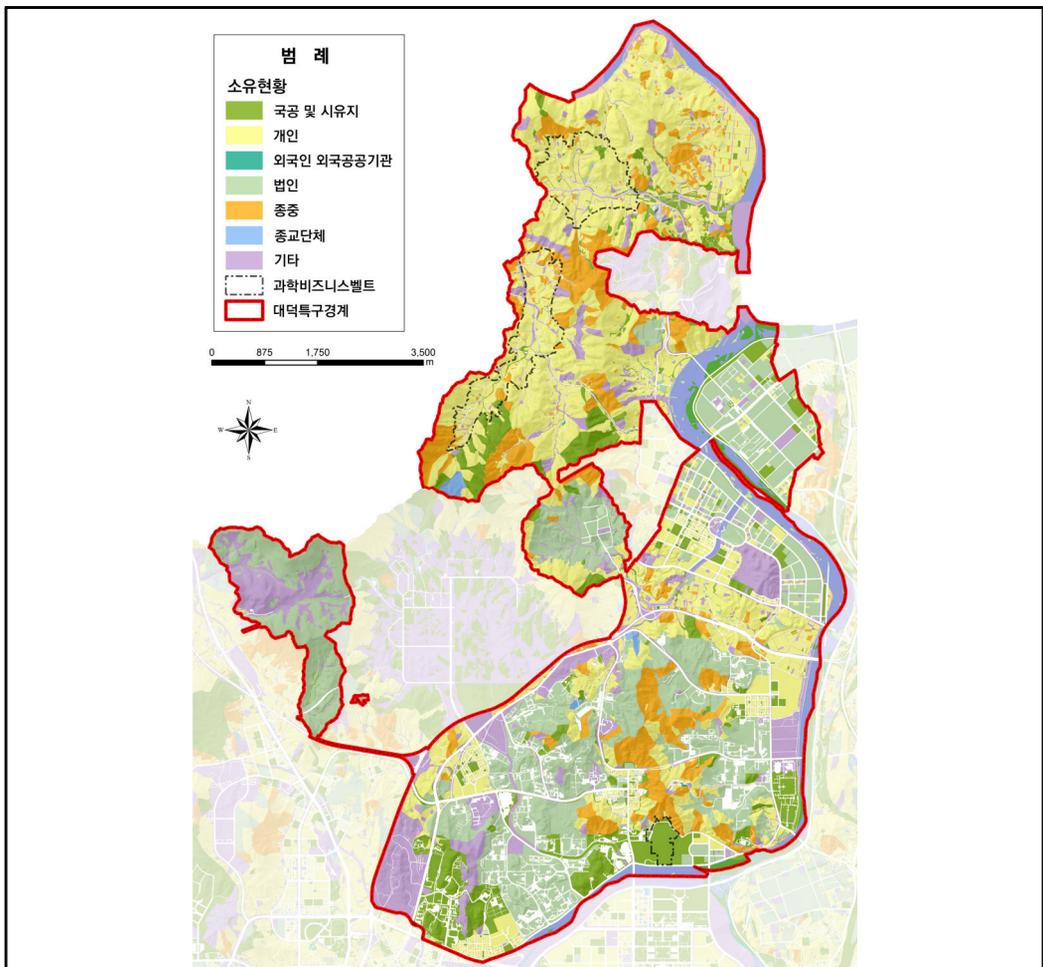


[그림 5-1] 지목현황

## 2) 소유 현황

구분	소유현황							
	국·공 시유지	사유지						합계
		개인	외국인· 외국공공 기관	법인	종중	종교 단체	기타	
면적 (m <sup>2</sup> )	20,929,577	20,417,869	15,935	17,182,300	6,094,394	202,824	2,714,816	67,557,715
비율 (%)	31.0	30.2	0.0	25.4	9.0	0.3	4.0	100.0

※지목 및 소유 현황은 지적도 자료(2014년 기준)를 취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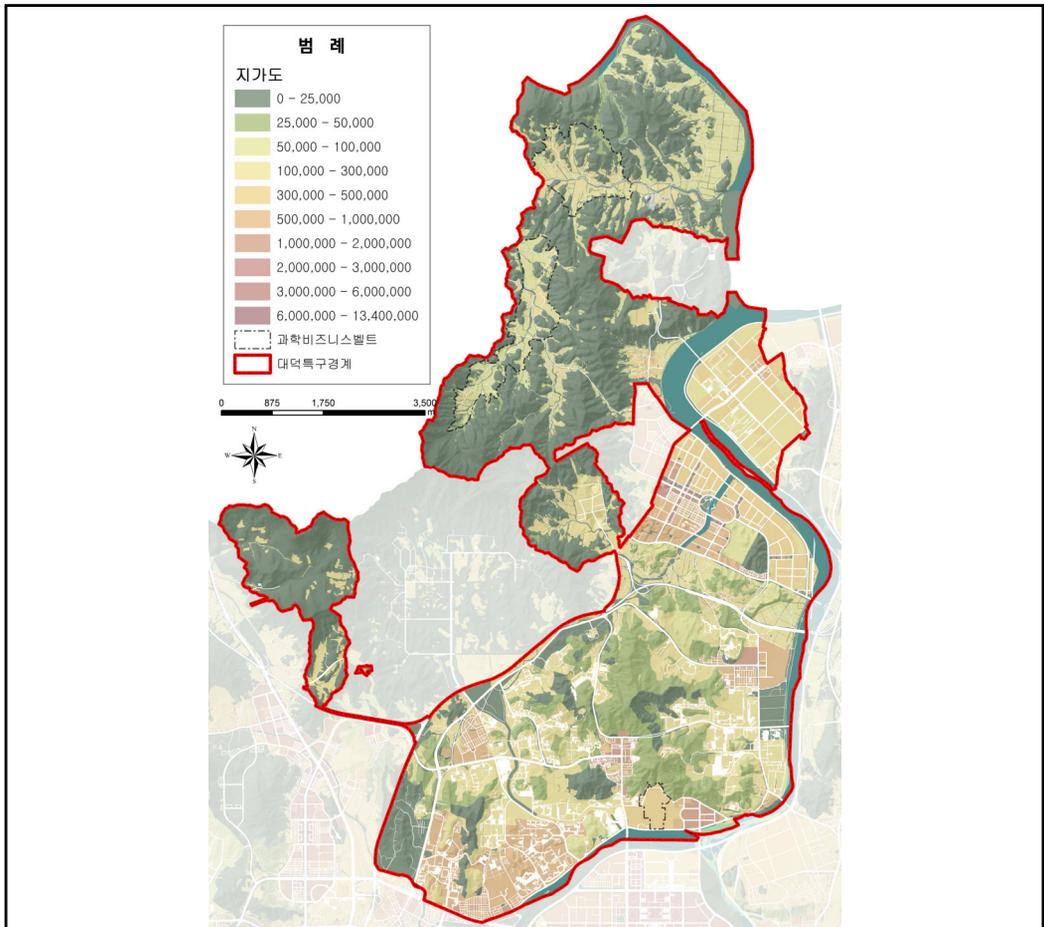


[그림 5-2] 지목별 소유현황

### 3) 지가현황

구분		필지수	면적(㎡)	지가(백만원)	평균공시지가(원/㎡)
지 가 현 황	전	2,606	2,999,282	387,277	129,123
	답	3,290	4,856,012	547,318	112,709
	과	198	342,514	49,877	145,620
	임	2,132	26,233,435	480,030	18,298
	대	4,483	10,335,836	4,691,826	453,938
	기타	2,282	10,121,984	2,921,783	288,657
	국·공·시유지	8,899	12,668,652	-	-
<b>합계</b>		<b>23,890</b>	<b>67,557,715</b>	<b>9,078,111</b>	<b>134,376</b>

※지가현황은 공시지가도 자료(2014년 기준)를 취합 정리, 국공유지 미표기로 지적도상의 지목별 면적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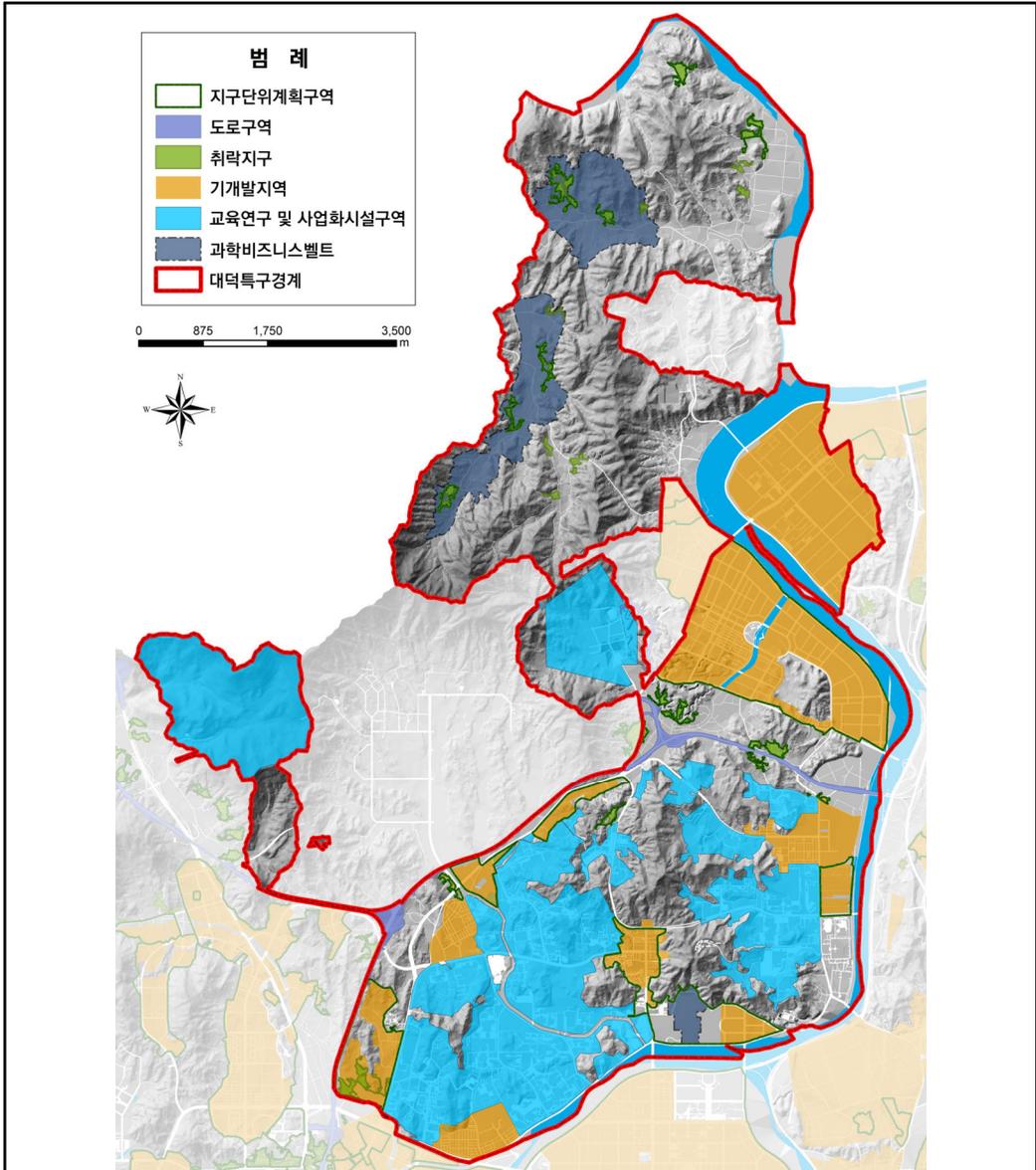


[그림 5-3] 지가현황

## 2. 특구 가용지 분석

### 1) 기개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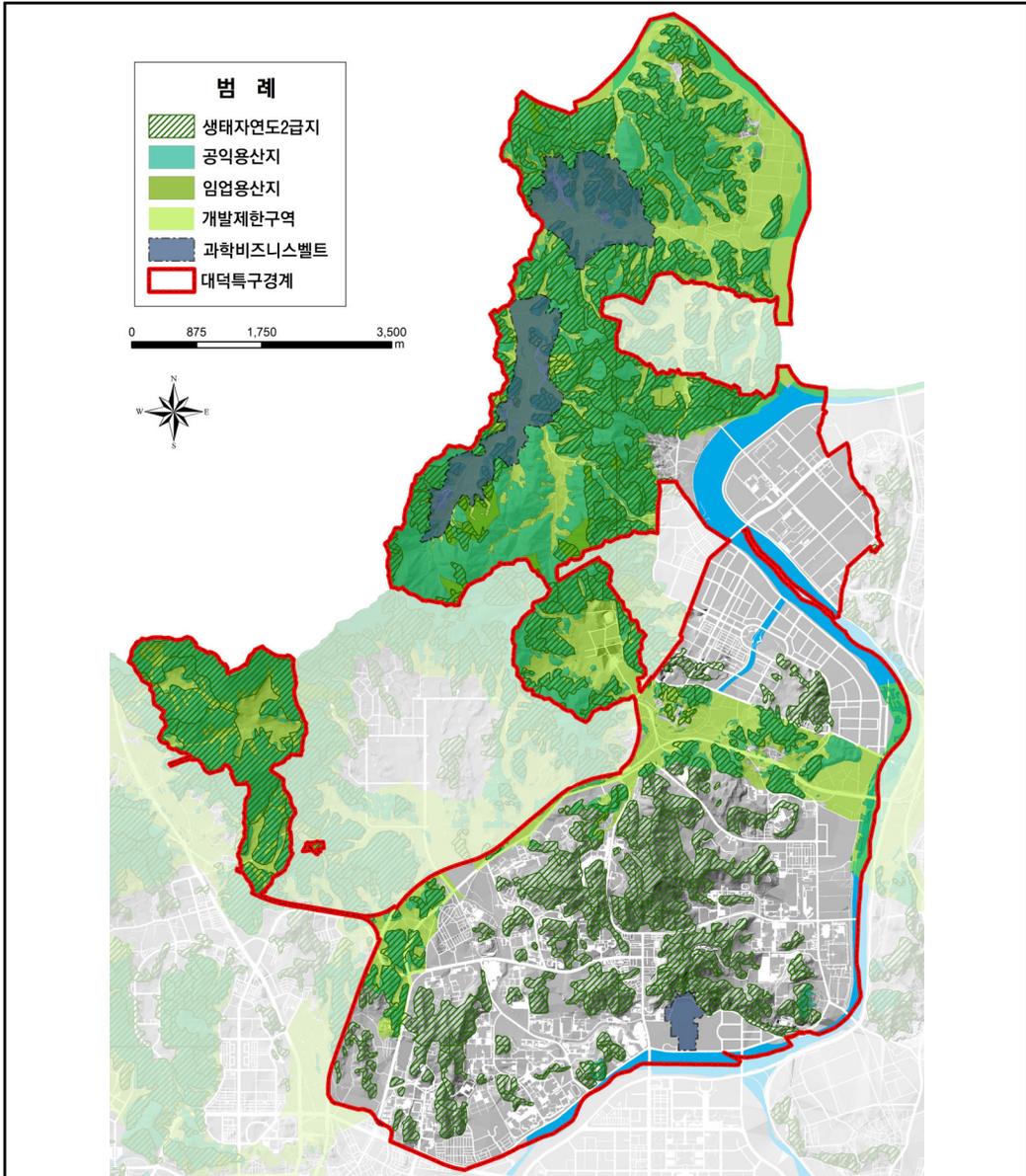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및 기타 기개발지역(주택밀집지역 및 공장용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



[그림 5-4] 기개발지역

## 2) 개발억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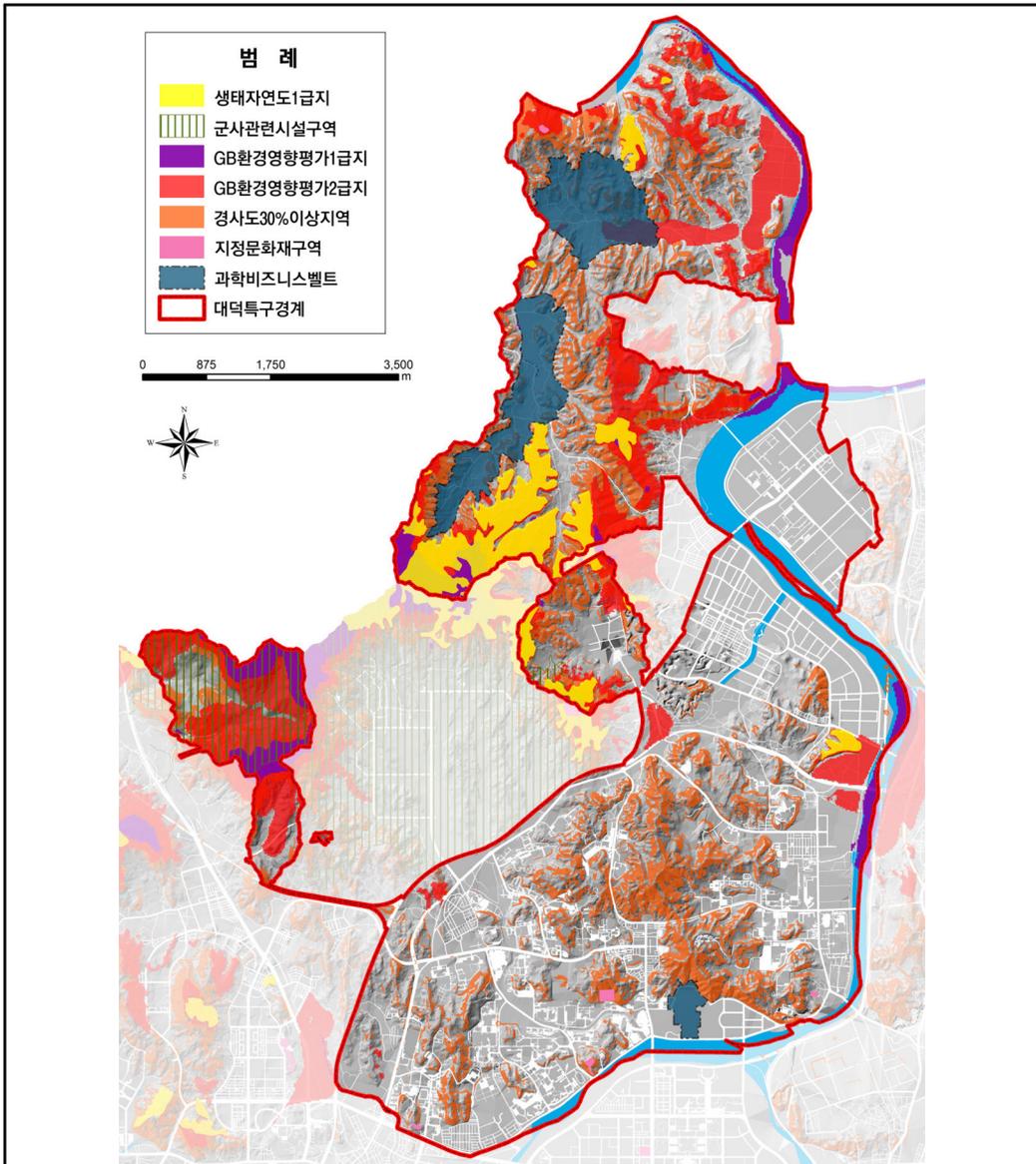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의한 제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임업용), 보전산지(공익용),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그림 5-5] 개발억제지역

### 3) 개발불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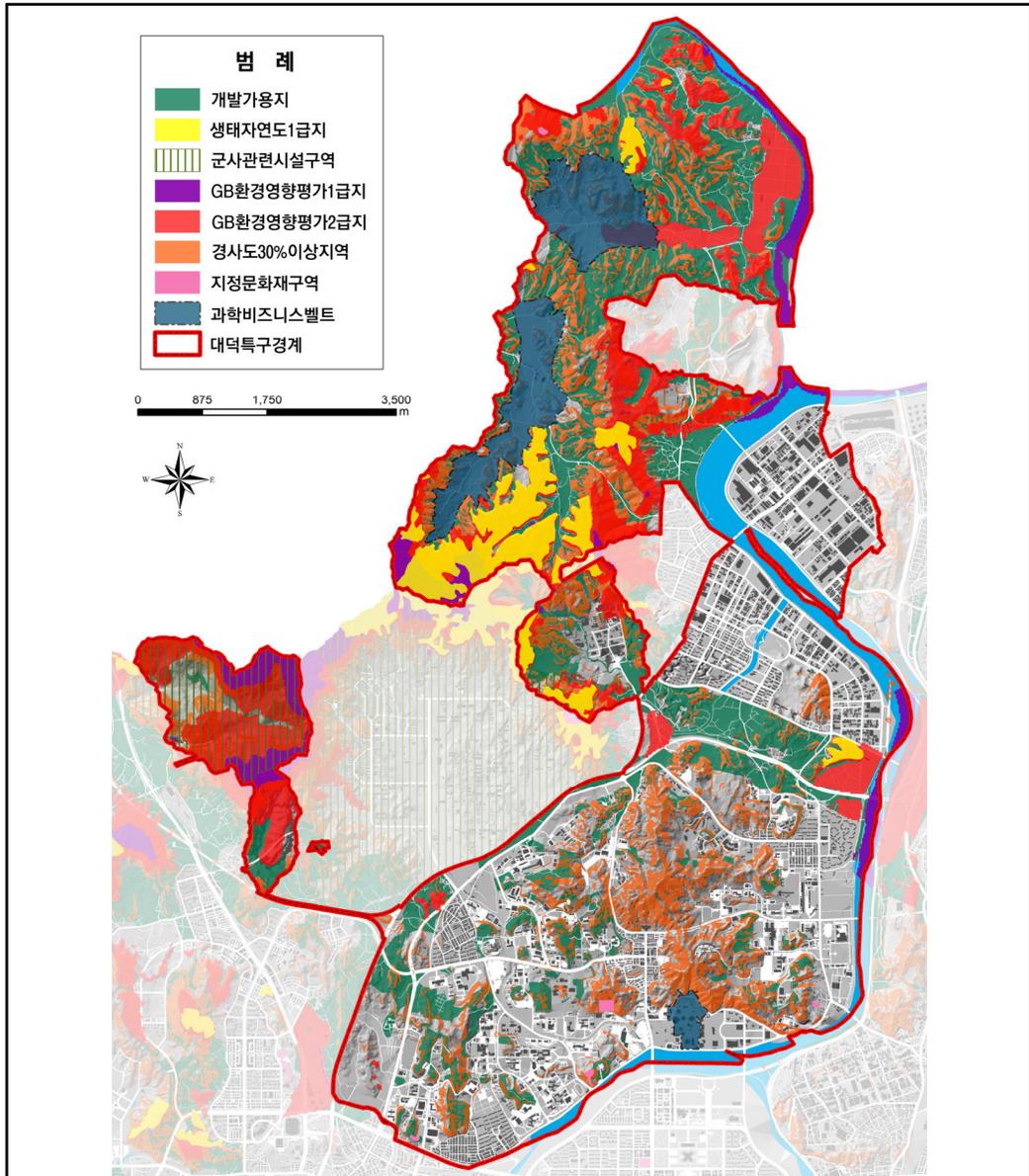
■ 경사(경사도 30%이상 지역, 대전시 개발행위허가기준 준용),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및 별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영향평가 1등급 및 2등급 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장설립제한지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등



[그림 5-6] 개발불능지역

#### 4) 개발가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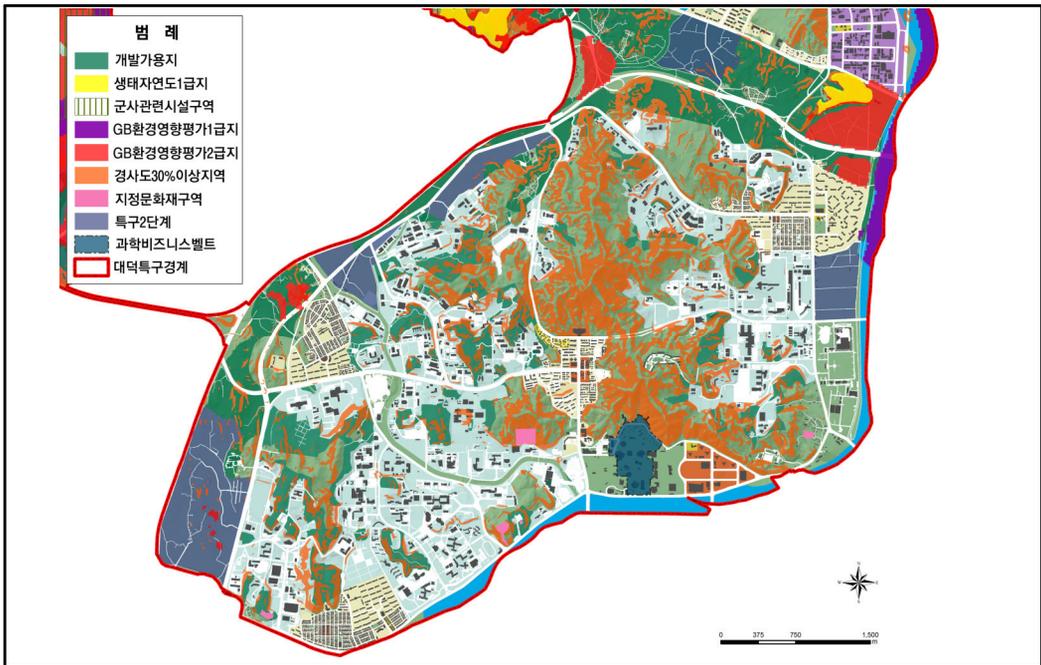
- 기개발지역, 개발불능지역 제외 지역
- 협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개발억제지역 및 기타지역(특구내 원형지 등 포함)



[그림 5-7] 개발가능지역

### 3. 연구단지내 가용지 분석

- 이전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일부 취약지역의 이전 적지를 활용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확대 도모
- 연구단지내 입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형지 중 개발이 가능한 용지에 대한 활용력 증대
- 연구단지(1지구) 주변부의 활용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시설용지 공급 확대 전략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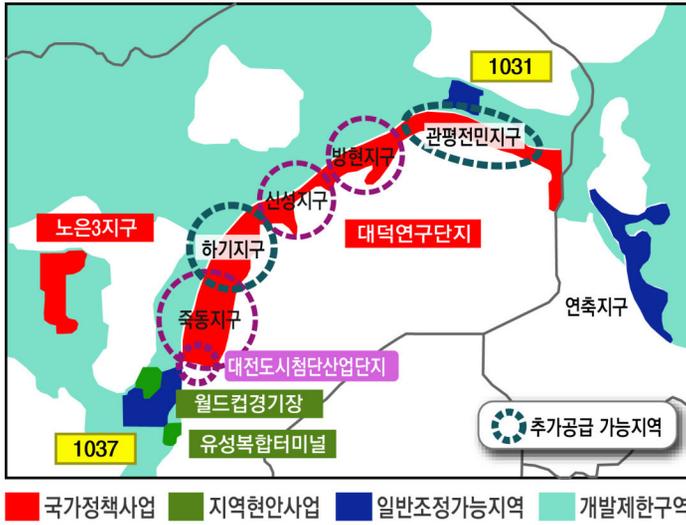


[그림 5-8] 1지구(대덕연구단지)내 개발가능지역

### 4. 연구단지의 토지 이용 고도화 방안

#### 1) GB조정가능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용지 공급

- 지난 2005년에 수립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과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한국토지공사, 2006)” 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해제하여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음
- 비록 현재는 조정가능지역 대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제 방식으로 관리방식이 변경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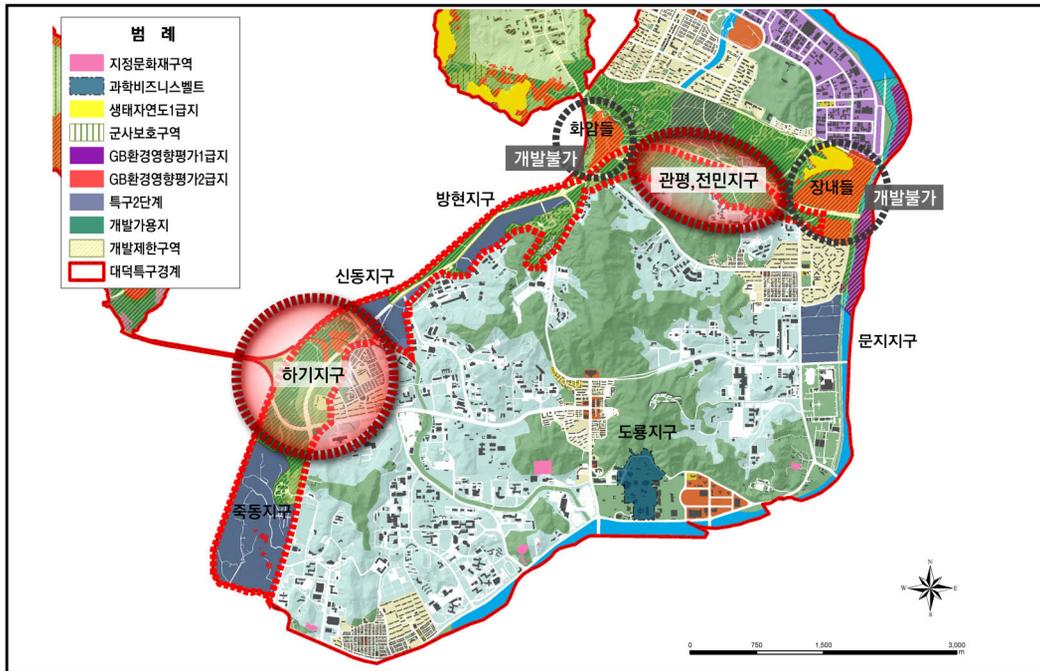


[그림 5-9]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안)(2006)

가능지역이었음

기는 했으나, 조정가능지역은 국가정책사업 내지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음

- 특구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는 죽동, 신성, 방현 지구 등이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조정



[그림 5-10] 연구단지 내 GB 해제를 통한 신규 공급 가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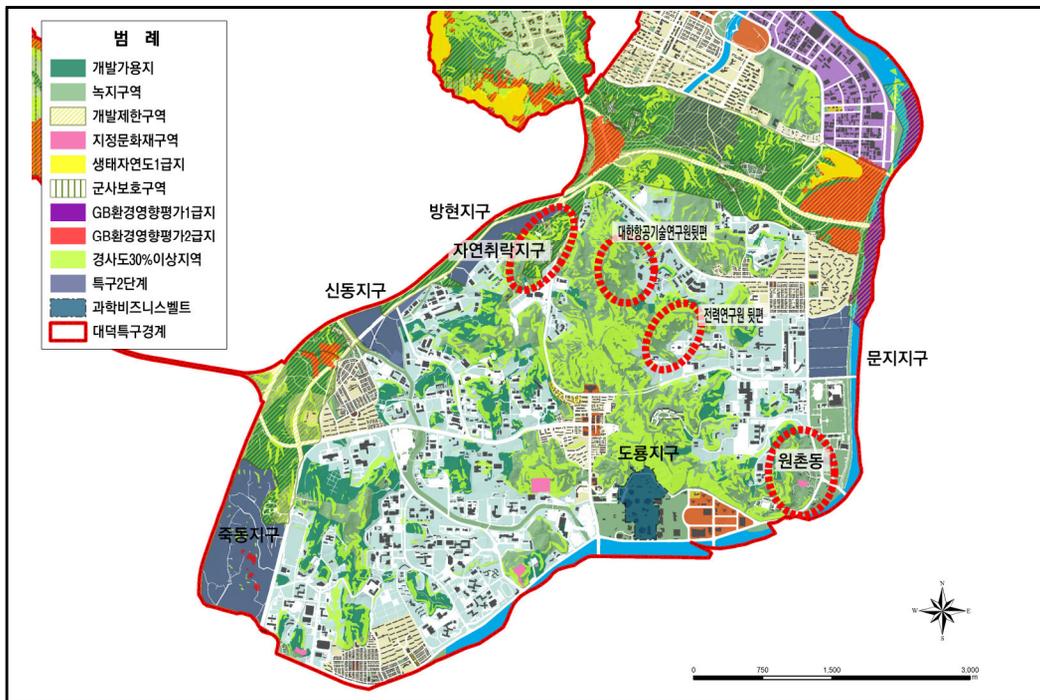
○ 따라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는 연구단지내 개발제한구역

중 하기지구나 관평·전민지구는 추가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들로서 산업시설용지 중심의 산단개발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역들이라 할 수 있음

- 그에 반해, 북대전IC 인근의 화암들이나, 전민동의 장내들은 개발제한구역 2등급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사실상 어려워 산업용지 개발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2) 녹지구역 변경을 통한 신규 용지 공급

-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 변경을 통해 신규 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화암동 자연취락지구 및 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전 조정가능지역에 해당)으로서 취락지구의 해제와 이전을 통해 산업용지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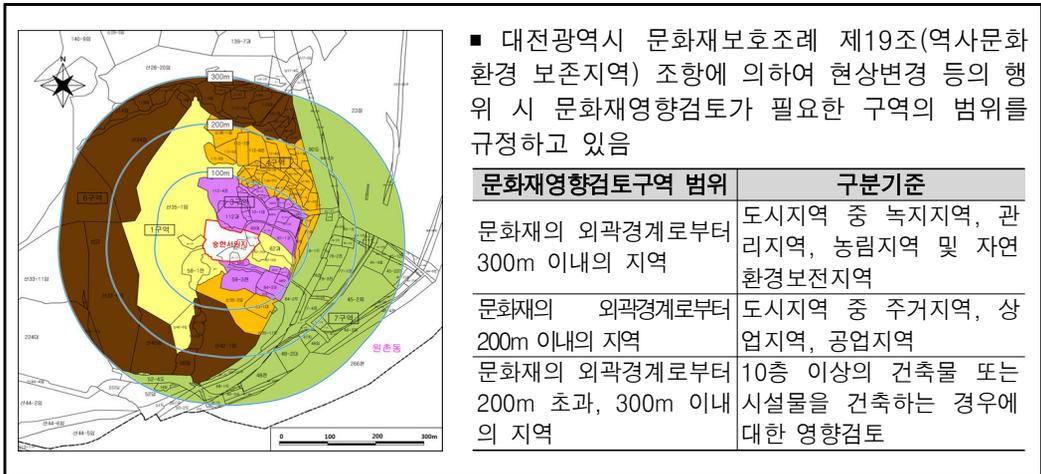


[그림 5-11]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 해제를 통한 신규 공급 가능지역

- 그 외에도 대한항공기술연구원 뒤편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뒤편의 비교적 넓은 구릉성 산지 등이 녹지구역의 변경을 통해 신규 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됨
- 이들 지역은 토지소유주가 일부 법인이 포함된 가운데, 대부분 종종 및 개인소유지들로

서 토지수용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리라 봄

- 원촌 삼거리 좌측의 집단취락지역 일대도 대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현 승현서원지의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승현서원지는 현재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는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승현서원지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분한 완충녹지 내지 경관녹지를 지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북측 및 남측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12] 승현서원지 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 지정 현황

<표 5-2> 승현서원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7호 승현서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69번길67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허 용 기 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불가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7구역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 연면적 증가는 1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 한다.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축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문화재위원회에서 개별심의 한다.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실시한다.	

###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원형지 활용방안

- 연구단지내 원형지는 대부분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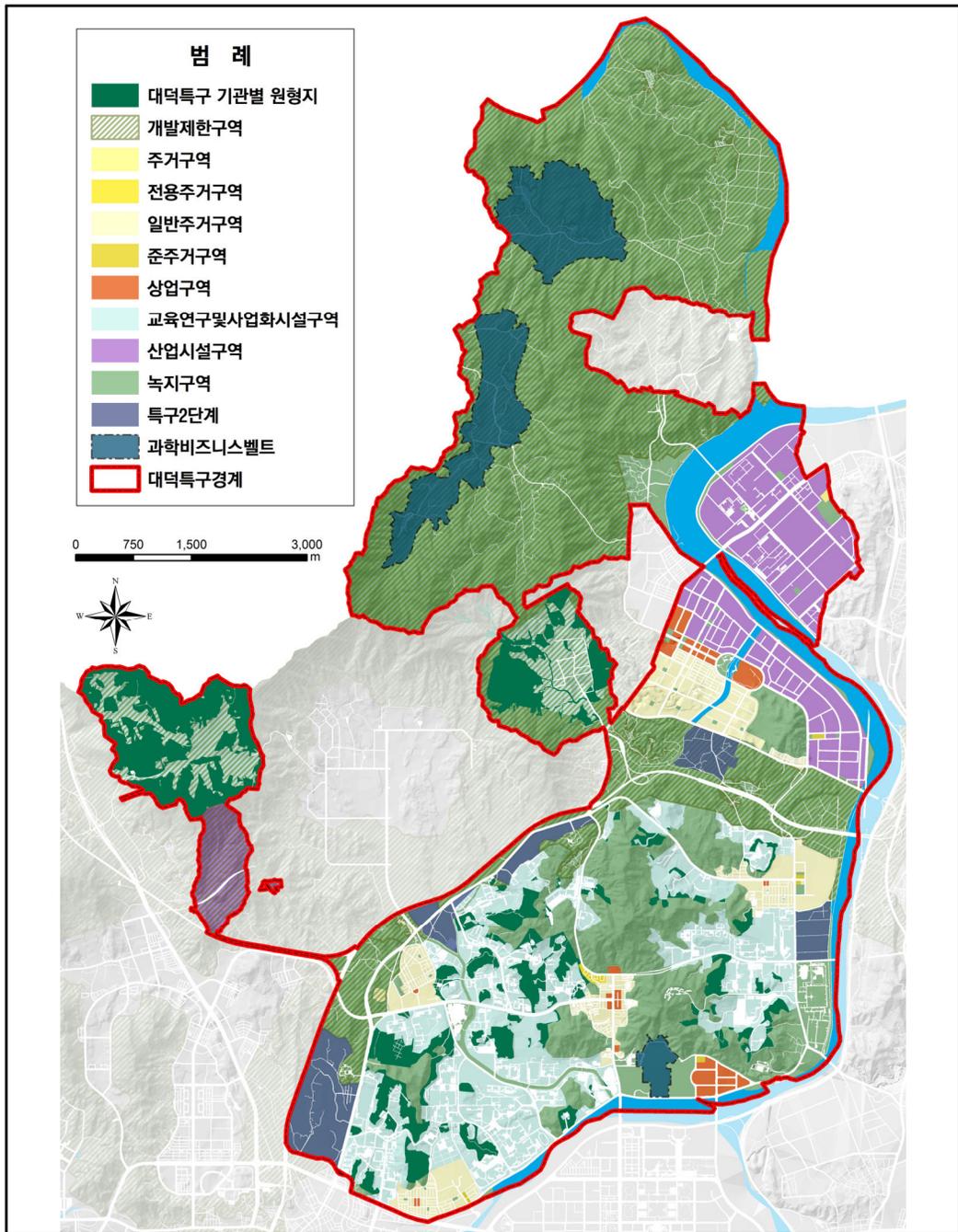
〈표 5-3〉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원형지 현황

(단위 :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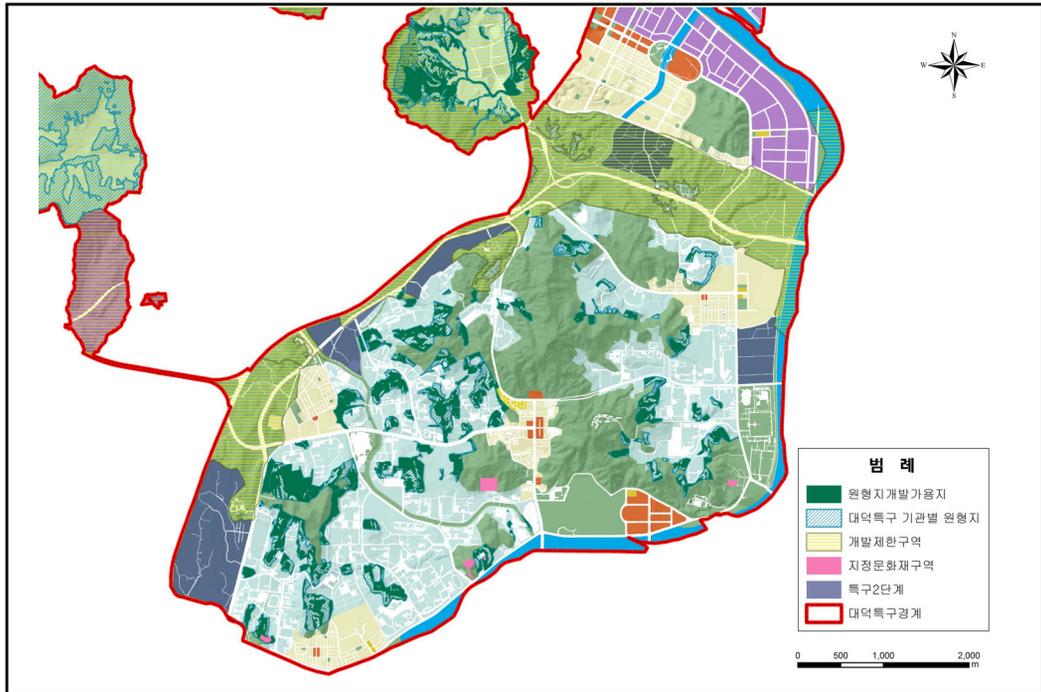
구분	대덕연구단지 내 원형지			대덕연구단지 외 원형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합계
	녹지구역	교육연구사업화시설구역	소계	녹지구역	교육연구사업화시설구역	소계		
면적 (m <sup>2</sup> )	2,324.6	2,381,422.9	2,383,747.4	339,200.6	2,690,817.7	3,030,018.3	89,172.1	5,502,937.7

\*2014년 연속지적도를 이용하여 추출한 자료로, 2013년 6월 기준의 원형지 현황(5,366,560.96m<sup>2</sup>)과 차이가 있음

- 대덕연구단지 내 원형지는 약 2.38km<sup>2</sup>(약 72만평)으로 이중 2,324.6m<sup>2</sup>(0.1%)는 녹지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381.442.9m<sup>2</sup>(99.9%)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연구단지(1지구) 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원형지는 약 3.03km<sup>2</sup>(약 92만평)으로 대부분이 국방과학연구소 부지 내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입지하고 있어 토지 활용적 측면에서는 제약사항이 큼



[그림 5-13] 특구 내 원형지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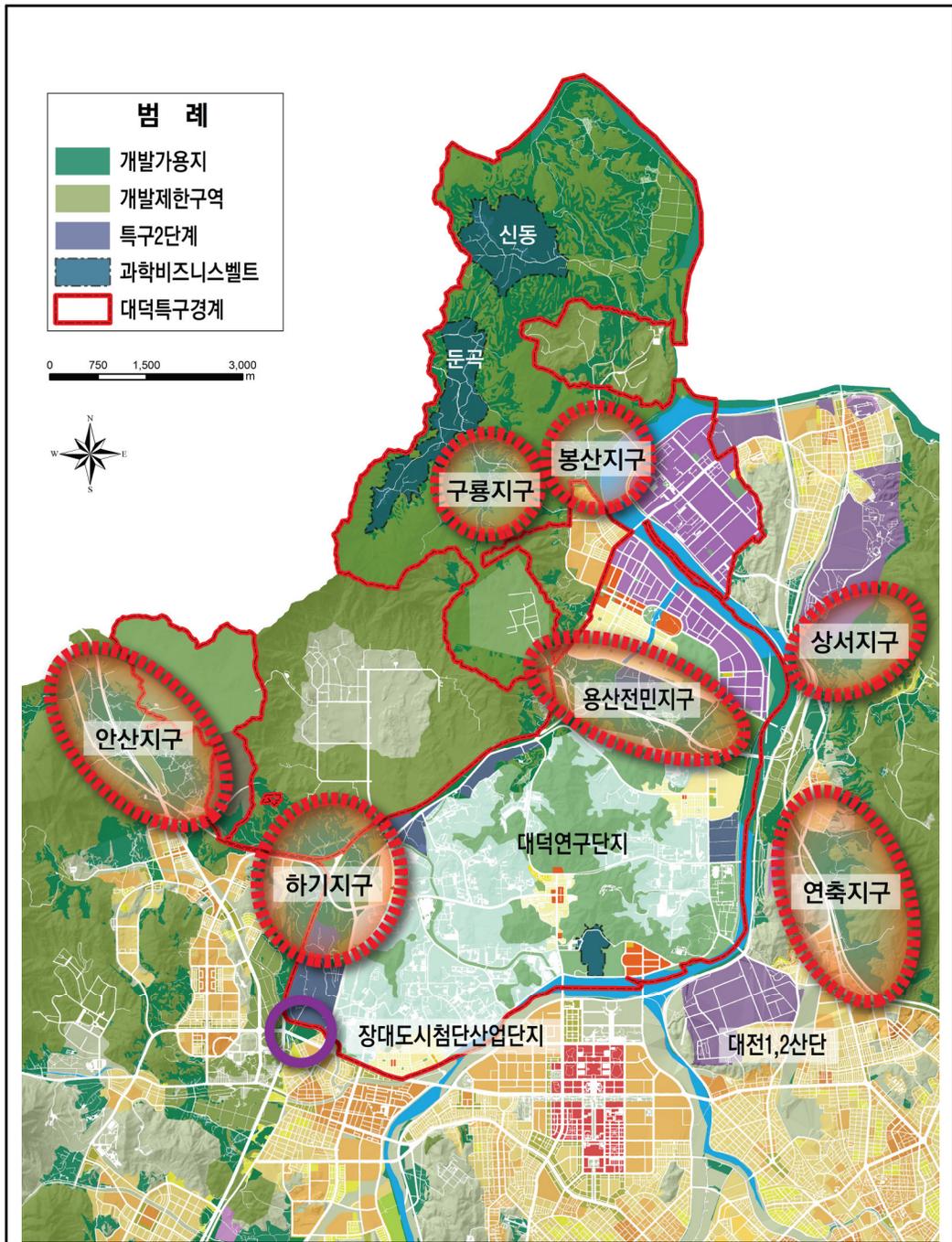


[그림 5-14] 연구단지 내 원형지 개발가능용지

- 원형지 중 개발불능지로 분류된 지역(경사도 30%이상 지역, GB 1, 2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군사보호구역 등)을 중첩시켜 제척해 보면, 연구단지내 **실제 개발가능한 원형지 면적은 1,701,932.82㎡(약 52만평)로 추산됨**
- 그러나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연구단지내 입주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형지 등은 대민서비스나 지역 기업 활동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보다는 입주기관의 추가적인 자체 수요를 대비한 예비지로서의 활용 의도가 절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형지 분할 매각 방식을 통한 용지확보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건폐율이 과포화 상태에 있는 몇몇 입주기관들의 경우, 원형지를 분할 매각할 경우, 전체 대지면적이 감소하여 오히려 기존 건폐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형지 분할매각은 건폐율의 법적 상향 조치가 우선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4) 연구단지 주변 외곽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규 공급

- 현 연구단지(1지구)의 대체 연구단지 조성 방안으로 특구내 주변 외곽부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앞서도 살펴보았듯, 대덕연구단지의 원래 조성 목적은 연구와 교육을 핵심으로 연구소와 학원이 공존하는 연구학원도시의 지향이었으나, 연구단지의 원천기술 및 R&D 연구 성과물이 제품화 되어 산업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함
- 이에 연구개발특구로 발전시켜 혁신 클러스터화를 통한 창조산업 전지기지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 성과물이 실용화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 단지의 기능이 융복합적 산업공간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음
- 즉 새로운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시점으로 일부 연구기관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이전 부지는 맞춤형 기업활동 지원이 가능한 전용 산업생산 공간으로 전환시켜 연구 및 교육, 생산기능이 연구단지 내 집적화 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구역에 대한 복합화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대안적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신규 대체 연구단지의 조성 또한 필요하리라 봄
- 신규 대체단지는 연구기능과 산업생산기능, 주거 및 문화기능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융복합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나감이 바람직함



[그림 5-15] 연구단지 주변부 개발 가능 후보지

## 제 6 장

---

###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공급 방안



## 제6장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공급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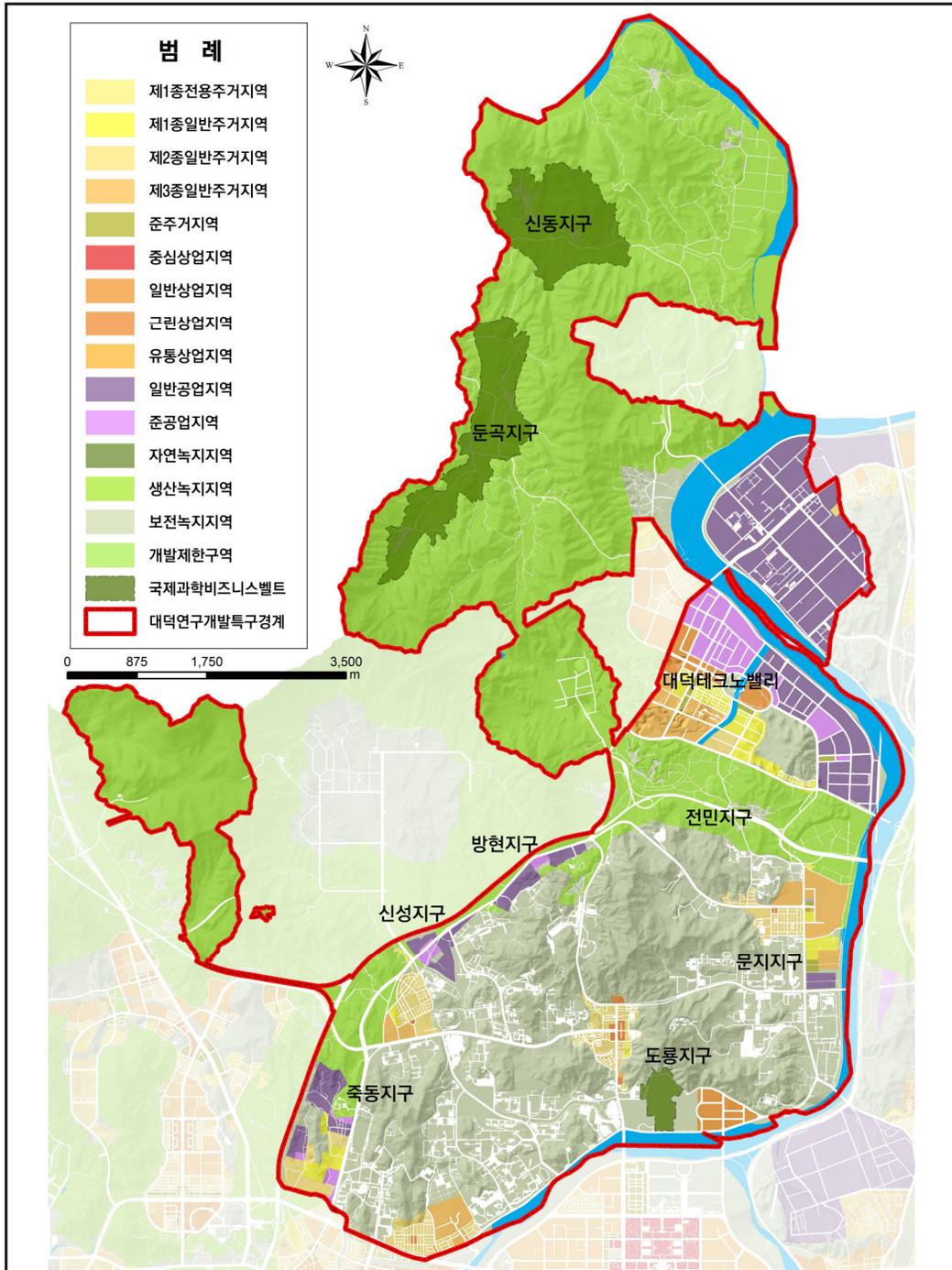
### 제1절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 지역여건과 수요자의 니즈(Needs) 및 수요를 고려한 공간계획 및 용지공급
  - 대학·연구소·기업체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업용지 및 지원기능의 확충
- 연구기능 및 비즈니스 기능의 효율적 연계 구축을 위한 용도복합화 유도
  - 복합용지 개념의 도입을 통한 용도기능 융복합화
- 기존계획을 수용하되, 필요시 규제완화 등을 통한 용지공급의 유연성 확보
  - 관리기관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다만, 입주기관 및 기업의 수요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개발밀도가 낮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한 개발밀도 증대 및 용도변경을 통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
-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상 해제총량 범위 안에서 개발 유도
  -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 제2절 토지의 효율적 공급 방안

#### 1. 토지이용의 유연성 확보 및 관련 제도의 정비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과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그림 6-1] 대덕연구개발특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 현황

- 그러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위해 특례를 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며,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법령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완화된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연구개발특구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동법 제44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6-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에서의 개발밀도 관련 특례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3항에서는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b>건폐율은 3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b></li> <li>○ 복합용지 개념의 도입을 통해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에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한해서는 <b>건폐율을 80% 이하까지 완화적용</b> 가능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음</li> <li>○ 동 조례 제55조제4항에 의거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b>용적률은 150% 이하로 하며, 이 경우 건물 높이는 7층 이하로 함</b></li> <li>○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li> </ul>
--

-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반면에 각 용지내 도입 가능한 유치업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업지역 내지 일반산업단지보다는 보다 까다로운 제한을 받고 있음
- 특구 입주 제한 업종으로는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sup>4)</sup>

- 다만, 지자체 환경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한편,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특구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서 보며,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용도구역 안에서의 허용 가능한 건축행위는 보다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일부 복합용지의 도입을 통해 토지이용의 유연성 확보와 기능의 융복합화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산업입지 정책 변화 요소를 적극 반영한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함

〈표 6-2〉 특구지역내 지구별 입주 가능 업종 및 입주 제한업종 구분

구 분		제Ⅰ지구제Ⅱ지구제Ⅴ지구	제Ⅲ지구제Ⅳ지구
생산 시설	관련규정	-대전광역시 대덕테크노밸리 지정 (변경) 고시 제2005-49호(2005. 4.15) -대덕특구 1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2008-130호(2008.8. 29)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으로 승인된 기업, 기타 「산집법」 제2조제1호의 공장
	입주 가능업종	-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10797*, 20, 21, 25, 26, 27, 28, 29, 30, 311, 312, 313, 31910, 582, 62, 63, 70, 7291에 해당하는 업종	- 기계, 전자, 자동차 관련제조업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
	입주 제한업종	- 입주 가능 업종 외의 업종	- 입주 가능 업종 외의 업종 -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
지원시설		-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좌 동
공공시설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좌 동

\*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 특구내 입지 가능 기관 및 기업

- 첨단기술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학교/국방과학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연구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외국연구기관

▶첨단기술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에서는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함

■ 첨단기술기업 대상 및 요건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①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다만,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연간 총매출액의 3%로 함)  
 ②특허권을 활용하여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연구소기업 대상 및 요건

○ 연구소기업 대상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 포함)이 50%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연구소기업 요건

1.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50%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 토지의 용도와 관련해서도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제와 산업입지법 내지 연구개발특구법상의 용도구분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 범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다른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의 각 구역별 건축물 범위 또한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정합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6-3〉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의 용도별 구역 개념 및 건축허용 범위

구분	개념	건축허용범위	
		용도	세부내역
산업시설 구역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공장시설	· 산집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장 및 부대시설
		지식산업 시설	· 지식산업, 벤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정보통신 산업시설	· 정보통신산업, 벤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자원비축 시설	·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 보관·창고·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관련 시설
		지역 특화산업	·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전력시설	· 발전소 시설 등 전력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생산업 시설용도	· 재생용금속가공원료생산업(38301) 및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38302)를 영위하기 위한 시설
		친환경 신기술촉진 시설용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지원시설 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역	-	· 산집법 제2조 12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교육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매매장·운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제외

공공시설설치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산업법 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중 도로, 하천, 수도, 우수지,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녹지구역	산업단지의 미관 및 주변 지역의 환경 오염 최소화 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자격, 산업배치계획, 사후관리계획 등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용

〈표 6-4〉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재구분 기준

구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용도지역 및 시설 등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제 I 지구* <sup>주1)</sup>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공원) ·녹지지역	⇒ ·주거구역 ⇒ ·상업구역 ⇒ ·녹지구역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용적률 및 건폐율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등의 적용을 받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한해서는 건폐율 30%, 용적률 150% 이하로 완화 적용, 건축물 높이는 7층이하* <sup>주4)</sup>
제 II 지구* <sup>주2)</sup>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공원)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 ·주거구역 ⇒ ·상업구역 ⇒ ·녹지구역 ⇒ ·산업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는 도시계획 등의 적용을 받되, 각 용도별 구역은 국토계

구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용도지역 및 시설 등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공공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	획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특구법의 적용을 받음
제Ⅲ지구* <sup>주2)</sup>	·주거지역	⇒ ·주거구역	
	·산업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	
	·녹지구역(공원)	⇒ ·녹지구역	
제Ⅳ지구	·녹지지역	⇒ ·녹지구역	
제Ⅴ지구* <sup>주3)</sup>	·(녹지지역내) 연구시설	⇒ ·교육연구 및 사업회사시설구역	
	·(녹지지역내) 생산시설	⇒ ·산업시설구역	

\*주1) 학교 및 주차장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고려하되 해당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용도구역으로 지정함

\*주2) 제Ⅱ지구 . 제Ⅲ지구 등 종전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원시설구역 또는 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하던 토지는 종전대로 관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의거 산단관리기본계획상의 용도구분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주3) 제Ⅴ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입주한 시설이므로 그 용도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토지용도구역을 지정함

\*주4) 동법 제44조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표 6-5〉 연구개발특구법상의 용도구역 및 건축행위 가능 용도

구분	토지용도	건축행위 가능 용도
주거구역	전용주거구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 변전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일반주거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구분		토지용도	건축행위 가능 용도
	구역		식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 창고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준주거구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어리 시설 중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증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위락시설(카지노영업소, 무도장 및 무도학원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방송통신시설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단독주택 중 토지소유자 본인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중 입주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증사자임을 확인한 사람의 주거를 위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구분	토지용도	건축행위 가능 용도
		유치원 및 연수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운전학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교정 및 군사시설(증축 또는 개축에 한해 가능), 방송통신시설, 관광 및 휴게시설(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연구시설 및 부대 시설, 첨단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해당 연구소 안에 설치하는 시험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학교(대학, 대학원, 과학고등학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서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과학기술분야의 전시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연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첨단기술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의 입주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판매시설(300제곱미터 미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판매시설(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직장어린이집 등
산업시설 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시설(해당 산업시설구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운수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검사장 및 정비공장,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용도별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의 경직성을 탈피
- 최근 도입된 복합용지의 활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유연성 확보와 기능의 융복합화를 유도토록 함
- 준공된 특구 개발 사업지구의 개발행위 특례 조항을 신설
- 준공된 특구개발사업지구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특구법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

-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 시설 규모 및 용량의 100분의 50이하의 변경사항
- 15미터 미만 도로의 신설·폐지 등
- ※ 산업법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참조

-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변경 시에 관련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 이행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용도변경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승인사항임)되므로 토지이용계획 용도변경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 2. 복합용지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용을 통한 융복합화 유도

- 미개발된 사업지구에 한해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그리고 용산지구 등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공급코자 할 경우에는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용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밀도 및 용도의 융복합화를 유도
- 특구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토지의 용도 구분 중 산업시설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한해 산업입지법 상의 복합용지 개발이 가능토록 특구법에 대한 일부 개정 필요

- 복합용지란?
  - 산업입지법 제2조7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용지란 산업시설용지내 입지 가능한 시설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과 산업단지의 효율증진, 그리고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함
- 복합용지 내 입지 가능한 시설
  -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단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그 밖에 상기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공원 등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 그 밖에 상기 시설사업에 부대되는 시설 등

■ 복합용지 지정 가능 비율 및 산업시설용지로의 포함 여부

- 산업입지법 제6조제6항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에서 면적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인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포함하여 계상될 수 있음
- 복합용지는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 도시첨단산업단지 : 100분의 40
  - 농공단지 :100분의 60

■ 복합용지 계획시 고려 사항

- 산업단지의 개발의 위한 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름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세부용도별 비율을 제시해야 함
  - 복합용지내 산업시설면적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복합용지내 시설별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복합용지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음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지분류 기준]

시설	용도	비고
산업시설 용지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등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필지규모는 900제곱미터	산업입지법 제2조제7 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
복합용지	복합용지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 의 3에 따른 복합용지
주거시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주거시설
상업시설 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 용지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 7호에 열거한 시설
지원시설 용지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 등 공공지원시설, 정보 처리·전사·유통 등 생산지원시설, 문화·관광·체육· 생활편의·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	산업시설의 생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기타시설 용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 복합용지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 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 조성원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액

-산업시설 및 산업시설 외 시설의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 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제3지구인 대덕산업단지 내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집적화 되어 있는 기존 공업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과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통해 IT 및 벤처,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의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가도록 함

- 지식기반산업지구로의 지정과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정부주도의 중기청, 산업인력공단의 사업이나 R&D보조 지원 우선권 등 정부지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복합용지 활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함이 바람직

### ■ 도시형공장(산집법 제28조)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을 말함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종부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1종부터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 항목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전자카드, 전자접속카드,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 유선통신장비, 방송장비, 이동전화기, 기타 무선 통신장비,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기타 음향기기, 기타 공학기기,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 ■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 산집법 제2조 제13호)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한 경우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산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외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판매시설(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로 일정기준 면적 이하의 시설
  -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의 규모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의 50%이내(수도권 30%이내,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20%이내)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존 허용 범위의 20%에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육시설 현황에 따라 면적을 더함
    -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보육시설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 중 작은 면적
    - 보육시설을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보육시설의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 중 작은 면적
    -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보육시설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 중 작은 면적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30%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50%
  -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음
- 공장입주의 기준
- 공장입지의 기준고시(「산집법」 제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함
    - 공장입지의 기준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산집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대상
      -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산집법」 시행령 제14조)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기준공장면적률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 승인 일부터 4년 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

※ 기준공장건축면적 산출방법

- ▶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 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 업종간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산출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제외(「산집법」 시행령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부지
- 활주로·철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
-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부지
- 「산집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부지
-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부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지
-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한편, 대덕산업단지 등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단지는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및 유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의 집적도 및 활용도를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는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

〈표 6-6〉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비교

구분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정의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기업의 연구 활동 지원 등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컨소시엄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목적	산업단지 내 캠퍼스에 창의적 산학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산학융합 연구실 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R&D-고용이 연계된 새로운 창조경제형 산학융합 모델 구축	기존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산학융합의 공간을 조성
지원 규모	대학별 평균 연간 7-8억원(3년간 지원)	5년간 230억원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3. 개발밀도 증대 및 원형지 등을 활용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

-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미개발된 원형지 가운데 개발 가능한 부지에 복합용지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 대덕연구단지 내 미개발된 원형지는 대부분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지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허용 가능한 건축 용도에 대해 특구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국토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녹지구역 내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개발 가능한 원형지를 복합용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게 되면 용도상향(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효과 뿐 아니라 허용가능한 건축 용도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의 복합용지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음(단,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음)

〈표 6-7〉 대덕연구단지 토지이용 현황

용지구분	개발구분		합계	분양대상				
				계	분양공고(실수요면적 포함)			분양 미공고
					소계	분양	미분양	
전체	합계		27,781,000	17,240,237	16,482,592	16,482,592	-	757,645
	개발 대상	조성	25,245,660	15,609,000	15,609,000	15,609,000	-	-
		미조성	2,535,340	1,631,237	873,592	873,592	-	757,645
	개발미대상		-	-	-	-	-	-
산업 시설	소계		14,147,046	14,147,046	13,648,983	13,648,983	-	498,063
	개발 대상	조성	13,089,000	13,089,000	13,089,000	13,089,000	-	-
		미조성	1,058,046	1,058,046	559,983	559,983	-	498,063
주거 시설	소계		2,557,708	2,557,708	2,429,193	2,429,193	-	128,515
	개발 대상	조성	2,194,000	2,194,000	2,194,000	2,194,000	-	-
		미조성	363,708	363,708	235,193	235,193	-	128,515
지원 시설	소계		535,483	535,483	404,416	404,416	-	131,067
	개발 대상	조성	326,000	326,000	326,000	326,000	-	-
		미조성	209,483	209,483	78,416	78,416	-	131,067
공공 시설	소계		10,540,763	-	-	-	-	-
	개발 대상	조성	9,636,660	-	-	-	-	-
		미조성	904,103	-	-	-	-	-
	개발미대상		-	-	-	-	-	-
유보지	소계 (개발미대상)		-	-	-	-	-	
해면및 기타	소계 (개발미대상)		-	-	-	-	-	

1)시설용지 분류기준

**산업시설용지** : 공장 등 산업시설용지(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연구시설용지 포함)

**주거시설용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용지

**지원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용지

(단, 시설의 성격상 통상 지원시설용지로 분류되어 있다 하여도 지자체체에 무상으로 귀속, 양도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분양미대상면적>로 분류)

**공공시설용지** : 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무상귀속 또는 기타협의 등에 의거 무상으로 지자체에 양도되는 용지(단, 시설의 성격상 통상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되는 경우도 분양되는 용지는 지원시설용지<분양대상면적>로 집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 하수도, 유수지시설

**유보지** : 지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지

**해면 및 기타** : 해면, 해면매립 등 기타용지

2)개발관련

- **조성면적** : 지정면적 중 개발계획에 잡혀 있으면서 실제로 개발조성된 면적
- **미조성면적** : 지정면적 중 개발계획에 잡혀 있으면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면적
- **개발대상면적** : 지정면적 중 실제용지가 개발완료된 조성면적과 향후 개발계획에 있는 미조성면적의 합계
- **개발미대상면적** : 지정면적으로는 지정되어있으나 실제 개발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면적

3)분양관련

- **분양면적** : 분양공고된 면적 중 조성면적 및 미조성면적에 대한 분양면적
- **미분양면적** : 분양공고된 면적 중 조성면적 및 미조성면적에 대한 미분양면적
- **분양공고면적** : 조성면적 및 미조성면적의 분양 + 미분양면적의 합계
- **분양미공고면적** : 조성면적 및 분양대상 면적에는 포함되나 현재 분양공고가 나지 않아 실제 분양 및 미분양으로 판단할 수 없는 면적
- **분양미대상면적** : 분양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면적
- **분양대상면적** : 지정면적 중 유상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분양되는 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집계  
 ※ 실수요자 개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도로, 공원, 녹지등 산업임지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 제 24조 의 4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되는 용지를 제외한 전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이며,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분양공고(분양)에 기재하고, 실시계획승인 이전에는 분양미공고로 기재
- **조성률** : 조성면적 / (조성면적 + 미조성면적) \* 100
- **분양률** : 조성된면적의 분양공고중 분양면적 / (분양면적 + 미분양면적) \* 100

〈표 6-7〉 대덕연구단지 토지이용 현황(계속)

용지구분	개발구분		분양미대상	평균분양가 (원/㎡)	조성률	분양률	특이사항
전체	합계		10,540,763	-	90.9	95.6	
	개발대상	조성	9,636,660				
		미조성	904,103				
	개발미대상		-				
산업시설	소계		-	140,000	92.5	96.5	
	개발대상	조성	-				
		미조성	-				
주거시설	소계		-	0	85.8	95	
	개발대상	조성	-				
		미조성	-				
지원시설	소계		-	0	60.9	75.5	
	개발대상	조성	-				
		미조성	-				
공공시설	소계		10,540,763	-	91.4	-	
	개발대상	조성	9,636,660				
		미조성	904,103				
	개발미대상		-				
유보지	소계 (개발미대상)		-	-	-	-	
해면및 기타	소계 (개발미대상)		0	-	-	-	

## 1) 시설용지 분류기준

**산업시설용지** : 공장 등 산업시설용지(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연구시설용지 포함)

**주거시설용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용지

**지원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용지

(단, 시설의 성격상 통상 지원시설용지로 분류되어 있다 하여도 지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 양도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분양미대상면적>로 분류)

**공공시설용지** : 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지와 무상귀속 또는 기타협의 등에 의거 무상으로 지자체에 양도되는 용지(단, 시설의 성격상 통상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되는 경우도 분양되는 용지는 지원시설용지<분양대상면적>로 집계)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 하수도, 유수지시설

**유보지** : 지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지

**해면 및 기타** : 해면, 해면매립 등 기타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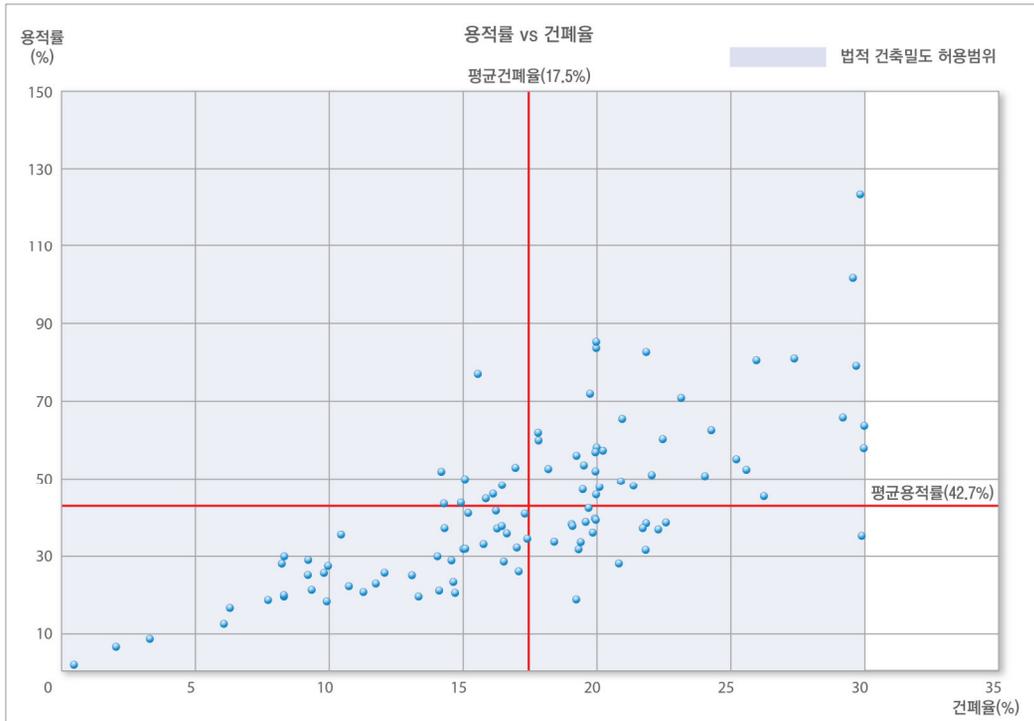
## 2) 개발관련

- **조성면적** : 지정면적 중 개발계획에 잡혀 있으면서 실제로 개발조성된 면적
- **미조성면적** : 지정면적 중 개발계획에 잡혀 있으면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면적
- **개발대상면적** : 지정면적 중 실제용지가 개발완료된 조성면적과 향후 개발계획에 있는 미조성면적의 합계
- **개발미대상면적** : 지정면적으로는 지정되어있으나 실제 개발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면적

## 3) 분양관련

- **분양면적** : 분양공고된 면적 중 조성면적 및 미조성면적에 대한 분양면적
- **미분양면적** : 분양공고된 면적 중 조성면적 및 미조성면적에 대한 미분양면적
- **분양공고면적** : 조성면적 및 미조성면적의 분양 + 미분양면적의 합계
- **분양미공고면적** : 조성면적 및 분양대상 면적에는 포함되나 현재 분양공고가 나지 않아 실제 분양 및 미분양으로 판단할 수 없는 면적
- **분양미대상면적** : 분양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면적
- **분양대상면적** : 지정면적 중 유상 또는 기타의 대가를 받고 분양되는 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집계  
※ 실수요자 개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도로, 공원, 녹지등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 제 24조 의 4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되는 용지를 제외한 전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이며,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분양공고(분양)에 기재하고, 실시계획승인 이전에는 분양미공고로 기재
- **조성율** : 조성면적 / (조성면적 + 미조성면적) \* 100
- **분양율** : 조성된면적의 분양공고중 분양면적 / (분양면적 + 미분양면적) \* 100

- 원형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한해 기존의 건폐율(30%)을 40%로, 용적률(150%)을 180%로 각각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 이 외에도 보존가치가 낮은 일부 녹지구역을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물의 층고를 높여 특구내 부족한 입주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6-2] 대덕연구단지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건폐율·응적률 현황

-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건축밀도의 완화대상구역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현재의 허용가능한 건폐율 및 응적률은 각각 30%와 150%임
- 대덕연구단지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지한 기관 및 기업 건축물의 **평균 건폐율은 17.5%, 평균 응적률은 42.7%**로 비교적 개발 밀도는 낮은편
- 정책적 측면에서는 **응적률보다는 건폐율 완화**가 보다 시급하면서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

#### 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수요맞춤형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범위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 신규 산업 용지를 발굴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형태로 추가 조성
  -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함

- 유성구 일대로 지나치게 편중됨과 동시에 과포화 상태에 있는 현재의 특구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용지 공급과 산업구조에 대한 공간네트워크의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4지구 및 5지구 이외에 특구와 연결하면서 보존 가치가 낮은 대덕구 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연축지구 등)을 해제하여 추가적으로 특구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 고려
- 개발제한구역과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에 수립한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에서는 일반조정가능지역과 국가정책사업, 지역현안사업의 일환으로 GB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고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기본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음

〈표 6-8〉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현황(2006)

구분		도면번호	위치	면적(k㎡)
계		29개소		19.960
일반 조정 가능 지역	소계	23개소		13.358
	대덕구	1001	평촌동	0.115
		1002	회덕1동, 법2동	1.060
	동구	1004	용운동	0.230
		1005	삼정동	0.232
		1006	판암1동	0.233
		1007	가오동	0.295
		1008	이사동	0.424
		1009	구도동	0.579
		1012	가수원동	0.204
	서구	1013	정림동	0.190
		1014	관저동	0.587
		1019	봉곡동	0.646
		1025	평촌동	0.242
		1029	금고, 신동	2.223
	유성구	1030	둔곡, 구룡동	2.165
		1031	관평동	0.305
		1037	장대동, 구암동	0.771
		1038	갑동	0.117
		1040	학하동	0.465
1045		성북동	1.453	
1050		안영동	0.290	
중구	1052	무수동	0.288	
	1054	침산동	0.244	
	소계	3개소		5.862
국가 정책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죽동	4.440
	서구	관저5지구	관저동	0.684

구분		도면번호	위치	면적(km <sup>2</sup> )
계		29개소		19.960
사업	유성구	노은3지구	지족동	0.738
지역 현안 사업	소 계	3개소		0.740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노은동	0.172
	유성구	유성종합터미널	온천1동	0.108
	유성구	국제스포츠타운	진잠동	0.460

출처 :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한국토지공사, 2006.

- 그러나 지난 2008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식이 **조정가능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제로 전환됨**
- 현재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은 39.925km<sup>2</sup>로, 이 가운데 대전시에 할당된 해제가능 총량은 31.229km<sup>2</sup>임
- 이 가운데 2014년 12월말 현재까지 기해제된 면적은 11.726km<sup>2</sup>이고, 나머지 19.503km<sup>2</sup>가 해제 가능한 잔여면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임
-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이 가능한 해제가능면적은 약 14.3km<sup>2</sup>로 추정되고 있는 바, 주어진 총량 범위내에서 선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6-9〉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개발 해제 가능면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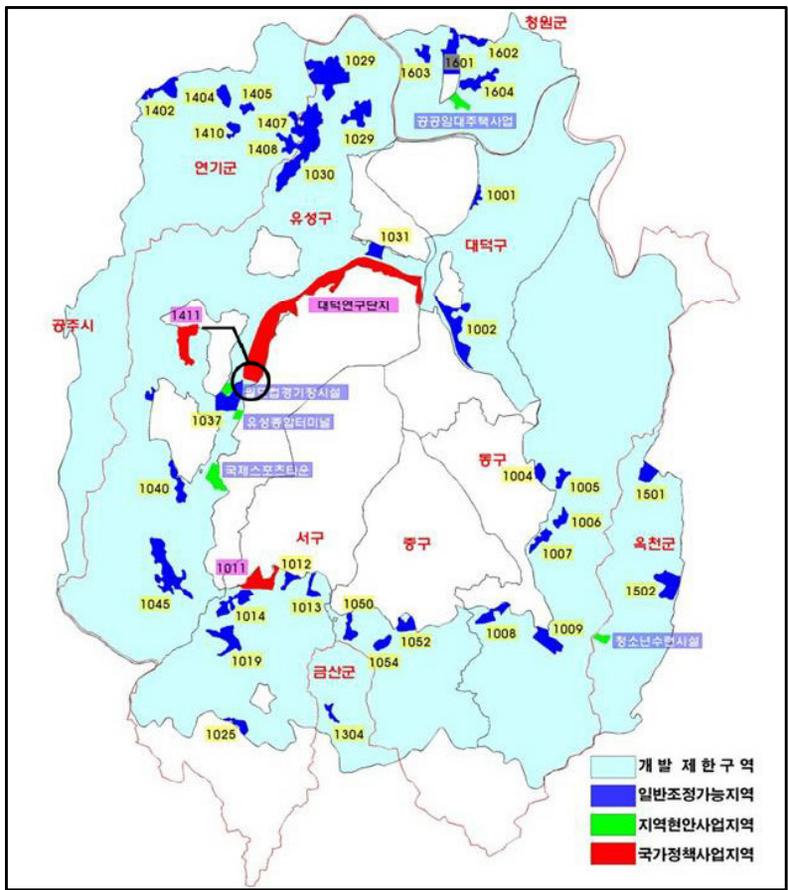
(단위 : km<sup>2</sup>)

구분	해제가능총량	기해제	잔여면적
면 적(km <sup>2</sup> )	31.229	11.726	19.503

-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해제되었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m<sup>2</sup>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를 허용하고,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 하는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함<sup>5)</sup>

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31부로 시행할 예정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14.12.22)」,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15.1.13)」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임
- 일종의 링키지 개발(Linkage development)을 통해 산업시설 및 지원용지 등은 공공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투자하고 주택 및 근생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방식의 접목을 통해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부족한 산업용지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리라 봄



[그림 6-3]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지정현황도(2006)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2015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15.1.28)의 후속조치임

## 5.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구역 재조정

- 대덕특구 지정면적은 약 67.8km<sup>2</sup>로 대전시 유성구 및 대덕구 32개 법정동을 하나의 ‘면’ 형태 구역계로 지정하여 시 전체면적 540.24km<sup>2</sup>의 12.6%를 차지
- 광주, 대구, 부산특구 등은 동일구역이 아닌 비연속적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용 중에 있음
- 광주특구는 8개 지구가 ‘점’의 형태로 조합되어 약 18.73km<sup>2</sup>가 지정되어 있음
- 대구특구 역시 7개 지구가 ‘점’의 형태로 조합되어 총 22.253km<sup>2</sup>가 지정되어 있음
- 부산특구도 4개지구 9개소가 ‘점’의 형태로 조합되어 약 14.1km<sup>2</sup>가 지정되어 있음

〈표 6-10〉 각 특구별 토지용도구역 지정 현황

(단위 : km<sup>2</sup>)

구분	광주특구		대구특구		대덕특구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녹지구역	11,206	59.8	13,398	60.2	41,587	61.3
산업시설구역	3,631	19.4	2,751	12.4	5,970	8.8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3,727	19.9	5,639	25.3	16,148	23.8
주거구역	170	0.9	409	1.8	3,405	5.0
상업구역	-	-	56	0.3	699	1.0
합계	18,734	100.0	22,253	100.0	67,809	100.0

\*부산특구는 토지용도구역이 아직 미고시 되어 있는 관계로 생략함

- 대덕특구는 광주나 대구특구에 비해 산업시설용지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는데 반해, 녹지구역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면적 비율은 광주특구보다는 높으나, 대구특구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특구지정면적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산업시설구역의 면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녹지구역에 한해 활용가치가 낮은 지역은 과감히 특구에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
-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산업구조고도화사업이 여의치 않고, 특구법에 의한 과도한 입주제약으로 기업활동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다면, 대덕산업단지를 특구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리라 봄<sup>6)</sup>

6)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특구 존치 내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대덕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함이 바람직

- 즉, 대덕특구 구역을 ‘면’ 형태에서 ‘점’ 형태로 전환하여 새로 편입할 지역과 해제할 지역에 대한 선별적 조치가 필요하리라 봄

〈표 6-11〉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조정(안)

(단위 : m<sup>2</sup>)

특구경계 조정안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지구 축소(신동, 둔곡지구 및 봉산지구 포함)</li> <li>■ 3지구(대덕산단)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지구 축소</li> <li>■ 3지구(대덕산단) 제척</li> </ul>
구분	대안1		대안2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주거구역	14,509	0.0	—	—
전용주거구역	39,380	0.1	39,380	0.1
일반주거구역	3,279,118	6.1	3,279,118	7.3
준주거구역	39,618	0.1	39,618	0.1
상업구역	668,996	1.3	668,996	1.5
녹지구역	23,754,259	44.4	22,110,244	49.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5,870,983	29.7	15,870,983	35.3
산업시설구역	5,827,763	10.9	2,901,993	6.5
연구개발특구	3,999,312	7.5	—	—
합계	53,493,937	100.0	44,910,3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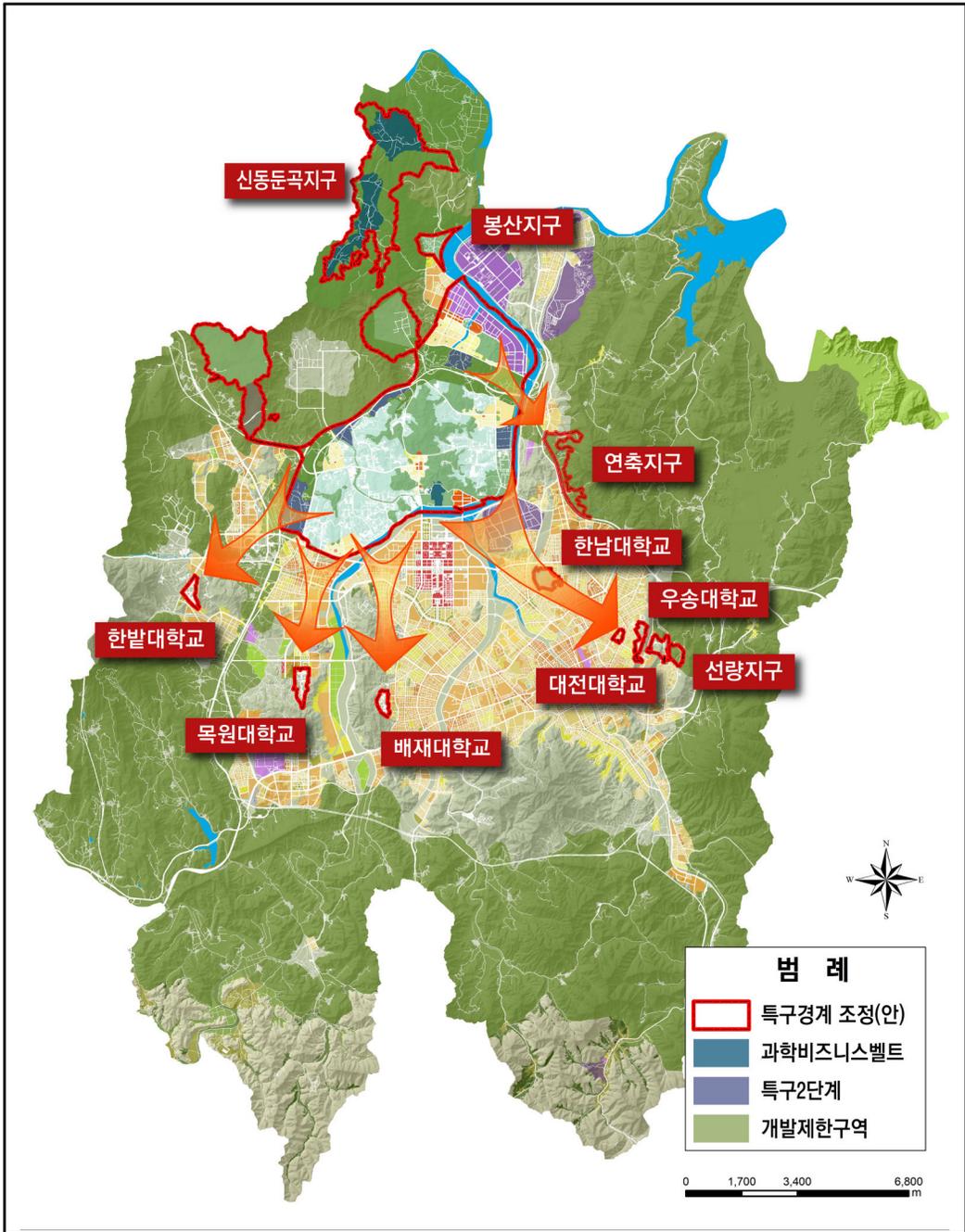
- 특히 대덕특구를 제외한 타 지역의 특구들에서는 공간적으로 이격된 대학캠퍼스 부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6-11〉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조정(안) (계속)

(단위 : m<sup>2</sup>)

구분	대안3		대안4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주거구역	14,509	0.0	-	-
전용주거구역	39,380	0.1	39,380	0.1
일반주거구역	3,279,118	5.7	3,279,118	6.7
준주거구역	39,618	0.1	39,618	0.1
상업구역	668,996	1.2	668,996	1.4
녹지구역	27,807,749	48.3	26,163,734	53.4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5,870,983	27.6	15,870,983	32.4
산업시설구역	5,827,763	10.1	2,901,993	5.9
연구개발특구	3,999,312	6.9	-	-
합계	57,547,427	100.0	48,963,822	100.0

- 따라서 대전대학교 캠퍼스 및 인접한 용운동 11번지 일원과 한밭대학교 캠퍼스, 한남대학교 캠퍼스 및 대전 1, 2산단 일부 재생사업구역 등 혁신클러스터화가 가능한 그 주변 인접 권까지를 포함하여 특구지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



[그림 6-4] 대덕연구개발특구 구역 재조정 방안

- 일례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및 인접한 용운동 11번지(선량지구) 일원에 대한 특구 지정을 통해 동구의 가장 높은 고령화 인구 비율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적 약점을 역으로 활용하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니어기술 창업센터, 양한방 건강관리센터, 고령자친화기업 유치 등 고령친화산업 실용화단지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리라 봄

〈표 6-12〉 대전 소재 주요 대학의 연구 역량

구분	교수	학생	특허등록	연구비(억)		창업보육센터 터입주기업	기술이전 수입(백만원)
			국내(해외)	교내	교외		
합계	1,213	36,682	151	7.3	238	113	362
한밭대	252	8,417	128*	1	127	33	362
목원대	333	9,378	9*	4*	17*	71	78*
대전대	345	9,902	10*	2*	83*	9	34*
한남대	415	13,096	44*	-	133*	94	168*
배재대	319	9,929	5*(1*)	1*	34*	35	34*
우송대	283	8,985	4*	0.3*	11*	-	2*

※2014년 각 대학 정보고시 자료 취합정리(\*는 2013년 자료 기준임)

- 끝으로 광범위한 면형태의 특구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최소화 하고 지역기업 및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역의 용지로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토지는 과감하게 특구해제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부  
록





[부 록]

〈표 1〉 대덕연구개발특구 원형지 현황(2013년 6월 기준)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국가보안 기술연구소	1	유성구 화암동 345	임	1,138.60	1,138.60	-	오기재 (전민동 산25-1 →화암동 345)
국가보안 기술연구소	2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	3,797.30	3,797.30	-	미 입주승인 (교육연구)
국방과학 연구소	1	유성구 수남동 산 1-1	임	534,325.00	527,873.00	-6,452.00	입주변경 (2012-10)-2,14 5 / 등 록 정 정 -4,073
국방과학 연구소	2	유성구 수남동 산 1-25	임	233,582.00	233,582.00	-	
국방과학 연구소	3	유성구 수남동 산 1-31	임	28,564.00	28,564.00	-	
국방과학 연구소	4	유성구 수남동 산 1-34	임	484,289.00	471,111.00	-13,178.00	입 주 변 경 (2013-24)-455/입 주 변 경 (2012-10)-1,480/ 입 주 변 경 (2011-19)-2,247/ 등록정정-8,996
국방과학 연구소	5	유성구 수남동 산 1-48	임	25,870.00	25,870.00	-	
국방과학 연구소	6	유성구 수남동 산 24-26	임	34,391.00	31,353.00	-3,038.00	입주변경 (2011-07)
국방과학 연구소	7	유성구 수남동 산 24-27	임	75,042.00	75,073.00	31.00	입 주 변 경 (2012-10)-1,200 /등록정정1,231
국방과학 연구소	8	유성구 수남동 산 16-1	임	490,560.00	484,334.00	-6,226.00	입주변경 (2011-19)-312/ 등록정정-5,914
국방과학 연구소	9	유성구 수남동 산 24-5	임	146,135.00	136,438.00	-9,697.00	입 주 변 경 (2012-10)-3,122 /토지대장-6,575
국방과학 연구소	10	유성구 수남동 산 24-8	임	7,067.00	7,067.00	-	
국방과학 연구소	11	유성구 수남동 55-1	답	509.00	-	-509.00	등록정정
국방과학 연구소	12	유성구 수남동 191	묘	221.00	221.00	-	
국방과학 연구소	13	유성구 외삼동 산 20-15	임	13,289.00	13,289.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국방과학 연구소	14	유성구 외삼동 산 34-3	임	25,091.00	25,091.00	-	
국방과학 연구소	15	유성구 외삼동 산 35-5	임	595.00	-	-595	특구 외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104-7	임	31,052.30	31,052.30	-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104-17	임	730.90	730.90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1	유성구 화암동 58-5	임	6,136.40	6,136.40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2	유성구 화암동 58-6	임	1,175.10	1,175.10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3	유성구 화암동 58-10	임	2,966.70	2,966.70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4	유성구 화암동 58-13	임	514.30	514.30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5	유성구 화암동 산 17	임	17,100.00	17,100.00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6	유성구 화암동 산 17-10	임	6,727.00	6,727.00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7	유성구 화암동 산 17-11	임	8,745.00	8,745.00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8	유성구 화암동 산 17-22	임	13,095.00	13,095.00	-	
한국기계 연구원	1	유성구 장동 산 8-4	임	43,097.00	43,097.00	-	
한국기계 연구원	2	유성구 장동 산 8-5	임	648.00	648.00	-	
한국기계 연구원	3	유성구 장동 산 9-4	임	198.00	198.00	-	
한국기계 연구원	4	유성구 장동 산 25-1	임	57,415.00	57,415.00	-	
한국기계 연구원	5	유성구 장동 산 25-4	임	593.00	453.00	-140.00	입 주 변 경 (2012-90, 121221)
한국기계 연구원	6	유성구 장동 산 28-1	임	11,495.00	5,749.00	-5,746.00	입주변경 (07.05.14)
한국기계 연구원	7	유성구 장동 산 171-2	임	5,158.10	5,158.10	-	
한국기계 연구원	8	유성구 장동 38-1	답	1,941.00	1,941.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기계 연구원	9	유성구 장동 39	전	13,517.00	-	-13,517.00	오기재(원형지 →조성지)
한국기계 연구원	10	유성구 장동 39-3	전	14,316.00	14,316.00	-	
한국기계 연구원	11	유성구 장동 39-7	전	3,466.00	611.00	-2,855.00	입 주 변 경 (2012-90, 121221)
한국기계 연구원	12	유성구 장동 40	답	532.00	532.00	-	
한국기계 연구원	13	유성구 장동 42	전	11,263.00	11,263.00	-	
한국기계 연구원	14	유성구 장동 43	답	413.00	413.00	-	
한국기계 연구원	15	유성구 장동 44	답	1,395.00	1,395.00	-	
한국기계 연구원	16	유성구 장동 166	전	499.00	499.00	-	
한국기계 연구원	17	유성구 장동 218-6	전	5,934.72	-	-5,934.72	입 주 변 경 (2012-80, 120913)
한국기계 연구원	18	유성구 장동 371-1	답	4,668.00	-	-4,668.00	입주변경 (07.05.14)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1	유성구 신성동 10-7	임	2,433.90	2,433.90	-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1	유성구 어은동 46	임	18,310.60	18,805.60	495.00	토지대장면적 반영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1	유성구 장동 67-4	임	12,900.00	12,900.00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2	유성구 장동 67-7	임	442.00	442.00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3	유성구 가정동 186-1	임	7,993.00	7,993.00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4	유성구 가정동 186-6	임	3,684.00	3,684.00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5	유성구 가정동 187-2	전	203.90	203.90	-	
한국연구재단	1	유성구 가정동 산 1-5	임	276.20	2,762.00	2,485.80	오기재 (단위정정)
한국연구재단	2	유성구 가정동 산 1-7	임	239.80	2,398.00	2,158.20	오기재 (단위정정)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연구재단	3	유성구 장동 산 17-64	임	144.90	1,449.00	1,304.10	오기재 (동명,단위정정)
한국원자력 연구원	1	유성구 덕진동 2-07	전	298.00	29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	유성구 덕진동 4-07	잡	56.00	5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	유성구 덕진동 15	잡	7,610.00	7,61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	유성구 덕진동 2-15	전	154.00	15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	유성구 덕진동 1-16	전	1,071.00	1,07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	유성구 덕진동 20	전	1,765.00	1,76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	유성구 덕진동 27	전	766.00	76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	유성구 덕진동 33	잡	109.00	10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	유성구 덕진동 2-01	도	879.00	87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	유성구 덕진동 2-01	도	3,769.00	3,76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	유성구 덕진동 3-10	도	2,240.00	2,24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	유성구 덕진동 2-01	대	331.00	33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	유성구 덕진동 3-01	도	129.00	12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4	유성구 덕진동 3-20	전	15,587.00	15,58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5	유성구 덕진동 3-30	전	3,015.00	3,01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6	유성구 덕진동 1-01	전	963.00	96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7	유성구 덕진동 2-01	전	1,599.00	1,59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8	유성구 덕진동 1-01	전	5,106.00	5,10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9	유성구 덕진동 4-09	전	11,532.00	11,532.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원자력 연구원	20	유성구 덕진동 4-19	답	2,994.00	2,99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1	유성구 덕진동 5-09	답	2,795.00	2,79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2	유성구 덕진동 285	잡	230.00	23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3	유성구 덕진동 288	답	154.00	15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4	유성구 덕진동 290	전	8,075.00	8,07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5	유성구 덕진동 292-1	답	9.00	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6	유성구 덕진동 294	전	509.00	50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7	유성구 덕진동 294-1	전	226.00	22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8	유성구 덕진동 298-1	전	112.00	11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29	유성구 덕진동 298-2	제	1,470.00	1,47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0	유성구 덕진동 299	답	383.00	38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1	유성구 덕진동 310	답	49.00	4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2	유성구 덕진동 315	대	126.00	12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3	유성구 덕진동 335	전	431.00	43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4	유성구 덕진동 335-1	대	400.00	40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5	유성구 덕진동 335-2	대	4,878.00	4,87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6	유성구 덕진동 335-3	전	14.00	1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7	유성구 덕진동 335-4	대	314.00	31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8	유성구 덕진동 338	전	491.00	49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39	유성구 덕진동 338-1	전	90.00	90.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원자력 연구원	40	유성구 덕진동 365	답	10.00	1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1	유성구 덕진동 370	답	98.00	9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2	유성구 덕진동 371	답	2,460.00	2,46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3	유성구 덕진동 373	답	714.00	71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4	유성구 덕진동 374-1	전	216.00	21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5	유성구 덕진동 376	전	174.00	17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6	유성구 덕진동 377	전	1,167.00	1,16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7	유성구 덕진동 378	답	55.00	5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8	유성구 덕진동 379	전	768.00	76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49	유성구 덕진동 380	전	339.00	33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0	유성구 덕진동 380-1	전	472.00	47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1	유성구 덕진동 381	전	11,061.00	11,06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2	유성구 덕진동 383	전	109.00	10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3	유성구 덕진동 384	천	288.00	28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4	유성구 덕진동 387-1	전	4,314.00	4,31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5	유성구 덕진동 388	답	1,683.00	1,68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6	유성구 덕진동 389	답	1,131.00	1,13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7	유성구 덕진동 390	전	21,054.00	21,05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8	유성구 덕진동 391-1	답	797.00	79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59	유성구 덕진동 391-2	전	1,035.00	1,035.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원자력 연구원	60	유성구 덕진동 392	답	8,317.00	8,31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1	유성구 덕진동 395	전	5,872.00	5,87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2	유성구 덕진동 396	답	288.00	28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3	유성구 덕진동 400	답	3,007.00	3,00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4	유성구 덕진동 401	전	4,165.00	4,16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5	유성구 덕진동 403	답	8,240.00	8,24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6	유성구 덕진동 405	전	320.00	32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7	유성구 덕진동 415	답	1,096.00	1,09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8	유성구 덕진동 416	답	195.00	19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69	유성구 덕진동 417	답	780.00	78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0	유성구 덕진동 418	전	843.00	84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1	유성구 덕진동 419	답	9,772.00	9,77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2	유성구 덕진동 422	답	4,929.00	4,92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3	유성구 덕진동 425	답	7,185.00	7,18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4	유성구 덕진동 430	전	635.00	63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5	유성구 덕진동 435-1	묘	356.00	35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6	유성구 덕진동 435-2	전	358.00	35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7	유성구 덕진동 435-3	전	426.00	42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8	유성구 덕진동 435-4	전	417.00	41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79	유성구 덕진동 437	전	248.00	248.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원자력 연구원	80	유성구 덕진동 438	답	126.00	12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1	유성구 덕진동 439	전	863.00	86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2	유성구 덕진동 440	전	99.00	9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3	유성구 덕진동 441	유	182.00	18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4	유성구 덕진동 443	유	823.00	82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5	유성구 덕진동 444	전	410.00	41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6	유성구 덕진동 444-1	답	1,190.00	1,19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7	유성구 덕진동 445	전	2,132.00	2,13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8	유성구 덕진동 446	답	4,797.00	4,79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89	유성구 덕진동 447	답	893.00	89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0	유성구 덕진동 449	답	324.00	32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1	유성구 덕진동 452	답	1,315.00	1,31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2	유성구 덕진동 452-5	구	371.00	37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3	유성구 덕진동 453	구	2,881.00	2,88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4	유성구 덕진동 460-1	구	9,411.00	9,41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5	유성구 덕진동 466	도	346.00	34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6	유성구 덕진동 467	구	898.00	89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7	유성구 덕진동 468	구	537.00	53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8	유성구 덕진동 472	도	179.00	17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99	유성구 덕진동 473	도	97.00	97.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원자력 연구원	100	유성구 덕진동 474	도	145.00	14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1	유성구 덕진동 479	구	607.00	60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2	유성구 덕진동 480	구	1,368.00	1,36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3	유성구 덕진동 산9-2	구	3,356.00	3,35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4	유성구 덕진동 산9-13	도	98,175.00	98,17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5	유성구 덕진동 산15	장	24,602.00	24,60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6	유성구 덕진동 산17-1	수	2,108.00	2,10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7	유성구 덕진동 산21-2	임	12,641.00	12,64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8	유성구 덕진동 산21-9	임	1,853.00	1,85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09	유성구 덕진동 산21-10	임	5,316.00	5,31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0	유성구 덕진동 산21-11	임	1,126.00	1,12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1	유성구 덕진동 산26	임	223,766.00	222,218.00	-1,548.00	입 주 승 인 (2013-18, 134.18)
한국원자력 연구원	112	유성구 덕진동 산27-4	임	2,062.00	2,06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3	유성구 덕진동 산27-6	임	25.00	2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4	유성구 덕진동 산29-1	임	65.00	6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5	유성구 덕진동 산30	임	14,929.00	14,92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6	유성구 덕진동 산31-4	임	874.00	87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7	유성구 덕진동 산36-5	임	374.00	374.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8	유성구 덕진동 산36-6	임	710.00	71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19	유성구 덕진동 산38-1	임	724.00	724.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원자력 연구원	120	유성구 덕진동 산39-1	임	1,818.00	1,81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1	유성구 덕진동 산39-2	임	1,451.00	1,451.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2	유성구 덕진동 산39-3	임	810.00	81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3	유성구 덕진동 산41-1	임	4,186.00	4,18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4	유성구 덕진동 산41-2	임	690.00	69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5	유성구 덕진동 산41-3	임	312.00	312.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6	유성구 덕진동 산41-4	임	286.00	28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7	유성구 덕진동 산41-5	임	158.00	15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8	유성구 덕진동 산42-1	임	9,410.00	9,41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29	유성구 덕진동 산42-2	임	1,038.00	1,03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0	유성구 덕진동 산46-1	임	315.00	31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1	유성구 덕진동 산47-3	임	9,830.00	9,83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2	유성구 덕진동 산49-8	임	256.00	25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3	유성구 덕진동 산52-1	임	4,199.00	4,19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4	유성구 덕진동 481	임	788.00	78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5	유성구 덕진동 483	임	626.00	626.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6	유성구 덕진동 484	구	145.00	14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7	유성구 덕진동 0-7(가번지)	임	183.00	183.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8	유성구 덕진동 0-8(가번지)	임	5.00	5.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39	유성구 덕진동 0-12(가번지)	전	337.00	337.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원자력 연구원	140	유성구 덕진동 0-14(가번지)	전	579.00	579.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41	유성구 덕진동 0-15(가번지)	전	697.00	697.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42	유성구 덕진동 0-18(가번지)	전	90.00	90.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43	유성구 덕진동 0-21(가번지)	전	558.00	558.00	-	
한국원자력 연구원	144	유성구 덕진동 0-22(가번지)	전	1,954.00	1,954.0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	유성구 가정동 136-1	전	355.00	355.0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2	유성구 가정동 167-5	전	697.00	697.0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3	유성구 가정동 256	전	403.10	403.1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4	유성구 가정동 269	전	6,265.40	6,265.4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5	유성구 가정동 139-2	임	587.90	587.9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6	유성구 가정동 139-3	임	6,271.40	6,271.4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7	유성구 가정동 139-4	임	73.20	73.2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8	유성구 가정동 139-12	임	57,667.50	57,667.5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9	유성구 가정동 149-14	임	2,657.00	2,657.0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0	유성구 가정동 산 8-11	임	1,278.00	1,278.0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1	유성구 가정동 산 10-1	임	23,864.00	23,864.0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2	유성구 가정동 149-7	잡	4,297.00	4,297.0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3	유성구 가정동 173	잡	4,736.00	4,736.00	-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4	유성구 가정동 32-1	도	75.60	-	-75.60	오기재(원형지 →조성지)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1	유성구 가정동 31	임	39,545.10	39,545.1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2	유성구 가정동 186-1	임	55.00	55.00	-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3	유성구 가정동 187-2	전	0.10	0.10	-	
한국천문 연구원	1	유성구 화암동 61-3	임	20,615.10	19,757.10	-858.00	오기재(산61-3 →61-3) 입 주 변 경 (2010-54,100817)
한국천문 연구원	2	유성구 화암동 272-6	도		181.00	181.00	누락 (분할 미반영)
한국천문 연구원	3	유성구 화암동 272-9	도		18.00	18.00	누락 (분할 미반영)
한국천문 연구원	4	유성구 화암동 산 36	임	4,255.50	4,255.50	-	
한국천문 연구원	5	유성구 화암동 산 36-4	임		659.00	659.00	누락 (분할 미반영)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1	유성구 가정동 산 8-22	임	8,084.00	8,084.00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2	유성구 가정동 산 1-1	임	57,774.00	57,745.00	-29.00	토지대장면적 반영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3	유성구 가정동 산 2-7	임	3,103.00	3,103.00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4	유성구 도룡동 산 25-1	임	20,394.00	20,394.00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5	유성구 도룡동 산 27-2	임	80,567.00	80,567.00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6	유성구 도룡동 산 27-41	임	95.00	95.00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8	유성구 도룡동 산 28	임	35,055.00	22,116.00	-12,939.00	입주변경 (11.08.23)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7	유성구 도룡동 산 28-5	임	150.00	150.00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8	유성구 도룡동 산 28-8	임		9,688.00	9,688.00	산28에서분할 (11.03.07)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9	유성구 장동 산 17-63	임	35,774.00	35,774.00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10	유성구 장동 산 12-21	임	229.00	229.00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11	유성구 장동 산 12-19	임	3,128.00	3,128.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12	유성구 장동 산 12-1	임	26,225.00	26,225.00	-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1	유성구 신성동 10	임	6,990.00	-	-6,990.00	오기재(원형지 →조성지)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2	유성구 신성동 10-1	임	29,016.00	27,992.26	-1,023.74	입주변경(2013-4, 132.19)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3	유성구 신성동 10-9	임	21,455.40	21,455.40	-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4	유성구 신성동 10-10	임	18,689.50	18,689.50	-	
한국해양 연구원	1	유성구 장동 220-3	전	1,329.00	1,329.00	-	
한국해양 연구원	2	유성구 장동 산 8	임	25,850.00	25,850.00	-	
한국해양 연구원	3	유성구 장동 산 8-1	임	7,075.00	7,075.00	-	
한국해양 연구원	4	유성구 장동 산 8-8	임	16.00	16.00	-	
한국화학 연구원	1	유성구 장동 산 17-11	임	17,090.00	17,090.00		
한국화학 연구원	2	유성구 장동 산 17-46	임	6,420.00	6,420.00	-	
한국화학 연구원	3	유성구 장동 산 17-65	임	203.00	203.00	-	
한국화학 연구원	4	유성구 장동 산 18	임	75,284.00	73,949.00	-1,335.00	입주변경 (08.07.07)
한국화학 연구원	5	유성구 장동 86-8	임	95.00	-	-95.00	오기재 (원형지→기타)
한국화학 연구원	6	유성구 신성동 98	전	444.00	444.00	-	
한국화학 연구원	7	유성구 신성동 102	전	1,326.00	1,326.00	-	
한국화학 연구원	8	유성구 신성동 106-1	전	767.00	767.00	-	
한국화학 연구원	9	유성구 신성동 106-3	전	445.00	445.00	-	
한국화학 연구원	10	유성구 신성동 105	전	102.00	102.00	-	
한국화학 연구원	11	유성구 신성동 107	전	605.00	605.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화학 연구원	12	유성구 신성동 127	전	585.00	585.00	-	
한국화학 연구원	13	유성구 신성동 128	전	813.00	813.00	-	
한국화학 연구원	14	유성구 신성동 130	전	1,306.00	1,306.00	-	
한국화학 연구원	15	유성구 신성동 132	전	3,691.00	3,691.00	-	
한국화학 연구원	16	유성구 신성동 133	전	569.00	569.00	-	
한국화학 연구원	17	유성구 신성동 133-3	전	340.00	340.00	-	
한국화학 연구원	18	유성구 신성동 133-1	전	893.00	893.00	-	
한국화학 연구원	19	유성구 신성동 134	전	1,438.00	1,438.00	-	
한국화학 연구원	20	유성구 신성동 134-1	전	516.00	516.00	-	
한국화학 연구원	21	유성구 신성동 134-2	전	5,088.00	5,088.00	-	
한국화학 연구원	22	유성구 신성동 135	전	159.00	159.00	-	
한국화학 연구원	23	유성구 신성동 154-1	전	545.00	545.00	-	
한국화학 연구원	24	유성구 신성동 154-2	전	321.00	321.00	-	
한국화학 연구원	25	유성구 신성동 430	전	25.00	25.00	-	
한국화학 연구원	26	유성구 신성동 431	전	17.00	17.00	-	
한국화학 연구원	27	유성구 신성동 455	전	100.00	100.00	-	
한국화학 연구원	28	유성구 신성동 455-2	전	77.00	77.00	-	
한국화학 연구원	29	유성구 신성동 97-1	답	563.00	563.00	-	
한국화학 연구원	30	유성구 신성동 103-1	답	3,451.00	3,451.00	-	
한국화학 연구원	31	유성구 신성동 103-2	답	3,732.00	3,732.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국화학 연구원	32	유성구 신성동 103-3	답	1,322.00	1,322.00	-	
한국화학 연구원	33	유성구 신성동 104	답	972.00	972.00	-	
한국화학 연구원	34	유성구 신성동 106-2	답	387.00	387.00	-	
한국화학 연구원	35	유성구 신성동 131	답	2,476.00	2,476.00	-	
한국화학 연구원	36	유성구 신성동 154-4	임	159.00	159.00	-	
한국화학 연구원	37	유성구 신성동 154-7	임	340.00	340.00	-	
한국화학 연구원	38	유성구 신성동 154-9	임	1,556.00	1,556.00	-	
한국화학 연구원	39	유성구 신성동 산 4-1	임	8,974.00	8,974.00	-	
한국화학 연구원	40	유성구 신성동 산 4-14	임	2,050.00	2,050.00	-	
한의학 연구원	1	유성구 전민동 461-9	임	2,666.90	2,666.90	-	
국립문화재 연구소	1	유성구 문지동 445-2	전	2,640.00	10,438.00	7,798.00	토지대장면적 반영
국립문화재 연구소	2	유성구 문지동 457-5	전	2,786.00	3,573.00	787.00	토지대장면적 반영
국립문화재 연구소	3	유성구 문지동 475-1	답	332.00	1,748.00	1,416.00	토지대장면적 반영
국립문화재 연구소	4	유성구 문지동 산 27	임	3,923.00	8,741.00	4,818.00	토지대장면적 반영
국립문화재 연구소	5	유성구 문지동 474-1	전	589.00	-	-589.00	말소 (445-2에 합병)
국립문화재 연구소	6	유성구 문지동 474-3	전	4,306.00	-	-4,306.00	말소 (445-2에 합병)
국립문화재 연구소	7	유성구 문지동 477-4	전	2,903.00	-	-2,903.00	말소 (445-2에 합병)
국립문화재 연구소	8	유성구 문지동 457-6	전	787.00	-	-787.00	말소 (457-5에 합병)
국립문화재 연구소	9	유성구 문지동 476-1	답	142.00	-	-142.00	말소 (475-10에 합병)
국립문화재 연구소	10	유성구 문지동 477-2	답	1,274.00	-	-1,274.00	말소 (475-10에 합병)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국립문화재연구소	11	유성구 문지동 산 24-10	임	399.00	-	-399.00	말소(산24-10에 합병)
국립문화재연구소	12	유성구 문지동 산 25-1	임	1,118.00	-	-1,118.00	말소(산24-10에 합병)
국립문화재연구소	13	유성구 문지동 산 25-2	임	2,126.00	-	-2,126.00	말소(산24-10에 합병)
국립문화재연구소	14	유성구 문지동 산 25-7	임	566.00	-	-566.00	말소(산24-10에 합병)
국립문화재연구소	15	유성구 문지동 산 25-8	임	216.00	-	-216.00	말소(산24-10에 합병)
국립문화재연구소	16	유성구 문지동 산 25-9	임	267.00	-	-267.00	말소(산24-10에 합병)
국립문화재연구소	17	유성구 문지동 산 27-1	임	126.00	-	-126.00	말소(산24-10에 합병)
국립중앙과학관	1	유성구 가정동 54-3	임	291.00	291.00	-	
국립중앙과학관	2	유성구 가정동 56-0	답	2,588.00	2,588.00	-	
국립중앙과학관	3	유성구 구성동 3-0	임	93.00	93.00	-	
국립중앙과학관	4	유성구 구성동 15-0	답	2,311.00	2,311.00	-	
국립중앙과학관	5	유성구 구성동 17-1	전	1,438.00	1,438.00	-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1	유성구 구성동 20-2	임	2,865.00	2,865.10	0.10	토지대장면적 반영
대전지방기상청	6	유성구 구성동 20-1	임	41,099.40	41,099.40	-	
한국수력원자력	1	유성구 장동 25-18	임	2,468.60	2,468.60	-	
한전원자력연료(주)	1	유성구 덕진동 1-6	잡	34.00	34.00	-	
한전원자력연료(주)	2	유성구 덕진동 2-8	전	341.00	341.00	-	
한전원자력연료(주)	3	유성구 덕진동 261-6	잡	5,619.00	5,619.00	-	
한전원자력연료(주)	4	유성구 덕진동 280	답	50.00	-	-50.00	입주변경 (2011-33, 110705)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한전원자력 연료주	5	유성구 덕진동 281	답	9,088.00	-	-9,088.00	입주변경 (2011-33, 110705)
한전원자력 연료주	6	유성구 덕진동 산 1	임		8,761.00	8,761.00	입주변경 (2011-33, 110705)
한전원자력 연료주	6	유성구 덕진동 산 2	임	27,616.00	18,055.00	-9,561.00	입주변경 (2011-33, 110705)
한전원자력 연료주	7	유성구 덕진동 산 9-1	임	47,768.00	36,921.00	-10,847.00	입주변경 (2011-33, 110705)
한전원자력 연료주	8	유성구 덕진동 산 31-1	임	22,353.00	-	-22,353.00	입주변경 (2011-33, 110705)
한전원자력 연료주	9	유성구 덕진동 산 31-5	임	694.00	-	-694.00	입주변경 (2011-33, 110705)
한전전력 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산 103-17	임	21,894.90	21,894.90	-	
한전전력 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산 103-18	임	24,945.00	24,945.00	-	
한전전력 연구원	3	유성구 문지동 산 103-19	임	1,858.10	1,858.10	-	
한전전력 연구원	4	유성구 문지동 산 103-20	임	49,372.00	49,372.00	-	
한전전력 연구원	5	유성구 문지동 산 103-22	임	43,527.20	43,527.20	-	
(사)한국선급	1	유성구 장동 23-6	임	10,777.20	10,777.20	-	
대전광역시 경제통상 진흥원	1	유성구 장동 23-15	임	5,362.30	3,860.30	-1,502.00	면적정정 (입주변경)
대덕대학	1	유성구 장동 48-5	임	39,092.90	38,475.90	-617.00	(입주변경, 2010.5, '10.01.29)
대덕대학	2	유성구 장동 48-6	임	18,460.30	16,086.00	-2,374.30	(입주변경, 2010.5, '10.01.29)
대덕대학	3	유성구 장동 48-8	임	858.80	858.80	-	(입주변경, 2010.5, '10.01.29)
충남대학교	1	유성구 궁동 220-17	임	1,919.00	1,919.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충남대학교	2	유성구 공동 220-18	임	61,543.00	61,543.00	-	
충남대학교	3	유성구 공동 220-53	임	74,919.00	74,919.00	-	
충남대학교	4	유성구 공동 220-21	임	12,826.00	12,826.00	-	
충남대학교	5	유성구 공동 220-29	임	22,263.00	22,263.00	-	
충남대학교	6	유성구 공동 220-42	임	34,891.00	34,891.00	-	
충남대학교	7	유성구 공동 220-48	임	62,960.00	62,960.00	-	
충남대학교	8	유성구 공동 242-2	임	15,926.00	15,926.00	-	
충남대학교	9	유성구 공동 242-15	임	41,064.00	41,064.00	-	
충남대학교	10	유성구 공동 산 14-3	임	1,587.00	1,587.00	-	
충남대학교	11	유성구 공동 산 27-8	임	496.00	496.00	-	
충남대학교	12	유성구 어은동 216-2	임	3,036.00	3,036.00	-	
충남대학교	13	유성구 어은동 216-3	임	31,295.00	31,295.00	-	
충남대학교	14	유성구 어은동 216-5	임	8,230.00	8,230.00	-	
충남대학교	15	유성구 어은동 216-7	임	7,276.00	7,276.00	-	
충남대학교	16	유성구 어은동 49	임	108,120.10	108,120.10	-	
한국과학 기술원	1	유성구 어은동 47	임	91,905.20	91,914.10	8.90	토지대상면적 반영
한국과학 기술원	1	유성구 문지동 103-12	임	43,897.50	43,897.50	-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1	유성구 전민동 461-52	학	11,869.40	11,869.40	-	
대림산업 대덕연구소	1	유성구 신성동 217-4	임	12,136.00	12,136.00	-	
대한항공 기술연구원	1	유성구 전민동 461-3	임	21,783.50	21,783.5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롯데정보통신	1	유성구 장동 24-4	잡	8,464.00	-	-8,464.00	오기제(원형지 →조성지)
쌍용기술 연구소	1	유성구 신성동 산 4-10	임	697.00	697.00	-	
쌍용기술 연구소	2	유성구 신성동 산 4-12	임	397.00	397.00	-	
쌍용기술 연구소	3	유성구 신성동 산 4-13	임	53.00	53.00	-	
쌍용기술 연구소	4	유성구 신성동 산 4-18	임	344.00	344.00	-	
쌍용기술 연구소	5	유성구 신성동 산 4-19	임	2,048.00	2,048.00	-	
쌍용기술 연구소	6	유성구 신성동 101	임	1,069.20	1,069.20	-	
쌍용기술 연구소	7	유성구 신성동 102-3	전	317.00	317.00	-	
쌍용기술 연구소	8	유성구 신성동 93-12	답	48.00	48.00	-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1	유성구 장동 23-2	임	36,233.00	13,833.80	-22,399.20	(입주변경, 2007-24, '07.06.20)
한화석유화학 중앙연구소	1	유성구 신성동 7	임	61,589.50	61,589.50	-	
GS칼텍스 중앙기술 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104-5	임	13,622.00	7,695.00	-5,927.00	(입주변경 2010-21, '10.04.15)
KT유무선 네트워크 연구소	1	유성구 전민동 463-4	임	34,000.00	34,120.10	120.10	토지대장면적 반영
KT유무선 네트워크 연구소	2	유성구 전민동 463-5	임	3,000.00	3,337.10	337.10	토지대장면적 반영
KT&G 중앙연구원	1	유성구 신성동 302-2	전	31,625.00	31,625.00	-	
KT&G 중앙연구원	2	유성구 신성동 302-4	전	25,749.00	25,749.00	-	
KT&G 중앙연구원	3	유성구 신성동 338	전	413.00	413.00	-	
KT&G 중앙연구원	4	유성구 신성동 301-2	답	473.00	473.0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KT&G 중앙연구원	5	유성구 신성동 306-8	답	758.00	758.00	-	
KT&G 중앙연구원	6	유성구 신성동 313-2	답	1,409.00	1,409.00	-	
KT&G 중앙연구원	7	유성구 신성동 302-1	답	312.00	312.00	-	
KT&G 중앙연구원	8	유성구 신성동 294-11	답	99.00	99.00	-	
KT&G 중앙연구원	9	유성구 신성동 339-1	답	61.00	61.00	-	
KT&G 중앙연구원	10	유성구 신성동 339-2	답	131.00	131.00	-	
KT&G 중앙연구원	11	유성구 신성동 343-2	답	152.00	152.00	-	
KT&G 중앙연구원	12	유성구 신성동 300-4	답	153.00	153.00	-	
KT&G 중앙연구원	13	유성구 신성동 353-3	유	526.00	526.00	-	
KT&G 중앙연구원	14	유성구 신성동 308-2	잡	696.00	696.00	-	
KT&G 중앙연구원	15	유성구 신성동 315-8	잡	2,497.00	2,497.00	-	
KT&G 중앙연구원	16	유성구 신성동 420-9	잡	1,744.00	1,744.00	-	
KT&G 중앙연구원	17	유성구 신성동 산19-5	임	2,878.00	2,878.00	-	
KT&G 중앙연구원	18	유성구 신성동 산27-9	임	371.00	371.00	-	
KT&G 중앙연구원	19	유성구 신성동 산27-11	임	88,921.00	88,921.00	-	
KT&G 중앙연구원	20	유성구 신성동 산40-5	임	39,725.00	39,725.00	-	
KT대덕1 연구센터	1	유성구 화암동 62-7	임	6,548.10	6,548.10	-	
KT대덕1 연구센터	2	유성구 화암동 62-8	임	540.90	540.90	-	
KT대덕1 연구센터	3	유성구 화암동 62-9	임	16,956.80	16,956.80	-	
LG화학기술 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104-2	임	73,492.60	73,492.60	-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LG화학기술 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104-3	임	14,928.10	14,928.10	-	
SK대덕 기술원	1	유성구 원촌동 140-3	임	6,900.20	6,900.20	-	
SK대덕 기술원	2	유성구 원촌동 140-4	임	2,499.30	2,499.30	-	
SK대덕 기술원	3	유성구 원촌동 140-5	임	9,556.40	9,556.40	-	
SK대덕 기술원	4	유성구 원촌동 140-6	임	15,169.20	15,169.20	-	
SK대덕 기술원	5	유성구 원촌동 140-7	임	23,468.80	23,468.80	-	
SK대덕 기술원	6	유성구 원촌동 140-8	임	2,056.70	2,056.70	-	
SK대덕 기술원	7	유성구 원촌동 140-9	임	85,882.10	85,882.10	-	
SK대덕 기술원	8	유성구 원촌동 140-11	임	20,321.30	20,321.30	-	
도담시스템즈	1	유성구 전민동 461-44	임	629.00	629.00	-	
도담시스템즈	2	유성구 전민동 461-75	임	6,783.50	6,783.50	-	
디앤티	1	유성구 장동 산 59-10	임	1,111.10	1,111.10	-	
에이팩	1	유성구 화암동 59-11	임	1,034.30	1,034.30	-	
옵트론텍	1	유성구 장동 59-12	임	4,291.30	4,291.30	-	
옵트론텍	2	유성구 장동 59-13	임	4,097.70	4,097.70	-	
제노텍	2	유성구 장동 59-11	임	4,666.90	4,666.90	-	
중앙백신 연구소	1	유성구 화암동 109-3	답	1,478.00	1,478.00	-	녹지구역 (미입주승인)
중앙백신 연구소	2	유성구 화암동 산 21-3	임	346.00	346.00	-	교육연구 (미입주승인)
중앙백신 연구소	3	유성구 화암동 산 22-1	임	2,689.00	2,689.00	-	녹지구역 (미입주승인)
중앙백신 연구소	4	유성구 화암동 산 22-15	임	4,948.00	4,948.00	-	녹지구역 (미입주승인)

기관명	연번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팹트론	1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	2,846.00	2,846.00	-	
한빛레이저	1	유성구 전민동 산 18-96	임	1,770.00	1,770.00	-	녹지구역 (미입주승인)
한스 바이오메드	1	유성구 전민동 461-40	임	5,779.00	5,779.50	0.50	토지대장면적 반영
GS플라텍	1	유성구 전민동 461-39	임	4,924.90	4,924.90	-	

〈표 2〉 대덕연구단지(1지구)내 입주기관 주소 현황(2014년 12월 기준)

연번	구분	기관명	주소
1	정부출연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7
2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 유성구 도룡동 4-27
3	정부출연기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8
4	정부출연연구기관	나노종합팹센터	대전 유성구 구성동 23
5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 유성구 화암동 58-4
6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유성구 어은동 52-11
7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	대전 유성구 장동 171
8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전 유성구 어은동 52-9
9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어은동 52
10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 유성구 장동 71-2
11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 유성구 구성동 19
12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전 유성구 화암동 58-3
13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
14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30
15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천문연구원	대전 유성구 화암동 61-1
16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도룡동 452
17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4
18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유성구 어은동 45
19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전 유성구 장동 171-1
20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장동 100
21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3-1
22	국·공립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원	대전 유성구 화암동 58-2
23	국·공립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유성구 문지동 472
24	국·공립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유성구 구성동 32-2
25	국·공립기관	국제지식재산연구소	대전 유성구 가정동 33
26	국·공립기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27	국·공립기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36-1
28	국·공립기관	대전교육정보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36
29	국·공립기관	대전인재개발원	대전 유성구 장동 25-5
30	국·공립기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 유성구 장동 23-3

연번	구분	기관명	주소
31	국·공립기관	대전지방기상청	대전 유성구 구성동 20-3
32	국·공립기관	범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대전 유성구 화암동 62-1
33	공공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대전 유성구 장동 25-1
34	공공기관	한국수자원연구소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1
35	공공기관	한국조폐공사	대전 유성구 가정동 35
36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2
37	공공기관	한전전력연구원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3-16
38	공공기관	중소기업집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 유성구 장동 23-14
39	입주기업	(주)에스메크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9
40	입주기업	(주)아큐텔스케어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8
41	입주기업	가교테크	대전 유성구 어은동 107-7
42	입주기업	가이아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64
43	입주기업	가인테크	대전 유성구 장동 59-2
44	입주기업	계룡과학	대전 유성구 궁동 431-14
45	입주기업	금광	대전 유성구 화암동 63-9
46	입주기업	금호석유화학중앙연구소	대전 유성구 화암동 57-1
47	입주기업	네오시스 코리아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10
48	입주기업	넥스알	대전 유성구 궁동 433-9
49	입주기업	넷브릿지	대전 유성구 장동 59-8
50	입주기업	뉴텍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9-8
51	입주기업	다우비전	대전 유성구 장동 60-2
52	입주기업	대림산업대덕연구소	대전 유성구 신성동 217-3
53	입주기업	대한항공한국항공기술연구원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1
54	입주기업	덕산 메카시스	대전 유성구 도룡동 4-7
55	입주기업	덕인	대전 유성구 화암동 63-7
56	입주기업	도담시스템즈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31
57	입주기업	동부메탈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3-2
58	입주기업	동일시마즈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3-4
59	입주기업	디아이티그린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5-16
60	입주기업	디엔티	대전 유성구 장동 59-9
61	입주기업	레이칸	대전 유성구 가정동 138

연번	구분	기관명	주소
62	입주기업	레이트론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6
63	입주기업	롯데정보통신(주)	대전 유성구 장동 24-4
64	입주기업	맥스웨이브	대전 유성구 장동 60-2
65	입주기업	브이에스아이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34
66	입주기업	블루코드	대전 유성구 화암동 59-4
67	입주기업	비제이피앤에스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35
68	입주기업	비즈니스전략연구소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3-5
69	입주기업	삼성중공업대덕연구소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3-28
70	입주기업	삼양사중앙연구소	대전 유성구 화암동 63-2
71	입주기업	시물라인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8
72	입주기업	시스템게이트	대전 유성구 장동 59-1
73	입주기업	신코대전지사	대전 유성구 화암동 63-8
74	입주기업	쌍용양회기술연구소	대전 유성구 신성동 100
75	입주기업	썬트렉아이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6
76	입주기업	아스텔	대전 유성구 장동 59-7
77	입주기업	아이쓰리시스템	대전 유성구 장동 60-3
78	입주기업	아이피아이	대전 유성구 장동 59-6
79	입주기업	애경산업	대전 유성구 신성동 217-2
80	입주기업	앤스코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36
81	입주기업	에스케이에너지기술원	대전 유성구 원촌동 140-1
82	입주기업	에이치쓰리시스템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7-27
83	입주기업	에이팩	대전 유성구 화암동 59-6
84	입주기업	엘지데이콤기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34
85	입주기업	엘지생활건강	대전 유성구 장동 84
86	입주기업	엘지화학기술연구원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1
87	입주기업	엠아이티엔터프라이스	대전 유성구 장동 59-6
88	입주기업	옵트론텍	대전 유성구 장동 59-3
89	입주기업	유엠아이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61
90	입주기업	인섹트바이오텍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7
91	입주기업	제노텍	대전 유성구 장동 59-5
92	입주기업	중앙백신연구소	대전 유성구 화암동 59-3
93	입주기업	지스트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7
94	입주기업	지에스칼텍스중앙기술연구소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4

연번	구분	기관명	주소
95	입주기업	지에스플라텍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38
96	입주기업	케이오씨솔루션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15
97	입주기업	케이티앤지중앙연구소	대전 유성구 신성동 302
98	입주기업	케이티중앙연구소 (=KT대덕2연구센터)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3-1
99	입주기업	태광산업중앙연구소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2-3
100	입주기업	텔레옵틱스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66
101	입주기업	파미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63
102	입주기업	파이버프로	대전 유성구 장동 59-4
103	입주기업	펍트론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9
104	입주기업	피알존	대전 유성구 화암동 63-10
105	입주기업	한국타이어중앙연구소	대전 유성구 장동 23-1
106	입주기업	한백전자	대전 유성구 궁동 487-1
107	입주기업	한빛레이저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
108	입주기업	한스바이오메드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37
109	입주기업	한화건설	대전 유성구 신성동 6
110	입주기업	호남석유화학	대전 유성구 장동 24-1
111	입주기업	효성오앤비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68
112	입주기업	휴마스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57
113	교육및연구기관	충남대학교	대전 유성구 궁동 220
114	교육및연구기관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6
115	교육및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대전 유성구 구성동 23
116	교육및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ICC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3-6
117	교육및연구기관	엑스포과학공원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표 3〉 대덕연구단지(1지구)내 입주기관 건축물 현황(2014년 12월 기준)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
1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		3,960.00	705.12	2,376.64	2,523.01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총괄	611.90	1,983.85	10,036.86	13,803.09
		과학기술창조요전당 (게스트하우스)	0.00	303.50	3,783.48	3,783.48
		과학기술창조요전당 (산학연교류센터)	0.00	1,680.35	6,253.38	10,019.61
3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총괄	17,960.00	2,964.35	5,141.67	6,758.17
		산업독성연구센터동	0.00	1,157.51	2,039.21	2,824.97
		화학물질안전 보건센터	0.00	1,259.00	2,554.62	3,385.36
		안전성시험동	0.00	516.60	516.60	516.60
		경비동	0.00	31.24	31.24	31.24
		가스저장소동	0.00	8.74	8.74	8.74
		기숙사	0.00	98.28	98.28	98.28
4	나노종합팹센터			5,242.54	24,035.84	26,271.79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총괄	103,891.30	6,526.47	17,380.64	19,354.51
		A동		2,418.63	7,638.18	8,421.96
		B동		3,844.74	9,270.49	10,460.58
		C동		263.10	471.97	471.97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총괄	63,071.20	6,583.50	22,454.08	28,982.68
		1동		4,502.87	13,163.13	17,903.05
		2동		2,032.43	9,290.95	11,079.63
		부속건축물 (교육연구시설)		48.20	48.20	48.20
7	한국기계연구원	총괄	177,139.55	32,595.23	59,788.36	69,083.87
		실험2동		656.76	538.51	538.51
		안전작업환경동		554.30	554.30	554.30
		기숙사-1		920.31	3,679.51	4,436.56
		연구시험동		3,148.04	4,226.83	4,417.18
		연구동		342.54	433.79	467.29
		연구실험실동		1,269.65	2,683.09	2,954.67
		구조실험실동		1,888.83	2,433.66	2,912.72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기계시스템동		1,343.40	2,586.56	3,375.40
		연구실동		497.56	607.86	607.86
		설계기술개발 지원동		3,790.14	10,973.98	12,667.42
		자기부상열차 차고		441.79	1,097.87	1,097.87
		유공압연구 시험동		2,370.82	4,422.79	4,422.79
		가스터빈 실험실동		317.76	317.76	317.76
		기업기술지원 및 생산시스템 연구시험동		3,871.02	7,767.10	8,984.06
		환경설비 연구시험동		2,190.66	4,187.99	4,811.27
		실험실		96.00	96.00	96.00
		쓰레기분리수 거장		80.00	80.00	80.00
		동력시스템 연구시험동		2,155.68	2,727.96	3,929.44
		주기기성능 실험실동		347.19	365.84	365.84
		초고속회전 기계공동연구 시험동		1,291.76	1,687.90	1,960.80
		연구9, 10동 공용변전실		511.78	511.78	511.78
		메카트로닉스 연구동		3,199.86	6,395.00	8,162.07
		중앙변전실		168.00	168.00	168.00
		대형 Calorimeter 실증설비동		220.00	220.00	220.00
		수소액화 설비동		25.00	25.00	25.00
		고온고압 열공정실험동		896.38	999.28	999.28
		중앙기계실		810.00	1,151.40	1,151.4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정문수위실		86.24	68.63	68.63
		후문수위실		15.24	15.24	15.24
		부속5동		257.32	139.07	139.07
		가스터빈실험실 동 공용변전실		77.76	77.76	77.76
8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총괄	100,509.30	21,471.24	48,455.46	71,917.38
		가스정압실		20.00	20.00	20.00
		기숙사동		316.17	1,088.55	1,212.21
		수위실동		103.62	103.62	103.62
		연구기반설비동		945.66	2,529.57	2,625.08
		연구동		3,458.96	8,295.94	9,321.43
		연구지원동		1,985.28	4,324.98	6,478.62
		전자현미경 특수실험동		524.83	1,163.33	2,233.91
		창고2동		10.00	10.00	10.00
		창고동		15.23	15.23	15.23
		특수설비동		1,452.24	1,605.75	4,238.59
		파워플랜트		1,021.15	1,196.36	1,196.36
		핵융합실험동		7,939.23	14,241.96	20,699.49
		창고3동		472.32	462.50	462.50
		전기실동		532.85	1,226.34	1,226.34
		핵융합첨단 연구개발동		2,673.70	12,171.33	22,074.00
		전기실2동		128.26	128.26	128.26
		가스저장소		32.98	32.98	32.98
9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총괄	100,978.10	16,269.50	46,548.83	53,373.72
		복리후생동(27동)		149.80	271.48	271.48
		폐기물저장고(6동)		40.80	40.80	40.80
		나눔관키슈사(28동)		387.02	1,420.97	1,489.73
		창고(29동)		21.48	21.48	21.48
10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총괄	96,445.10	21,649.24	58,183.86	63,798.37
		실험동-E(37)	121,668.00	234.00	0.00	234.00
		고진공기술 연구동(20)	121,668.00	352.00	0.00	389.84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공동실험 연구동(18)	121,668.00	461.00	0.00	461.00
		그린빌딩(60)		1,151.59	4,956.67	6,184.62
		기계동(2)	121,668.00	847.22	0.00	882.61
		가기개발실험동(22)	121,668.00	290.62	0.00	349.06
		기숙사(66)		614.92	2,282.79	2,497.16
		대기오염실험동(45)	121,668.00	235.13	292.13	292.13
		보급형에너지 자립하우스(62)		92.93	165.18	263.37
		보일러실험동(57)		39.42	39.42	39.42
		설비연구팀 실험실(52)		166.41	166.41	166.41
		성능시험동(65)		225.00	530.03	530.03
		송풍실(51)			9.72	
		수소스테이션(68)		84.96	84.96	84.96
		수위실(61)		72.73	68.10	99.15
		시범빌딩동(64)		418.06	1,520.96	1,859.24
		식당및세미나동(46)		941.42	2,067.83	2,251.32
		실내기후실험동(34)		228.48	641.76	641.76
		실증용축매 제조및연소(43)		100.80		100.80
		실험동-B(26)	121,668.00	56.24		56.24
		실험동-C(38)	121,668.00	54.00		121.50
		에너지자립하우스 상용화모델(76)		103.86	169.16	276.17
		여과포성능 작업실(24)	121,668.00	34.56		34.56
		연결복도 제2-3연구동(40)	121,668.00	104.70		209.40
		연결복도 (제2연구동)(16)	121,668.00	168.96		168.96
		연료전지미니 버스개조시설(69)		84.96	84.96	84.96
		연소시험동(14)	121,668.00	912.00	0.00	1,360.00
		유동층실험동(44)	121,668.00	162.72		488.16
		정구장본부석(53)		44.00	44.00	44.0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제1연구동(6)		1,122.52		3,419.65
		제2연구동(15)	121,668.00	1,152.82		3,666.88
		제3연구동(33)	121,668.00	1,289.82		5,851.71
		중앙연구동(1)		1,416.41	3,738.15	4,007.24
		초에너지 절약형건물(50)		437.65	1,092.37	1,092.37
		티타늄연구동(13)		664.65	877.65	877.65
		폐기물수집장(59)		75.00	75.00	75.00
		폐수처리장(41)		173.94	209.94	209.94
		연소배가스 처리기술종합 실험동(67)		1,390.69	3,574.31	3,725.60
		복합기술 실험동(71)		1,693.33	5,581.33	6,027.47
		산소제조장치 설비동(72)		165.00	165.00	165.00
		엔진시험동(73)		204.47	204.47	204.47
		열병합발전 실험동(74)		55.65	119.66	119.66
		석탄가스화 설비동(75)		100.92	182.52	182.52
		석탄실험동(77)		28.40	38.10	
		석탄고품위화 실험실(78)		117.87	191.08	191.08
		제4연구동		997.62	2,925.98	3,363.49
		첨단에코에너지 연구센터동		2,279.79	9,445.44	10,400.00
		FANROOM		29.63	29.63	29.63
		중앙연구동(1) 부속실험동		36.90	36.90	36.90
		폐수처리장(82)		220.25	504.93	504.93
11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총괄	88,849.90	12,707.54	33,100.59	40,466.95
		방사능방재센터		372.13	1,053.55	1,377.90
		방사선환경 기술지원동		835.94	2,343.08	3,154.43
		본관동		5,687.89	16,153.36	20,213.4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교육훈련동		1,298.20	4,622.91	5,666.88
		기술평가동		2,704.51	5,724.59	6,276.20
		차고동		201.60	201.60	201.60
		국제원자력 안전학교동			2,162.72	2,737.76
		시뮬레이터동		688.39	838.78	838.78
		중앙측정소		50.72	50.72	50.72
		경비실		69.56	69.56	69.56
		시료회화실 및 운동시설			237.63	237.63
		휴게실			38.88	38.88
		폐기물분리수 거장동		82.08	82.08	82.08
12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	주건축물 (교육연구시설)	6,708.40	1,347.60	3,209.15	4,203.89
		부속건축물 (교육연구시설)		26.70	26.70	26.70
13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총괄	233,993.60	39,656.37	123,878.16	158,492.12
		연구생산집적시설 융합기술생산센터		5,687.55	15,556.05	23,039.11
		코파일럿차량 기능실험동		105.00	105.00	105.00
		연구생산집적 시설경비실		9.60	9.60	9.60
		경비초소		14.20	11.92	11.92
14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총괄	147,134.40	28,026.18	56,300.56	63,359.67
		강당및박물관		1,240.24	2,522.34	2,522.34
		부속건축물1		76.03	76.03	
		중앙연구동 외 부속13동		6,233.54	14,253.36	17,797.26
		활용연구동 외 부속1동		2,856.55	4,003.82	4,131.98
		광물분석연구동		1,345.03	2,860.59	2,860.59
		연구동		835.50	2,462.40	2,635.20
		지질표본관		1,086.24	1,841.91	2,480.58
		양광실험동		282.00	464.00	464.0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망간단괴시험동)				
		시료보관창고동		298.02	298.02	298.02
		심해저망간단괴 제련연구동		162.00	162.00	162.00
		시료관리동		3,015.45	3,089.60	3,089.60
		창업지원연구동		262.00	262.00	262.00
		합성실험실		262.28	322.96	322.96
		폐수처리시설동		267.66	379.08	379.08
		자원시스템연 구동		583.23	1,655.64	1,655.64
		제2연구동		866.60	2,525.85	2,525.85
		양광시스템성능 시험동		34.00	102.00	102.00
		지진연구동		1,258.02	3,046.04	3,282.85
		희유금속파일럿동		572.75	1,699.77	1,699.77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시험동		665.94	989.42	989.42
		교육훈련센터		1,419.63	3,054.66	3,163.28
		해저코어센터		1,514.48	2,343.26	2,343.26
		변전실동		127.41	125.31	125.31
		시료파분쇄장창고		116.41	116.41	116.41
		수위실		89.01	110.43	110.43
		심해저망간단괴 제련시험동		117.09	117.09	117.09
		KIGAM 직장어린이집		411.54	654.77	702.84
		녹색기술연구동		2,148.21	6,879.29	9,019.92
15	한국천문연구원	총괄	46,523.90	8,088.63	16,051.67	18,760.16
		천문관측소, 사무실, 관측소동		1,281.01	2,167.75	2,480.13
		가설연구실동		390.00	390.00	390.00
		강당, 식당동	26,160.70	698.45	1,146.33	1,226.38
		연구, 행정동		2,271.58	4,316.41	5,726.31
		기숙사동		427.02	1,150.71	1,278.42
		가스정압실	26,160.70	6.00	6.00	6.0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안내동	26,160.70	49.30	46.34	46.34
		소형명원경개발동		495.02	494.25	494.25
		연구205동		176.00	172.25	172.25
		VLBI연구센터동		2,252.78	6,108.64	6,907.35
		우주감시센터		41.47	32.74	32.74
		파고라		20.25	20.25	20.25
		시설창고		49.80	49.80	49.80
		시설창고-2	46,523.90	35.00	35.00	35.00
16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총괄	230,278.00	39,139.16	74,321.16	94,396.25
		1동				10,600.52
		영유아보육센터		587.45	565.97	589.51
		2동		2,252.84	4,624.03	6,311.71
		3동		1,482.38	2,499.26	2,940.30
		8동	436,957.00	2,002.05	4,072.77	4,072.77
		11동		259.20	259.20	259.20
		12동		891.47	1,610.00	2,039.82
		14동		2,319.30	4,347.30	4,877.90
		15동		2,006.40	6,090.00	6,090.00
		24동		30.24	30.24	30.24
		29동		103.96	103.96	103.96
		31동		3.24	3.24	3.24
		32동		67.24	67.24	67.24
		33동		2,253.60	4,430.88	6,719.94
		35동		60.48	60.48	60.48
		잔향실(48동)		383.10	381.85	553.35
		52동		42.84	42.84	42.84
		공작실		924.71	1,067.51	1,067.51
		기술지원동		1,281.82	3,732.48	4,976.64
		전자파측정실	11,442.00			385.80
		교육연구시설		169.00	169.00	169.00
		대구경광학 가공실(56동)		620.52	797.68	797.68
산학연협력 지원시설동		1,210.04	2,976.19	3,506.77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시설안전계측 연구동		2,329.40	4,859.74	6,511.14
		역사관및불용 장비창고(57동)		174.97	174.97	174.97
		인증표준물질 (CRM)동		2,048.98	4,771.99	6,048.21
		전자파이외 시험장창고(55동)		32.00	32.00	32.00
		제2기계실		326.96	273.00	273.00
		수소환경시험동		202.00	266.00	266.00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연구교류자원동		2,126.60	4,674.03	5,513.40
		인체역학측정 복합시설		835.30	1,050.40	1,050.40
		우주광학동	227,017.00	185.84	185.84	185.84
		지원시설동		971.00	2,461.44	2,576.94
		선형가속기시험동		15.20		647.33
		고전압시험동		659.00	659.00	659.00
		유량A동		1,028.68	933.60	1,458.07
		유량B동		589.34	1,036.90	1,036.90
		첨단산업 측정 인증동		2,186.26	3,013.04	9,438.0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학교연구교류자원동 경비실		21.61	15.73	15.73
		수위실		63.62	42.30	42.30
		변전실		73.71	73.71	73.71
		창고(폐기물보관소)		18.00	18.00	18.00
		17	한국한의학연구원	총괄	46,622.30	7,077.35
본관동				1,889.88	4,682.21	5,217.11
기숙사동				433.17	1,299.51	1,299.51
연구동				2,553.39	8,181.62	10,249.76
동물시험동				884.53	888.05	1,744.64
표준센터동				1,316.38	4,153.17	4,153.17
경비실동				21.18	21.18	21.18
시약창고동				24.00	24.00	24.0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위험물저장소동		30.10	30.10	30.10
		폐기물고반소		25.92	25.92	25.92
		위험물저장소		48.60	48.60	48.60
18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총괄	243,231.94	53,090.61	93,727.52	109,379.62
		위성활용협력센터		2,626.98	7,022.52	7,765.60
		추진공급계 및 터보펌프대형상사 시험설비동		2,240.61	5,181.06	5,828.78
		BST시험 및 부대설비동		215.95	152.29	152.29
19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총괄	119,714.85	26,127.40	37,877.03	41,610.43
		추진기연구동(C동)		434.38	1,008.49	1,008.49
		해양시스템 연구동(B동)		1,157.06	3,339.14	3,791.64
		선형추진 연구동(A동)		2,474.30	4,411.11	5,390.71
		연구시설동		1,497.60	1,497.60	1,497.60
		예인수조동		6,158.15	6,158.15	6,212.12
		해양공학 연구동(D동)		5,243.85	5,913.94	7,179.23
		후생관(H동)		552.62	680.41	732.25
		심해저집광 시험동(E동)		396.00	396.00	396.00
		해양안전방재 연구동(F동)		1,953.18	5,514.40	5,514.40
		해양안전방재 실험동(G동)		1,311.61	1,488.15	1,488.15
		테니스장 대기실		46.00	76.90	76.90
		빙해수조시험 연구동(I동)		2,480.44	2,792.67	2,792.67
		대형기체이전 터널시험연구동(J동)		2,642.24	3,859.87	4,790.07
		경비실동		47.60	41.70	41.70
		변전실동		26.00	261.00	261.00
해양CCS안정성 실증실험동		437.50	437.50	437.5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연결복도		141.00	241.80	241.80
		모형창고		663.12	663.12	663.12
		목재창고		162.00	162.00	162.00
		복도		113.94	113.94	113.94
		해양장비창고동		84.00	84.00	84.00
		시설지원창고동		85.00	85.00	85.00
20	한국화학연구원	총괄	167,234.20	32,554.36	79,108.74	91,209.47
		제1연구동	0.00	2,282.12	6,605.47	6,892.81
		제2연구동	0.00	1,773.23	5,122.36	5,522.56
		제3연구동	0.00	2,886.43	8,296.25	10,569.95
		종합창고	0.00	660.00	660.00	660.00
		행정동	0.00	2,690.32	4,833.89	5,004.58
		시험생산동	0.00	2,066.76	5,325.76	5,325.76
		소동물연구동	0.00	860.08	909.78	1,159.46
		안전성연구동	0.00	1,705.69	5,195.79	6,359.16
		농약활성 제1동		3,053.66	3,575.96	4,379.71
		공작동		633.82	630.00	630.00
		폐수처리장		300.00	59,052.00	756.18
		기숙사 1동		601.46	2,338.85	2,434.01
		수위실동		60.00	60.00	60.00
		의약활성 연구동		838.52	2,324.13	2,582.95
		신물질 연구동		1,582.10	4,683.37	4,926.82
		기숙사 초소		2.85	2.85	2.85
		하천 초소		2.68	2.68	2.68
		사료창고		35.75	35.75	35.75
		소각실		38.53	38.53	38.53
		기숙사 2동		765.94	2,307.82	2,755.67
		농약활성 제2동	169.50	169.50	169.50	169.50
		자재 창고동		333.84	331.20	331.20
		위험물창고		108.16	99.00	99.00
		안전성연구센터		4,995.98	13,463.01	17,388.94
		종합분석지원동		1,915.90	5,532.43	6,058.03
다목적시험 생산연구동		1,539.21	3,978.87	4,663.34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바이러스시험 연구동		638.02	1,994.97	2,400.03
21	기초과학연구원		125.95	18,906.16	40,182.08	52,794.71
22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중부분원	총괄	4,959.00	1,092.80	2,532.53	3,312.09
		제A동	4,959.00	694.77	1,738.50	2,404.61
		시험동		398.03	794.03	907.48
23	국립문화재연구소	총괄	32,626.00	5,168.40	14,654.49	19,149.13
		국립문화재연구소		1,721.90	4,863.80	6,744.90
		중앙매장문화재 보관센터		1,040.36	2,759.46	3,577.16
		문화재연구소 연구동		265.70	807.60	984.40
		보존과학센터		2,105.96	6,189.15	7,808.19
		경비동		34.48	34.48	34.48
24	국립중앙과학관	총괄	173,016.70	17,147.37	31,850.35	39,499.14
		국립중앙과학관		13,794.73	24,141.84	30,517.00
		과학캠프관		729.08	1,858.67	1,971.15
		기숙사		198.30	367.74	367.74
		과학기술전시 체험센터		2,193.78	5,484.80	6,278.21
		관람객간이식당 및 중식공간		429.79	365.04	365.04
		부속 제1동		8.00	8.00	8.00
		부속 제2동		8.00	8.00	8.00
25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총괄	69,320.60	7,437.55	15,454.80	18,867.82
		교육연구시설동			7,587.80	9,484.75
		A동		427.49	1,235.81	1,235.81
		B동		476.99	1,578.73	1,578.73
		C동		560.64	1,650.76	2,171.2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56.10	156.10
		수위실				
26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괄	13,811.10	2,271.18	5,218.42	6,334.27
		교육연구시설 등		1,613.70	3,997.30	5,113.15
		실험실동		168.00	336.00	336.0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생물안전3등급		489.48	885.12	885.12
		가스저장고		23.18	23.18	23.18
27	대전교육과학 연구원	대전교육과학 연구원	33,058.50	2,745.54	9,920.56	11,852.56
		비가림시설		206.06	206.06	206.06
28	대전교육정보원		16,724.80	3,501.84	10,958.40	15,996.08
29	대전인재개발원		39,947.30	3,317.16	7,998.58	8,575.25
30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17,504.30	1,634.97	3,748.45	4,515.54
31	대전지방기상청		10,608.50	818.16	1,991.92	2,219.02
32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114,120.40	10,510.53	33,178.29	40,105.62
33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총괄	62,898.00	10,878.94	25,784.30	36,328.25
		본관동		2,443.25	7,630.55	13,879.57
		후생복지동		807.39	788.58	1,447.91
		정비연구동		2,435.88	5,485.51	5,614.61
		방폐물연구동		1,640.19	4,482.68	6,106.58
		실증실험동		583.53	624.64	624.64
		PSV성능시험동		257.12	307.08	358.56
		창조동		2,658.00	5,124.97	6,212.72
		야간연구동		353.57	1,340.29	2,083.66
		경비동		78.12	50.75	50.75
		테니스장관리실		36.55	36.55	36.55
경비실		34.77	34.77	34.77		
34	한국수자원연구소	총괄	83,106.10	18,044.25	30,899.34	35,718.81
		유속발생 시험기동		165.00	165.00	165.00
		연구실험동		3,817.38	6,001.44	9,641.49
		교육연수동		2,146.65	2,886.84	2,886.84
		유량계검교정 시스템동		2,583.10	2,583.10	2,583.10
		대형원심모형 시험기동		1,677.01	2,615.11	2,743.21
		교육연구시설		5,474.60	10,185.36	11,236.68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식당동		846.23	1,643.50	1,643.50
		생활관		1,333.88	4,818.99	4,818.99
35	한국조폐공사	총괄	94,697.60	10,670.63	19,705.54	22,486.97
		연구, 본관, 별관동			14,014.89	16,557.10
		휴게실동		6.25	6.25	6.25
		제7동		981.68	1,481.93	1,481.93
		화폐박물관		298.08	2,204.93	2,348.15
		폐수처리장		125.00	125.00	191.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47.13	666.36	696.36
		온실		140.04	212.04	212.04
		체육관동		994.14	994.14	994.14
		주택1		41.98	41.98	41.98
		주택2		66.09	66.09	66.09
		주택3		140.42	140.42	140.42
		주택4		35.26	35.26	35.26
		수위실		67.20	67.20	67.20
		3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건축물 (교육연구시설)	66,113.30	10,994.01
교육연구시설				103.74	103.74	103.74
시험동				253.50	392.86	392.86
부속건축물제1동				1,455.37	4,326.39	4,326.39
37	한전전력연구원	총괄	261,391.90	38,048.79	75,637.60	83,344.15
		연구동(1동)		13,123.77	32,732.36	35,558.60
		사무동(2동)		3,552.80	5,187.63	6,155.31
		야간연구시설(4동)		1,434.03	2,745.43	2,919.10
		연소실험동(11동)		2,016.00	2,400.00	2,400.00
		일반실험동(17동)		2,799.69	3,088.53	4,054.35
		환경실험동(18동)		1,570.20	2,145.23	2,145.23
		비파괴평가 연구동(21동)		2,066.12	2,721.40	2,721.40
		열유체실험실(22동)		49.29	49.29	49.29
		원자력재료 시험동(23동)		540.00	540.00	540.0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진동대 및 전단 시험동(24동)		747.72	779.22	779.22
		위성통신운영 센터(25동)		203.58	401.76	401.76
		초전도회전체 시험실(26동)		175.55	172.80	230.40
		골프연습장(27동)		127.70	106.58	106.58
		방사화학및MDC 성능평가시험동(28동)		706.78	1,077.50	1,368.31
		전력벤처기업 육성센터(29동)		638.08	1,010.15	1,010.15
		전력량계실증 시험장(30동)		364.00	515.20	515.20
		250kw급 연료전지시험동(31동)		1,316.09	1,871.35	1,871.35
		IGCC 가스터빈 연소시험동(34동)		535.72	658.94	658.94
		초전도플라이휠 시험동(35동)		429.84	831.46	920.92
		제2연구동		5,471.83	16,602.77	18,938.04
		후생동(3동)	261,391.90	0.00	2,105.98	2,174.02
		공작창(5동)	261,391.90	0.00	2,318.88	2,430.90
		중앙기계실(6동)	261,391.90	0.00	801.90	2,109.60
		경비실(7동)	261,391.90	0.00	262.30	262.30
		운동부대사설(8동)	261,391.90	0.00	114.82	114.82
		스탠드(9동)	261,391.90	0.00	152.00	152.00
		폐수처리장(10동)	261,391.90	0.00	35.25	203.14
		석탄저장고(12동)	261,391.90	0.00	375.00	375.00
		온실(13동)	261,391.90	0.00	173.50	173.50
		압축공기실(14동)	261,391.90	18.00	0.00	18.00
		미분탄기실(15동)	261,391.90	144.00	144.00	144.00
		취수조실험실(16동)	0.00	0.00	232.00	232.00
		랜싱실험실(20동)	261,391.90	0.00	250.00	250.00
		가스저장소(33동)	0.00	168.36	168.36	168.36
		공동실험주택동	0.00	218.41	271.33	489.36
		단독실험주택동	0.00	126.87	213.97	213.97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S1시험동 고압가스시설 및 저장소	0.00	82.08	82.08	82.08
38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11,578.99	2,312.93	9,695.29	15,033.70
39	(주)에스메크	주건축물	1,653.00	330.39	962.18	1,289.35
		부속건축물(실험실)				24.18
		부속건축물(펌프실)				4.39
40	㈜아큐젠헬스케어	총괄	11,563.30	2,525.26	9,557.82	10,501.74
		벤처전용관		1,683.46	7,844.32	8,788.24
		PILOT PLANT		755.41	1,627.11	1,627.11
		압축공기실		12.25	12.25	12.25
		폐수처리장		40.26	40.26	40.26
		위험물저장창고		33.88	33.88	33.88
41	가교테크		228.30	135.91	493.84	596.56
42	가이아	총괄	7,821.20	1,510.17	2,490.29	2,490.29
		본관동		412.50	1,164.12	1,164.12
		연구실험동		1,040.51	1,269.01	1,268.81
		창고동		57.16	57.16	57.16
43	가인테크		4,257.20	661.80	3,279.00	3,946.80
44	계통과학			132.80	398.39	448.22
45	금광		2,561.70	510.74	1,459.04	3,299.84
46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총괄	34,831.90	8,910.35	18,280.59	21,853.55
		연구동(A)		3,048.79	6,314.34	7,867.41
		연구동(B)		1,580.39	4,579.96	6,360.54
		실험연구동(C)		1,994.78	2,969.80	3,104.80
		제2가공동		2,260.40	4,520.80	4,520.80
		창고(D)		72.00	72.00	72.00
		시약창고(G)		108.00	108.00	108.00
		봄베창고(H)		25.00	25.00	25.00
		경비실(I)		19.80	19.80	19.80
		폐수처리장		106.92	106.92	106.92
		식당동(K)		894.00	1,158.12	1,158.12
		위험물창고(J)		57.00	57.00	57.00
		창고(L)		48.00	48.00	48.0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47	네오시스 코리아		1,653.00	482.31	1,088.89	1,947.32
48	넥스알		234.10	139.39	519.04	654.71
49	넷브릿지		3,240.40	677.01	1,601.23	1,887.80
50	뉴텍		4,467.00	2,698.04	7,846.50	13,812.00
51	다우비전		3,063.20	607.72	1,105.22	1,344.08
52	대림산업 대덕연구소	총괄	79,105.40	11,106.96	23,754.21	30,515.08
		대림산업연구소		9,946.80	21,292.47	27,060.90
		환경실험실동		1,105.68	2,287.82	3,280.35
		가스용기보관소		54.48	54.48	54.48
53	대한항공한국항공 기술연구원	총괄	150,888.80	3,067.57	10,168.46	12,828.92
		기숙사동		725.37	3,186.77	3,776.03
		연구동		2,342.20	6,981.69	9,052.89
54	덕산 메카시스			845.03	2,260.71	2,409.37
55	덕인		3,153.60	561.38	1,953.96	3,296.98
56	도담시스템즈		22,330.90	1,852.80	4,394.91	4,394.91
57	동부메탈	총괄	98,704.10	14,511.68	20,348.01	21,879.44
		본관동		2,769.19	7,496.75	8,238.32
		POWER PLANT		1,284.01	1,284.01	1,284.01
		수위실		20.36	20.36	20.36
		폐수처리장		68.74	68.74	68.74
		PILOT PLANT		3,660.80	4,769.57	5,048.93
		온실실험동1		1,056.48	1,056.48	1,242.98
		대온실동		4,017.60	4,017.60	4,017.60
		제제실동		850.00	850.00	850.00
		온실실험동2		712.50	712.50	1,036.50
		위험물저장소		72.00	72.00	72.00
58	동일시마즈		395.10	235.60	787.15	1,022.17
59	디아이티그린		1,732.70	1,372.70	9,955.72	15,472.74
60	디앤티		5,488.70	997.61	2,891.21	3,205.00
61	레이칸	총괄	6,195.00	1,236.44	5,284.72	8,097.50
		1동		746.84	2,190.12	4,201.34
		2동		489.60	3,084.88	3,896.20
		휴게실		9.72	9.72	9.72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62	레이트론	총괄	1,653.00	488.66	1,681.02	2,023.02
		A동		336.33	1,127.75	1,469.75
		C동		152.33	553.27	553.27
		B동		9.45	9.45	9.45
63	롯데정보통신(주)		6,957.70	2,084.46	4,038.11	4,038.11
64	맥스웨이브		3,063.20	607.72	1,105.22	1,344.08
65	브이에스아이		2,847.60	568.11	1,120.59	1,120.59
66	블루코드			649.00	1,401.00	1,527.13
67	비제이피앤에스	총괄	4,776.30	1,427.80	1,683.03	1,683.03
		사무연구동		399.67	397.86	397.86
		연구실험동		825.19	1,046.69	1,026.79
		연구실험동2		183.04	238.48	238.48
		공기압축동		19.90	19.90	19.90
68	비즈니스 전략연구소			126.61	187.29	316.68
69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	총괄	82,644.60	17,197.89	23,269.70	27,211.35
		예인수조실험동		11,270.59	11,952.76	13,467.58
		정보네트워크 연구동		1,115.30	5,235.23	6,955.77
		제품연구동		3,173.65	3,362.80	4,010.80
		향온향습환경 실험실		101.78	101.78	101.78
		화학위험물 저장창고		352.66	337.50	337.50
		메카트로실험실		213.75	202.50	202.50
		경비실		94.21	75.49	75.49
		일반및재활용 폐기물보관창고동		56.90	56.90	56.90
		10동 교육연구용 자재보관창고		29.15	29.15	29.15
		조례대		21.00	21.00	21.00
70	삼양시중양연구소	총괄	62,566.20	10,147.00	26,150.08	29,283.77
		1동			14,678.80	16,860.31
		2동		1,333.36	3,530.98	3,530.98
		3동			720.15	1,406.44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4동			1,855.65	1,855.65
		5동			2,380.05	2,645.94
		6동	62,566.20	53.18	53.18	53.18
		7동	62,566.20	49.80	49.80	49.80
		8동		1,336.14	26,150.08	2,881.47
		연구소1		17.00	17.00	17.00
		연구소2		12.16	12.16	12.16
		연구소3		22.75	22.75	22.75
71	시물라인		3,252.60	649.09	1,493.53	1,493.53
72	시스템게이트		2,812.90	536.76	1,063.20	1,357.41
73	신코대전지사		2,576.40	384.26	1,129.08	1,300.84
74	쌍용양회 기술연구소	총괄	61,690.50	7,233.33	14,207.03	17,292.41
		가동		1,690.59	3,018.65	4,358.51
		나동		2,415.96	5,498.28	6,692.92
		다동		195.00	195.00	195.00
		라동		486.85	1,888.96	2,135.60
		마동		210.32	254.32	254.32
		바동		882.00	882.00	882.00
		사동		1,170.03	2,329.82	2,774.06
		아동		49.71	49.71	49.71
		자1동		6.48	6.48	6.48
		자2동		5.20	5.20	5.20
		차동		23.12	23.12	23.12
75	셋트렉아이	주건축물 (교육연구시설)	3,943.90	778.49	2,837.91	3,042.39
		부속건축물		18.00	18.00	18.00
76	아스텔		1,716.50	329.93	324.36	657.52
77	아이쓰리시스템		3,078.90	622.16	1,766.80	2,223.22
78	아이피아이		1,715.80	514.34	1,092.94	1,312.12
79	애경산업	총괄	31,354.50	5,157.56	15,171.33	17,161.39
		연구소		80.00	80.00	80.00
		창고		72.00	72.00	72.00
		본관동		3,882.64	13,439.15	15,380.6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PP-2동		244.72	244.72	244.72
		PP-1동		878.20	1,335.46	1,384.06
80	앤스코		6,490.80	1,107.85	1,696.63	1,727.83
81	에스케이 에너지기술원	총괄	410,559.60	61,888.05	131,095.17	153,423.23
		옥내위험물저장소(3)		750.00	750.00	750.00
		에너지실험동		378.00	528.33	528.33
		제2후생동		1,143.89	3,945.70	4,932.95
		28, 29, 30동		869.42	2,783.99	2,783.99
		1.행정동		3,176.98	7,977.12	8,729.97
		11.정문안내소		70.83	70.83	70.83
		13B.위험물 옥내 저장소		657.00	657.00	657.00
		15A.옥외저장소		27.00	27.00	27.00
		17.폐수처리동		461.28	461.28	461.28
		19B.기숙사		604.96	1,755.67	2,562.02
		19C.시험공작동		1,040.10	1,896.04	1,896.04
		2.SPINE (연결통로)		538.80	1,267.70	1,267.70
		2.연구동-1		1,506.84	4,719.42	6,541.29
		2.연구동-2		1,506.84	4,719.42	6,562.57
		2.연구동-3		3,254.91	11,006.43	14,229.84
		22A-3후생동		213.27	192.00	192.00
		23B관람석		258.75	258.75	258.75
		2A.SPINE (1열-3열)		582.10	932.02	932.02
		2C.연구동		985.39	1,747.65	1,868.65
		3.후생동		1,394.41	2,356.77	3,451.45
		3A.후생동		440.94	437.34	866.38
		3B.후생동 (내.외반용후생관)		1,060.33	1,010.91	1,486.57
		광학소재실험동		1,251.30	1,251.30	1,251.30
		6.생물공학실증 시험동		4,004.85	4,004.85	4,552.00
		7.엔진시험동		1,378.08	1,368.40	1,663.90
		7A CMS 연구동		522.43	1,044.86	1,044.86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8A.시험공작동		453.25	624.38	624.38
		9.시험생산동		2,046.55	2,121.93	2,121.93
		A-PROJECT동		1,065.37	1,899.10	1,899.10
		BATCH		773.69	2,677.06	2,677.06
		CMS창고		1,007.30	1,930.60	1,930.60
		D/G ROOM		17.60	17.60	17.60
		H2 트레일러동		159.60	159.60	159.60
		HEVB동		1,344.44	3,115.52	3,115.52
		HGBL PLANT		427.12	1,492.06	1,492.06
		SK C&C연구동		3,226.71	11,789.15	14,558.35
		고분자개발 가공시험동		3,100.95	3,553.74	3,720.26
		기숙사		1,505.81	4,676.83	5,810.53
		소재실증시험동		1,451.51	1,451.51	1,451.51
		수소충전소(제어동)		238.32	304.56	304.56
		시료배 합동		448.63	499.08	499.08
		시료배 합동(2)		598.40	598.40	598.40
		시험장(옥외실습장)		50.84	50.84	50.84
		시험장(옥외저장소)		96.00	96.00	96.00
		위험물창고동		840.00	840.00	840.00
		유회유리그동		421.59	418.69	640.16
		중앙에너지 공급동		3,232.92	2,464.89	5,417.64
		창고A		538.46	538.46	538.46
		휴게동		60.70	55.90	55.90
		전기충전소 케노피A동		19.30	19.30	19.30
		전기충전소 케노피B동		17.64	14.28	14.28
		사내보육원		360.88	329.44	329.44
		Green Pol P/P		545.00	677.51	677.51
		CMS 품질시험동		826.34	2,215.11	2,215.11
		그린에너지 LAB동		334.84	957.40	957.40
		그린에너지 시험동		686.10	680.40	680.40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2차에너지공급동		814.65	809.90	809.90
		Battery 평가동		1,332.87	3,783.56	3,783.56
		Battery 연구동		2,834.76	13,584.60	15,522.09
		제2기숙사동		2,279.47	8,140.08	9,005.76
		61.후문경비실		47.76	42.23	42.23
		Green Pd 연구동		310.57	608.64	608.64
		Battery 화성동		293.41	569.28	569.28
		CHILLER RM		41.15	41.15	41.15
		수소충전소(장비동)		141.60	141.60	141.60
		수소충전소(캐노피)		20.00	20.00	20.00
		4.Battery평가동 펌프실		36.00	36.00	36.00
		제2기숙사연결통로		67.59	67.59	67.59
		주차캐노피		6.75	6.75	6.75
82	에이치쓰리시스템		375.50	225.00	750.71	975.71
83	에이팩	총괄	16,442.20	2,591.36	5,451.81	5,806.23
		시험공장동1		1,367.50	2,760.57	2,849.62
		시험공장동2, 연구동		1,223.86	2,691.24	2,956.61
84	엘지데이콤 기술연구원	총괄	5,954.93	15,651.35	19,341.58	
		연구시설		5,397.15	13,717.11	17,119.48
		기숙사		522.82	1,899.28	2,187.14
		수위실		34.96	34.96	34.96
85	엘지생활건강	총괄	40,252.00	9,315.17	28,544.91	29,951.95
		고분자연구소 등	40,252.00	8,271.34	23,482.59	24,889.63
		이노베이션센터		963.83	4,982.32	5,062.32
		위험물저장소		80.00	80.00	80.00
86	엘지화학 기술연구원	총괄	197,803.20	48,014.34	123,911.76	162,787.51
		동력동		3,353.49	4,584.10	4,664.70
		면회실		62.56	58.91	58.91
		안전동		320.76	320.76	320.76
		연구1동		11,350.58	33,876.76	49,079.57
		연구2A동		3,513.67	10,949.80	12,801.93
		연구2동		7,960.63	22,478.65	28,894.33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연구3A동		3,068.99	8,231.85	11,195.09
		온실동		3,116.01	3,116.01	3,683.85
		위험물저장고		549.61	549.61	549.61
		정문수위실	286,223.90	4.59	4.59	4.59
		체육시설		373.41	373.41	373.41
		폐기물집하장		481.57	481.57	481.57
		폐수처리장		499.47	679.47	768.35
		행정, 식당동	286,223.90	5,587.41	12,073.83	22,739.15
		후문수위실	286,223.90	4.59	4.59	4.59
		충방전동		1,043.62	4,157.00	5,196.25
		제2안전동		560.00	560.00	560.00
		연구3동		5,513.20	20,786.04	20,786.04
		비위험물저장고		650.15	624.81	624.81
87	엠아이티 엔터프라이스		1,715.80	514.34	1,092.94	1,312.12
88	옵트론텍		18,343.20	2,762.17	9,173.97	9,588.13
89	유엠아이	주건축물	7,596.10	1,077.01	3,947.15	4,191.35
		부속건축물		23.65	23.65	23.65
90	인섹트바이오텍		4,732.55	943.63	2,463.59	6,015.14
91	제노텍	주건축물	8,967.20	825.30	2,261.95	2,758.17
		부속건축물			49.00	49.00
92	중앙백신연구소	총괄	8,814.40	2,628.90	10,882.11	12,773.16
		가동		413.49	2,180.21	2,604.26
		나동		1,526.77	4,191.87	4,503.87
		다동		36.42	72.84	72.84
		라동		652.22	4,437.19	5,592.19
		바동		5.88	5.88	5.88
		사동		38.95	36.78	36.78
93	지스트		1,427.10	284.25	567.60	916.10
94	지에스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총괄	82,215.80	12,027.17	19,237.64	20,522.14
		PP가공동		922.09	12,655.70	12,655.70
		Utility동		1,020.68	1,173.62	1,255.22
		경비동1		44.97	44.97	44.97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경비동2		14.75	14.75	14.75
		공정동		688.15	1,324.73	1,324.73
		신에너지동		811.74	1,459.74	1,459.74
		연구2, 3동		2,197.21	4,160.34	5,051.26
		운동장부속동		396.07	753.28	753.28
		자료실		354.91	676.60	676.60
		행정동		4,036.21	5,790.41	6,102.39
		연료유평가동 (차대동력계)		610.68	950.50	950.50
		연료전지동		835.03	1,528.44	1,528.44
		가스저장실		14.21	14.21	14.21
		신에너지동부속 2(가스저장실)		56.64	56.64	56.64
		위험물폐기물창고		119.00	119.00	119.00
		위험물저장동2 (윤활류저장고)		45.50	45.50	45.50
		공정동부속 가스저장동		7.26	7.26	7.26
		공정동부속 가스저장동2		15.00	15.00	15.00
		공정동부속창고		6.48	6.48	6.48
		연료유평가동부 속가스저장소		38.64	38.64	38.64
		연료전지동 부속수소가스저장소		83.20	83.20	83.20
		신에너지동부속3		50.00	50.00	50.00
		비상발전기실		59.40	59.40	59.40
		가스저장소		18.00	18.00	18.00
		창고1		17.28	17.28	17.28
		창고2		274.09	274.09	274.09
95	지에스플라텍		5,654.60	920.09	2,101.99	2,101.99
		총괄	1,652.90	490.66	1,308.20	1,650.20
96	케이오씨솔루션	A동		326.88	980.64	1,322.64
		B동		163.78	327.56	327.56
97	케이티앤지	총괄	102,531.00	13,420.71	25,762.07	28,008.46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중앙연구소	14동		600.07	600.07	600.07
		15동		276.69	276.69	276.69
		16동		375.26	375.26	375.26
		경비실	102,531.00	136.32	95.40	95.40
		위험물창고동		176.08	165.60	165.60
		일반시약창고동		176.08	165.60	165.60
		한국인삼연초 연구원		1,832.93	1,889.69	2,021.29
		연구소 등		8,637.20	20,880.57	23,222.35
		항캡슐제조연구동		1,008.15	979.20	979.2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5.00	35.00	35.00
		전기실		72.00	72.00	72.00
98	케이티중앙연구소 (=KT대덕2연구센터)		125.95	18,906.16	40,182.08	52,794.71
99	태광산업 중앙연구소	총괄	47,196.80	5,694.24	12,169.72	14,500.92
		기숙사(2동)		734.38	1,468.75	1,674.25
		연구동(1동)		3,429.68	8,987.11	10,957.61
		식당		673.63	673.63	673.63
		기계실		856.55	1,040.23	1,195.43
100	텔레옵틱스	총괄	3,622.90	912.86	1,998.48	1,998.48
		연구소		339.96	866.75	866.75
		2동		572.90	1,131.73	1,131.73
101	파미		3,208.90	832.70	2,584.85	2,584.85
102	파이버프로		14,329.00	868.95	1,820.03	1,917.57
103	펍트론	주건축물	4,982.90	1,197.32	2,532.67	2,532.67
		부속건축물		76.25	76.25	76.25
104	피알존		2,589.20	505.26	1,387.27	1,937.47
105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36,233.00	9,690.05	17,577.19	23,232.04
106	한백전자		339.10	225.84	1,016.19	1,281.99
107	한빛레이저	총괄	8,785.30	1,703.34	2,950.18	3,840.86
		공작동		356.04	356.04	356.04
		본동		1,099.06	2,107.02	2,998.40
		식당동		248.24	486.42	486.42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108	한스바이오메드		5,304.10	1,451.85	4,297.41	6,066.01
109	한화건설	총괄	211,598.60	29,849.97	44,821.70	48,913.28
		시험공장-2, SUP P/P		3,967.19	3,967.19	3,967.19
		가버너실	211,598.60	10.20	10.20	10.20
		PILOT공실	211,598.60	3,779.50	3,779.50	3,779.50
		동물실험실		84.85	84.85	84.85
		본관동		11,115.16	24,407.00	29,557.08
		연수원	211,598.60	160.99	244.98	244.98
		특수실험동		3,049.79	4,199.68	44,573.84
		폐수처리장	211,598.60	311.04	311.04	498.24
		시험공장-1		5,527.28	5,527.28	5,527.28
		연구시설(창고2)	211,598.60	346.00	346.00	346.00
		4동 일반연구동		2,599.96	4,103.62	4,103.62
		POWER PLANT	211,598.60	1,619.86	1,619.86	1,619.86
		연결통로	211,598.60	581.20	581.20	581.20
		경비실	211,598.60	19.72	11.52	11.52
가스저장소		9.00	9.00	9.00		
110	호남석유화학	총괄	64,730.00	14,609.72	25,037.09	26,945.03
		연구본동 외			6,709.47	7,308.51
		가공연구2동 외			4,998.73	5,293.58
		증축연구동		3,837.09	11,174.50	12,188.55
		실내체육관		1,928.51	2,154.39	2,154.39
		경비실		154.91	137.55	137.55
		가스저장창고		60.96	60.96	60.96
		쓰레기저장고		104.00	104.00	104.00
111	효성오앤비		2,733.30	565.48	1,532.07	1,755.60
112	휴마스		1,485.30	290.80	577.60	577.60
113	충남대학교	신학연교육연구관		3,174.47	13,518.49	14,574.82
		대학본부		1,446.39	3,991.73	4,278.17
114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4동 봉사관		5,411.69	7,130.13	7,130.13
		8동 창업보육센터 (제2관)		1,860.10	5,165.73	5,406.93
		5동 창업보육센터		1,054.34	3,980.64	4,965.1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상면적 (㎡)	연면적(㎡)
		3동 자유관		2,889.45	2,889.45	3,075.74
115	한국과학기술원본원	N28동		951.77	3,061.19	3,415.07
		N27동				
		N22동				
		대전 질환모델 동물센터		1,713.71	4,241.00	4,241.00
		E3 정보전자공학동		8,270.24	27,454.02	30,318.47
		N26동		1,372.34	3,775.98	4,666.29
116	한국과학기술원 ICC	본관동		7,737.62	36,552.75	59,964.19
		진리관T		4,382.50	9,968.30	10,881.90
117	엑스포과학공원	대전 문화산업 진흥원	541,822.70	3,191.49	11,059.12	17,129.82
		관리동 (=벤처타운 종합영상관)		6,303.33	10,993.28	15,095.91

〈표 3〉 대덕연구단지(1지구)내 입주기관 건축물 현황(계속)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1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		17.81	60.02	4	1	○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총괄	30.00	151.80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게스트하우스)	0.00	0.00	14		○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산학연교류센터)	0.00	0.00	5	1	
3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총괄	16.51	28.63			○
		산업독성연구센터동	0.00	0.00	2	1	○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0.00	0.00	2	1	○
		안전성시험동	0.00	0.00	1		
		경비동	0.00	0.00	1		
		가스저장소동	0.00	0.00	1		
		기숙사	0.00	0.00	1		
4	나노종합팹센터				9	1	○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총괄	6.28	16.73			
		A동			6	1	
		B동			5	1	○
		C동			2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총괄	10.44	35.60			
		1동			8	1	
		2동			5	1	
		부속건축물 (교육연구시설)			1		
7	한국기계연구원	총괄	18.40	33.75			
		실험2동			1		
		안전작업환경동			1		
		기숙사-1			5	1	
		연구시험동			2	1	
		연구동			2	1	
		연구실험실동			3	1	
		구조실험실동			2	1	
		기계시스템동			2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연구실동			2		
		설계기술개발지원동			4	1	
		자기부상열차차고			3		
		유공압연구시험동			2		
		가스터빈실험실동			1		
		기업기술지원 및 생산시스템연구시험동			3	1	○
		환경설비연구시험동			3	1	
		실험실			1		
		쓰레기분리수거장			1		
		동력시스템연구시험동			3	1	
		주기기성능실험실동			2		
		초고속회전기계 공동 연구시험동			2	1	
		연구9, 10동 공용변전실			1		
		메카트로닉스연구동			3	1	○
		중앙변전실			1		
		대형 Calorimeter 실증설비동			1		
		수소액화 설비동			1		
		고온고압열공정실험동			2		
		중앙기계실			2		
		정문수위실			1		
		후문수위실			1		
부속5동			2				
가스터빈실험실동 공용변전실			1				
8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총괄	21.36	48.21			
		가스정압실			1		
		기숙사동			4	1	
		수위실동			1		
		연구기반설비동			5	1	
		연구동			3	1	
		연구지원동			3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전자현미경특수실험동			3	1	
		창고2동			1		
		창고동			1		
		특수설비동			2	2	
		파워플랜트			2		
		핵융합실험동			7	2	
		창고3동			1		
		전기실동			3		
		핵융합첨단연구개발동			6	3	○
		전기실2동			1		
		가스저장소			1		
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총괄	16.11	46.10			
		복리후생동(27동)			2		
		폐기물저장고(6동)			1		
		나눔관기숙사(28동)			4	1	
		창고(29동)			1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총괄	22.45	60.33			
		실험동-E(37)	13.11	24.18	1		
		고진공기술연구동(20)	11.44	21.60	1	1	
		공동실험연구동(18)	11.44	21.60	1		
		그린빌딩(60)			5	1	
		기계동(2)	11.44	21.60	2		
		기기개발시험동(22)	11.44	21.60	2		
		기숙사(66)			4	1	
		대기오염실험동(45)			2		
		보급형에너지자립 하우스(62)			2	1	
		보일러실험동(57)			1		
		설비연구팀실험실(52)			1		
		성능시험동(65)			4		
		송풍실(51)				1	
		수소스테이션(68)			1		
수위실(61)			1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시범빌딩동(64)			5	1	
		식당및세미나동(46)			3	1	
		실내기후실험동(34)			4		
		실증용추매제조및연소(43)			1		
		실험동-B(26)	11.44	21.60	1		
		실험동-C(38)			3		
		에너지자립 하우스 상용화모델(76)			2	1	
		여과포성능직업실(24)	11.44	21.60	1		
		연결복도 제2-3연구동(40)			1		
		연결복도 (제2연구동)(16)		21.60	2		
		연료전지미니버스 개조시설(69)			1		
		연소시험동(14)	11.44	21.60	3		
		유동층실험동(44)			3		
		정구장본부석(53)			1		
		제1연구동(6)			3	1	○
		제2연구동(15)	11.44	21.60	3	1	○
		제3연구동(33)	11.44	21.60	4	1	
		중앙연구동(1)			3	1	○
		초에너지 절약형건물(50)			3	1	
		티타늄연구동(13)			2		
		폐기물수집장(59)			1		
		폐수처리장(41)			2		
		연소배가스처리기술 종합실험동(67)			5	1	
		복합기술실험동(71)			5	1	○
		산소제조장치 설비동(72)			1		
		엔진시험동(73)			1		
		열병합발전 실험동(74)			3		
		석탄가스화 설비동(75)			2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석탄실험동(77)			2		
		석탄고품질위화 실험실(78)			3		
		제4연구동			3	1	
		첨단에 코에너지 연구센터동			7	1	○
		FANROOM			1		
		중앙연구동(1) 부속첨터동			1		
		폐수처리장(82)			3	1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총괄	14.30	37.25			
		방사능방재센터			3	1	
		방사선환경기술지원동			4	1	
		본관동			4	1	○
		교육훈련동			4	1	○
		기술평가동			3	1	
		차고동			1		
		국제원자력 인턴학교동			3	1	○
		시뮬레이터동			2		
		중앙측정소			1		
		경비실			1		
		시료회화실 및 운동시설			1		
		휴게실			1		
		폐기물분리수거장동			1		
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주건축물 (교육연구시설)	20.09	47.84	3	1	
		부속건축물 (교육연구시설)			1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	16.95	52.94			
		연구생산집적시설 융합기술생산센터			7	1	
		코파일럿차량기능 실험동				1	
		연구생산집적시설 경비실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경비초소			1		
		총괄	19.05	38.26			
		강당 및 박물관			3		
		부속건축물1			1		
		중앙연구동 외 부속13동			5	1	○
		활용연구동 외 부속1동			2	1	
		광물분석연구동			3		
		연구동			3	1	○
		지질표본관			2	1	
		양광실험동 (망간단괴실험동)			5		
		시료보관창고동			1		
		심해저망간단괴 제련연구동			1		
		시료관리동			2		
		창업지원연구동			1		
		합성실험실			2		
		폐수처리시설동			2		
		자원시스템연구동			3		
		제2연구동			3		
		양광시스템성능 시험동			3		
		지진연구동			3	1	
		희유금속파일럿동			3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실험동			2		
		교육훈련센터			5	1	
		해저코어센터			3		
		변전실동			1		
		시료파분쇄장창고			1		
		수위실			2		
		심해저망간단괴 제련실험동			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KIGAM 직장어린이집			2	1	
		녹색기술연구동			3	1	
15	한국천문연구원	총괄	17.39	34.50			
		천문관측소, 사무실, 관측소동			2	1	
		가설연구실동			1		
		강당, 식당동			3	1	
		연구, 행정동			3	1	
		기숙사동			3	1	
		가스정압실			1		
		안내동			1		
		소형망원경개발동			1		
		연구205동			1		
		VLBI연구센터동			3	1	○
		우주감시센터			1		
		파고라			1		
		시설창고			1		
		시설창고-2	0.08	0.10	1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총괄	17.00	32.27			
		1동			6		○
		영유아보육센터			1	1	
		2동			2	1	○
		3동			3	1	
		8동			2		○
		11동			1		
		12동			2	1	
		14동			3	1	
		15동			4		
		24동			1		
		29동			1		
		31동			1		
		32동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33동			2	1	○
		35동			1		
		잔향실(48동)			1	1	
		52동			1		
		공작실			2		
		기술지원동			3	1	○
		전자파측정실				1	
		교육연구시설			1		
		대구경광학기공실(56동)			2		
		산학연협력 지원시설동			3	1	
		시설안전계측연구동			4	1	
		역사관및 불용 장비창고(57동)			1		
		인증표준물질(CRM)동			3	1	
		전자파야외시험장 창고(55동)			1		
		제2기계실			1		
		수소환경시험동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연구교류지원동			5	1	
		인체역학측정 복합시설			2		
		우주광학동	0.08	0.08	1		
		지원시설동			3	1	
		선형가속기실험동				2	
		고전압실험동			1		
		유량A동			1	1	
		유량B동			2	1	
		첨단산업측정인증동			2	1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연구교류지원동 경비실			1		
		수위실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변전실			1		
		창고(폐기물보관소)			1		
17	한국한의학연구원	총괄	15.18	41.19			
		본관동			3	1	○
		기숙사동			3		
		연구동			5	1	
		동물실험동			1	1	
		표준센터동			3		
		경비실동			1		
		시약창고동			1		
		위험물저장소동			1		
		폐기물고반소			1		
		위험물저장소			1		
		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총괄	21.83	38.53	
위성활용협력센터					3	1	
추진공급계및터보펌프 대형상사시험설비동					3	1	
BST시험 및 부대설비동					1		
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총괄	21.82	31.64			
		추진기연구동(C동)			3		
		해양시스템연구동(B동)			3	1	○
		선형추진연구동(A동)			3	1	○
		연구시설동			1		
		예인수조동			1	1	
		해양공학연구동(D동)			2	1	
		후생관(H동)			2	1	
		심해저집광시험동(E동)			1		
		해양안전방제연구동 (F동)			4		○
		해양안전방제 실험동 (G동)			2		
		테니스장 대기실			2		
빙해수조시험연구동			2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I동)					
		대형캐비테이션 터널시험연구동(J동)			4	1	
		경비실동			1		
		변전실동			1		
		해양CCS안정성 실증실험동			1		
		연결복도			2		
		모형창고			1		
		목재창고			1		
		복도			1		
		해양장비창고동			1		
		시설지원창고동			1		
20	한국화학연구원	총괄	19.47	47.30			
		제1연구동	0.00	0.00	3	1	○
		제2연구동	0.00	0.00	3	1	○
		제3연구동	0.00	0.00	4	1	
		종합창고	0.00	0.00	1		
		행정동	0.00	0.00	2	1	○
		시험생산동	0.00	0.00	4		
		소동물연구동	0.00	0.00	2	1	
		안전성연구동	0.00	0.00	4	1	
		농약활성 제1동			2	1	
		공작동			1		
		폐수처리장			2	1	
		기숙사 1동			4	1	○
		수위실동			1		
		의약활성 연구동			4	1	
		신물질 연구동			4	1	
		기숙사 초소			1		
		하천 초소			1		
		사료창고			1		
		소각실			1		
기숙사 2동			4	1	○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농약활성 제2동		100.00	1		
		자재 창고동			1		
		위험물창고			1		
		안전성연구센터			3	1	
		종합분석지원동			3	1	○
		다목적시험생산연구동			3	1	○
		바이러스시험연구동			4	1	
21	기초과학연구원		15.01	31.90	5	1	
2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원	총괄	22.04	51.07			
		제A동	14.01	35.06	3	1	
		시험동			2	1	
23	국립문화재연구소	총괄	15.84	44.92			
		국립문화재연구소	0.00	0.00	4	1	
		중앙매장문화재 보관센터	0.00	0.00	3	1	○
		문화재연구소연구동	0.00	0.00	4	1	
		보존과학센터	0.00	0.00	4	1	
		경비동	0.00	0.00	1		
24	국립중앙과학관	총괄	9.90	18.40			
		국립중앙과학관			4	1	
		과학캠프관			3	1	
		기숙사			2		
		과학기술전시체험센터			3	1	○
		관람객간이식당 및 중식공간			1		
		부속제1동			1		
		부속제2동			1		
25	국제 지식재산연구원	총괄	10.73	22.29			
		교육연구시설동			3	1	○
		A동			3		○
		B동			4		
		C동			3	1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수위실					
26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괄	16.44	37.78			
		교육연구시설 등			4	1	
		실험실동			2		
		생물안전3등급			2		
		가스저장고			1		
27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8.31	30.01	7	1	
		비가림시설			1		
28	대전교육정보원		20.94	65.52	4	1	
29	대전인재개발원		8.30	20.02	3	1	
30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9.34	21.41	3	1	○
31	대전지방기상청		7.71	18.78	3	1	
32	범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9.21	29.07			
33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총괄	17.30	40.99			
		본관동			5	1	
		후생복지동			1	1	
		정비연구동			5	1	
		방폐물연구동			3	1	
		실증실험동			2		
		PSV성능시험동			2	1	
		창조동			2	1	
		야간연구동			6	1	○
		경비동			1		
		테니스장관리실			1		
		경비실			1		
34	한국수자원연구소	총괄	21.71	37.18			
		유속발생시험기동			1		
		연구실험동			3	1	
		교육연수동			3		
		유량계검교정 시스템동			1		
		대형원심모형			2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시험기동					
		교육연구시설			3	2	
		식당동			3		
		생활관			5		
35	한국조폐공사	총괄	11.27	20.81			
		연구, 본관, 별관동			4	1	
		휴게실동			1		
		제7동			2		
		화폐박물관			2	1	
		폐수처리장			1	1	
		교육연구및복지시설			2	1	
		온실			1		
		체육관동			1		
		주택1			1		
		주택2			1		
		주택3			1		
		주택4			1		
		수위실			1		
3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건축물 (교육연구시설)	16.63	35.89	4	1	○
		교육연구시설			1		
		시험동			2		
		부속건축물제1동			4		
37	한전전력연구원	총괄	14.56	28.94			
		연구동(1동)			4	1	○
		사무동(2동)			3	1	○
		야간연구시설(4동)			3	1	
		연소실험동(11동)			2		
		일반시험동(17동)			2	1	
		환경시험동(18동)			2		
		비파괴평가연구동(21동)			2		
		열유체실험실(22동)			1		
		원자력재료시험동(23동)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진동대및전단시험동 (24동)			2		
		위성통신운영센터(25동)			2		
		초전도회전체시험실 (26동)			1	1	
		골프연습장(27동)			1		
		방사화학및HVDC성능 평가시험동(28동)			2	1	
		전력벤처기업육성 센터(29동)			2		
		전력량계실증시험장 (30동)			2		
		250kw급 연료전지시험동(31동)			2		
		IGCC 가스터빈 연소시험동(34동)			2		
		초전도플라이휠 시험동(35동)			3	1	
		제2연구동			7	1	○
		후생동(3동)		0.80	2	1	○
		공작창(5동)		0.90	2	1	
		중앙기계실(6동)		0.30	1	1	
		경비실(7동)		0.10	1		
		운동부대시설(8동)			1		
		스탠드(9동)		0.10	2		
		폐수처리장(10동)			1	1	
		석탄저장고(12동)		0.10	1		
		온실(13동)		0.10	1		
		압축공기실(14동)	0.01		1		
		미분탄기실(15동)	0.06	0.10	4		
		취수조실험실(16동)			1		
		랜싱실험실(20동)		0.10	1		
		가스저장소(33동)			1		
		공동실험주택동			2	1	
		단독실험주택동			2		
		S1시험동 고압가스시설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및 저장소					
38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19.97	83.73	7	2	
39	(주)에스메크	주건축물	19.99	58.21	3	1	
		부속건축물(실험실)				1	
		부속건축물(펌프실)				1	
40	(주)아큐젠헬스케어	총괄	21.84	82.66			
		벤처전용관			5	1	
		PILOT PLANT			3		
		압축공기실			1		
		폐수처리장			1		
		위험물저장창고			1		
41	가교테크		59.53	168.77	4	1	
42	가이아	총괄	19.31	31.84			
		본관동			3		
		연구실험동			3		
		창고동			1		
43	가인테크		15.55	77.02	5	1	
44	계룡과학				3	1	
45	금광		19.94	56.96	3	1	
46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총괄	25.58	52.48			
		연구동(A)			3	1	
		연구동(B)			3	1	○
		실험연구동(C)			4	1	
		제2가공동			2		
		창고(D)			1		
		시약창고(G)			1		
		봄베창고(H)			1		
		경비실(I)			1		
		폐수처리장			1		
		식당동(K)			2		
		위험물창고(J)			1		
		창고(L)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47	네오시스 코리아		29.18	65.87	3	1	
48	넥스알		59.54	221.71	4	1	
49	넷브릿지		20.89	49.41	3	1	
50	뉴텍		60.40	175.65	3	2	
51	다우비전		19.84	36.08	2	1	
52	대림산업대덕연구소	총괄	14.04	30.03			
		대림산업연구소			5	1	○
		환경실험실동			3	1	
		가스용기보관소			1		
53	대한항공한국항공 기술연구원	총괄	2.03	6.74			
		기숙사동			5	1	○
		연구동			3	1	○
54	덕산 메카시스				3	2	
55	덕인		17.80	61.96	4	2	○
56	도담시스템즈		8.30	19.68	4		
57	동부메탈	총괄	14.70	20.62			
		본관동			4	1	
		POWER PLANT			1		
		수위실			1		
		폐수처리장			1		
		PILOT PLANT			2	1	
		온실실험동1			1	1	
		대온실동			1		
		제제실동			1		
		온실실험동2			1	1	
		위험물저장소			1		
58	동일시마즈		59.63	199.23	4	1	
59	디아이티그린		79.22	574.58	10	4	
60	디앤티		18.18	52.68	3	1	
61	레이칸	총괄	19.96	85.31			
		1동			3	1	○
		2동			7	1	
		휴게실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62	레이트론	총괄	29.56	101.70			
		A동			4	1	
		C동			4		
		B동			1		
63	롯데정보통신(주)		29.96	58.04	2		
64	맥스웨이브		19.84	36.08	2	1	
65	브이에스아이		19.95	39.35	2		
66	블루코드				3	1	
67	비제이피앤에스	총괄	29.89	35.24			
		사무연구동			1		
		연구실험동			2		
		연구실험동2			2		
		공기압축동			1		
68	비즈니스전략연구소				2	1	
69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	총괄	20.81	28.16			
		에인수조실험동			3	1	
		정보네트워크연구동			6	1	
		제품연구동			2	1	
		항온항습환경실험실			1		
		화학위험물저장창고			1		
		메카트로실험실			1		
		경비실			1		
		일반및재활용 폐기물보관창고동			1		
		10동 교육연구용 자재보관창고			1		
		조례대			1		
70	삼양사중앙연구소	총괄	16.22	41.80			
		1동			4	1	○
		2동			3		
		3동			2	2	
		4동			4		
		5동			4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6동	0.08	0.08	1		
		7동			1		
		8동			3		
		연구소1			1		
		연구소2			1		
		연구소3			1		
71	시물라인		19.96	45.92	4		
72	시스템게이트		19.08	37.80	2	1	
73	신코대전지사		14.91	43.82	3	1	
74	쌍용양회기술연구소	총괄	11.73	23.03			
		가동			2	1	○
		나동			3	1	
		다동			1		
		라동			4	1	○
		마동			3		
		바동			1		
		사동			2	1	
		아동			1		
		자1동			1		
		자2동			1		
		차동			1		
75	셋트렉아이	주건축물 (교육연구시설)	19.74	71.96	4	1	
		부속건축물			1		
76	아스텔		19.22	18.90	1	1	
77	아이쓰리시스템		20.21	57.38	3	1	
78	아이피아이		29.98	63.70	3	1	
79	애경산업	총괄	16.45	48.39			
		연구소			1		
		창고			1		
		본관동			5	1	○
		PP-2동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PP-1동			2	1	
80	앤스코		17.07	26.14	3	1	
		총괄	15.07	31.93			
		옥내위험물저장소(3)			1		
		에너지실험동			2		
		제2후생동			4	1	
		28, 29, 30동			5		
		1.행정동			3	1	○
		11.정문안내소			1		
		13B.위험물옥내 저장소			1		
		15A.옥외저장소			1		
		17.폐수처리동			1		
		19B.기숙사			3	1	○
		19C.시험공작동			2		
		2.SPINE(연결통로)			3		
		2.연구동-1			4	1	
		2.연구동-2			4	1	
		2.연구동-3			4	1	
		22A-3후생동			1		
		23B관람석			1		
		2A.SPINE (1열-3열)			3		
		2C.연구동			2	1	
		3.후생동			2	1	○
		3A.후생동			1	1	
		3B.후생동 (내.외빈용후생관)		0.18	1	1	
		광학소재실험동			1		
		6.생물공학실증 시험동			1	1	
		7.엔진시험동			1	1	
		7A CMS 연구동			2		
		8A.시험공작동			2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9.시험생산동			2		
		A-PROJECT동			2		
		BATCH			6		
		CMS참고			2		
		D/G ROOM			1		
		H2 트레일러동			1		
		HEVB동			4		
		HGBL PLANT			6		
		SK C&C연구동			4	1	
		고분자개발 가공시험동			2	1	
		기숙사			4	1	○
		소재실증시험동			1		
		수소충전소(제어동)			2		
		시료배합동			2		
		시료배합동(2)			1		
		시험장(옥외실습장)			1		
		시험장(옥외저장소)	0.02	0.02	1		
		위험물창고동			1		
		윤활유리그동			1	1	
		중앙에너지공급동			1	1	
		참고A			1		
		휴게동			1		
		전기충전소케노피A동			1		
		전기충전소케노피B동			1		
		사내보육원			1		
		Green Pol P/P			2		
		CMS 품질시험동			3		
		그린에너지 LAB동			3		
		그린에너지 시험동			1		
		2차에너지공급동			1		
		Battery 평가동			3		
		Battery 연구동			5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제2기숙사동			6	1	
		61.후문경비실			1		
		Green Pol 연구동			2		
		Battery 화성동			2		
		CHILLER RM			1		
		수소충전소(장비동)			1		
		수소충전소(캐노피)			1		
		4.Battery평가동 펌프실			1		
		제2기숙사연결통로			1		
		주차캐노피			1		
82	에이치쓰리시스템		59.92	199.92	4	1	
83	에이팩	총괄	15.76	33.16			
		시험공장동1			3	1	
		시험공장동2, 연구동			3	1	
84	엘지데이콤 기술연구원	총괄					
		연구시설			4	1	
		기숙사			4	1	
		수위실			1		
85	엘지생활건강	총괄	23.14	70.92			
		고분자연연구소 등	20.55	58.34	4	1	○
		이노베이션센터			6		
		위험물저장소			1		
86	엘지화학기술연구원	총괄	24.27	62.64			
		동력동			2	1	
		면회실			1		
		안전동			1		
		연구1동			4	2	
		연구2A동			3	1	○
		연구2동			4	1	
		연구3A동			3	1	
		온실동			1	1	
		위험물저장고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정문수위실	8.76	19.64	1		
		체육시설			1		
		폐기물집하장			1		
		폐수처리장			2	1	
		행정, 식당동	1.93	19.64	3	3	
		후문수위실	8.76	19.64	1		
		충방전동			4	1	○
		제2안전동			1		
		연구3동			4		
		비위험물저장고			1		
87	엠아이티 엔터프라이스		29.98	63.70	3	1	
88	옵트론텍		15.06	50.01	4	1	
89	유엠아이	주건축물	14.18	51.96	4	1	
		부속건축물			1		
90	인섹트바이오텍		19.94	52.06	3	1	
91	제노텍	주건축물	9.20	25.22	3	1	
		부속건축물			1		
92	중앙백신연구소	총괄	29.83	123.46			
		가동			6	1	
		나동			3	1	
		다동			2		
		라동			7	1	
		바동			1		
		사동			2		
93	지스트		19.92	39.77	2	1	
94	지에스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총괄	14.63	23.40			
		PP가공동			2		
		Utility동			2	1	
		경비동1			1		
		경비동2			1		
		공정동			2		
		신에너지동			2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연구2, 3동			2	1	
		운동장부속동			2		
		자료실			2		
		행정동			2	1	
		연료유평가동 (차대동력계)			2		
		연료전지동			2		
		가스저장실			1		
		신에너지동부속2 (가스저장실)			1		
		위험물폐기물창고			1		
		위험물저장동2 (윤활류저장고)			1		
		공정동부속가스저장동			1		
		공정동부속가스저장동2			1		
		공정동부속창고			1		
		연료유평가동부속 가스저장소			1		
		연료전지동 부속수소가스저장소			1		
		신에너지동부속3			1		
		비상발전기실			1		
		가스저장소			1		
		창고1			1		
		창고2			1		
95	지에스플라텍		16.27	37.17	4		
96	케이오씨솔루션	총괄	29.68	79.15			
		A동			3	1	
		B동			2		
97	케이티앤지 중앙연구소	총괄	13.09	25.13			
		14동			1		
		15동			1		
		16동			1		
		경비실	0.13	0.09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위험물창고동			1		
		일반시약창고동			1		
		한국인삼연초연구원			2	1	
		연구소 등			4	1	
		향갑술제조연구동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전기실			1		
98	케이티중앙연구소 (=KT대덕2연구센터)		15.01	31.90	5	1	
99	태광산업중앙연구소	총괄	12.06	25.79			
		기숙사(2동)			2	1	
		연구동(1동)			3	1	
		식당			1		
		기계실			3	1	
100	텔레옵틱스	총괄	25.20	55.16			
		연구소			3		
		2동			2		
101	파미		25.95	80.55	4		
102	파이버프로		6.06	12.70	4	1	
103	팸트론	주건축물	24.03	50.83	3		
		부속건축물			1		
104	피알존		19.51	53.58	3	1	
105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26.23	45.51	3	2	
106	한백전자		66.60	299.67	6	1	
107	한빛레이저	총괄	19.39	33.58			
		공작동			1		
		본동			3	1	
		식당동			2		
108	한스바이오메드		27.37	81.02	3	1	
109	한화건설	총괄	14.10	21.18			
		시험공장-2, SUP P/P			1		
		가버너실	9.08	14.60	1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PILOT공실	9.08	14.60	1		
		동물실험실			1		
		본관동			6	1	
		연수원			2		
		특수실험동			2	1	
		폐수처리장	9.08	14.60	1	1	
		시험공장-1			1		
		연구시설(창고2)			1		
		4동 일반연구동			3		
		POWER PLANT				1	
		연결통로	9.08	14.60	1		
		경비실			1		
		가스저장소			1		
110	호남석유화학	총괄	22.57	38.68			
		연구본동 외			4	1	
		가공연구2동 외			2	2	
		증축연구동			4	1	
		실내체육관			2		
		경비실			1		
		가스저장창고			1		
		쓰레기저장고			1		
111	효성오앤비		19.23	56.05	3	1	
112	휴마스		19.58	38.89	2		
113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10	1	
		대학본부			3	1	○
114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4동 봉사관			2		
		8동 창업보육센터(제2관)			5	1	
		5동 창업보육센터			4	1	
		3동 자유관			1	1	
115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N28동			4	1	
		N27동					
		N22동					

연번	기관명	건축물명칭	건폐율 (%)	용적률 (%)	지상	지하	옥탑
		대전질환모델동물센터			4		
		E3 정보전자공학동			6	1	○
		N26동			4	1	
116	한국과학기술원 ICC	본관동			10	1	
		진리관T			3	1	
117	엑스포과학공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2.04	4	2	
		관리동 (=벤처타운종합영상관)			4	1	

〈표 4〉 대덕연구단지(1지구)내 원형지 보유 기관 현황(2013년 6월 기준)

연번	기관명	원형지 필지	원형지 면적(㎡)	원형지 보유기관	녹지구역 원형지면적(㎡)	교육사업화시 설구역 원형지면적(㎡)
1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					
2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3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	4,694			4,694
4	나노종합팹센터					
5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8	54,531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54,531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한국기계연구원	16	164,000			164,000
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2,434			2,434
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18,807			18,807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25,567			25,567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	110,830			110,830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39,546			39,546
15	한국천문연구원	4	31,283			31,283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246,274			246,274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	2,667			2,667
1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76,151			76,151
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	33,959		14	33,945
20	한국화학연구원	40	147,349			147,349
21	기초과학연구원					
2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원					
23	국립문화재연구소	4	24,733			24,733
24	국립중앙과학관	5	6,727			6,727
2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6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	2,865			2,865
27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연번	기관명	원형지 필지	원형지 면적(m <sup>2</sup> )	원형지 보유기관	녹지구역 원형지면적(m <sup>2</sup> )	교육사업화시 실구역 원형지면적(m <sup>2</sup> )
28	대전교육정보원					
29	대전인재개발원					
30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1	5,359	=대전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5,359
31	대전지방기상청	1	41,110			41,110
32	범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2	7,088	=KT대덕1 연구센터		7,088
33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1	2,468			2,468
34	한국수자원연구소					
35	한국조폐공사					
3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37	한전전력연구원					
38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39	(주)에스메크					
40	(주)아큐젠헬스케어					
41	가교테크					
42	가이아					
43	가인테크					
44	계룡과학					
45	금광					
46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47	네오시스 코리아					
48	넥스알					
49	넷브릿지					
50	뉴텍					
51	다우비전					
52	대림산업대덕연구소	1	12,138			12,138
53	대한항공 한국항공기술연구원	1	21,793			21,793
54	덕산 메카시스					
55	덕인					

연번	기관명	원형지 필지	원형지 면적(㎡)	원형지 보유기관	녹지구역 원형지면적(㎡)	교육사업화시 실구역 원형지면적(㎡)
56	도담시스템즈	2	7,496			7,496
57	동부메탈					
58	동일시마즈					
59	디아이티그린					
60	디앤티					
61	레이칸					
62	레이트론					
63	롯데정보통신(주)	1	6,957			6,957
64	맥스웨이브					
65	브이에스아이					
66	블루코드					
67	비제이피앤에스					
68	비즈니스전략연구소					
69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					
70	삼양사중앙연구소					
71	시물라인					
72	시스템게이트					
73	신코대전지사					
74	쌍용양회기술연구소	8	4,463		34	4,429
75	썬트렉아이					
76	아스텔					
77	아이쓰리시스템					
78	아이피아이					
79	애경산업					
80	앤스코					
81	에스케이에너지기술원	8	165,841		65	165,775
82	에이치쓰리시스템					
83	에이팩	1	1,036			1,036
84	엘지데이콤기술연구원					
85	엘지생활건강					
86	엘지화학기술연구원	2	88,421			88,421
87	엠아이티엔터프라이스					

연번	기관명	원형지 필지	원형지 면적(m <sup>2</sup> )	원형지 보유기관	녹지구역 원형지면적(m <sup>2</sup> )	교육사업화시 설구역 원형지면적(m <sup>2</sup> )
88	옵트론텍	2	8,389			8,389
89	유엠아이					
90	인섹트바이오텍					
91	제노텍	1	4,667			4,667
92	중앙백신연구소	4	9,225		1473	7,752
93	지스트					
94	지에스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1	5,921			5,921
95	지에스플라텍	1	5,172			5,172
96	케이오씨솔루션					
97	케이티앤지중앙연구소	20	200,082		4	200,078
98	케이티중앙연구소 (=KT대덕2연구센터)	2	37,458	=KT유무선네 트워크연구소		37,458
99	태광산업중앙연구소					
100	텔레옵틱스					
101	파미					
102	파이버프로					
103	펍트론					
104	피알존					
105	한국타이어중앙연구소	1	13,165			13,165
106	한백전자					
107	한빛레이저	1	1,789			1,789
108	한스바이오메드	1	5,779			5,779
109	한화건설					
110	호남석유화학					
111	효성오앤비					
112	휴마스					
113	충남대학교	15	425,454		734	424,721
114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1	11,869			11,869
115	한국과학기술원본원					
116	한국과학기술원 ICC	2	135,817			135,817
117	엑스포과학공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5-05

---

##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공급방안

---

발행인 유재일

발행일 2015년 3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ISBN: 979-11-85969-33-6 935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